

정책연구 2015-01

서비스산업 진입규제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이병기



정책연구 15-01

2015. 1.

서비스산업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이병기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이후 미국 Vanderbilt대 초빙연구원, 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조직연구』 학술편집위원, 한국생산성학회 이사, 한국경제학회 경제학문헌 연보 편집위원회 위원, 국민경제학회 학술편집위원,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APO) TFP Project National Expert, 감사원 『IT감사위원회』 위원,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사전조정위원회』 위원, 한국규제학회이사, 한국경제제도학회 학술편집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공동편집위원장이며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기업이론·정책연구, 기업투자·기술정책, 기업구조조정·퇴출제도이며 최근 저서로는 『기업 진입·퇴출의 생산성 효과와 진입규제 개혁과제』(2014), 『중소기업의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동인과 정책과제』(2013),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의무화 및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과제』(2013), 『대기업 비판의 실상과 본질』(2012), 『대기업 성장의 협력기업 낙수효과 분석』(2012), 『외환위기 전후 기업의 구조조정과 성과변화 분석』(2008), 『부실 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2011),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제』(2009), 『한국기업의 투자행태』(2000), 『유럽 주요국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과 시사점』(2014) 등이 있다.

서비스산업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1판1쇄 인쇄 | 2015년 2월 2일

1판1쇄 발행 | 2015년 2월 6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권태신

편집인 | 권태신

등록번호 |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5층

전화 02-3771-0001(대표), 02-3771-0060(직통) | 팩스 02-785-0270~3

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5

ISBN 978-89-8031-722-6

8,000원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5004096)

CONTENTS

요약	7
I. 서론	16
1. 연구의 필요성	16
2. 연구의 내용 및 목적	18
II. 분석에 이용되는 자료와 개념정의	20
1. 기초자료와 산업분류	20
2. 법적 진입규제	24
III. 서비스산업의 진입·퇴출·존속·단기생존	27
1. 진입율과 퇴출률의 개념 규정	27
2. 서비스업에서의 진입·퇴출·존속·단기생존	32
IV.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 분석	36
1.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개념 규정	36
(1) 기존의 국내외 연구결과	36
(2) 일자리 창출과 소멸 분석모형	40
(3) 일자리 창출과 소멸 분석결과의 국제비교	42
2.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	44
(1) 전체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44
(2)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	50
(3) 서비스산업의 기업나이와 일자리 창출	56
(4) 서비스산업의 기업규모,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	63
V.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효과와 규제개혁의 정치경제학	70
1. 서비스산업 진입규제의 일자리 창출 효과분석	70
(1) 기존의 연구와 모델	70
(2) 자료 및 분석결과	73
2. 서비스업 규제개혁의 정치경제학	77
(1) 서비스산업 관련정책의 추진 추이	77
(2) 서비스 부문의 규제개혁을 위한 정치경제학	81
VI. 분석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89
1. 분석결과의 요약	89
2. 정책적 시사점	92
참고문헌	95
부 표	102

[표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도별 사업체 수와 그 비중	22
[표 2] 우리나라 서비스업 별 진입규제: 2011년 기준	25
[표 3] OECD 주요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진입율 및 퇴출률	30
[표 4] OECD 주요국의 전체산업의 기업생존율: 2007~2009	31
[표 5] 전체산업과 서비스업의 진입·퇴출·존속·단기생존 변화추이	34
[표 6] 전체산업의 산업별 진입·퇴출·존속·단기생존 기업비중	34
[표 7] 전산업의 기업규모별 진입·퇴출·존속·단기생존 기업비중	35
[표 8] 서비스업의 기업규모별 진입·퇴출·존속·단기생존 기업비중	35
[표 9] 주요국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 비교	43
[표 10] 전산업의 일자리 창출률 분석결과	45
[표 11]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률 분석결과	45
[표 12] 산업별 일자리 창출률 분석결과: 2002~2011	46
[표 13] 전산업 및 서비스산업 전체의 진출입기업 및 존속기업의 일자리 창출률	48
[표 14] 산업별 진출입기업 및 존속기업의 일자리 창출률	49
[표 15] 서비스업 부문의 진입규제가 있는 산업의 일자리 창출률	53
[표 16] 서비스업 부문의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의 일자리 창출률	54
[표 17] OECD 주요국 젊은기업과 성숙기업의 일자리 창출·파괴 비중: 2001~2011	59
[표 18] OECD 주요국 젊은기업의 제조업·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소멸 비중: 2001~2011	60
[표 19] 전산업의 기업나이별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 분석결과	61
[표 20] 서비스산업의 기업나이별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 분석결과	62
[표 21] 전산업의 기업규모 계층별 일자리 창출률 분석결과	66
[표 22] 서비스업의 기업규모 계층별 일자리 창출률 분석결과	67
[표 23] 진입규제 유무별 기업규모별 고용창출률 분석결과	69
[표 24] 법적 진입규제가 순일자리 창출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75
[표 25] 2008년 이후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 추진 경과	79
[표 26] 서비스산업의 업무활동별 주된 규제 현황 및 진입규제 현황	83

[그림 1] 전산업의 사업체 진입률·퇴출률·존속률·단기생존률	33
[그림 2] 서비스업의 사업체 진입률·퇴출률·단기생존률	33
[그림 3] 서비스업의 사업체 존속률	33
[그림 4] 서비스산업별 진입률과 퇴출률	35
[그림 5]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률·소멸률·순일자리 창출률	47
[그림 6] 서비스산업별 순일자리 창출률	47
[그림 7] 진입·퇴출기업과 존속기업 간 순일자리 창출률	48
[그림 8] 진입규제 있는 서비스업과 진입규제 없는 서비스업의 순일자리 창출률	55
[그림 9] 진입규제가 있는 산업과 없는 산업 간 순일자리 창출률 비교	56
[그림 10] 진입규제가 있는 산업과 없는 산업 간 일자리 재배치율 변화 추이	56
[그림 11] 전산업과 서비스업의 기업나이별 순일자리 창출률 비교	62
[그림 12] 전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고용규모별 순일자리 창출률 비교: 2002~2011	67
[그림 13] 기업규모별 진입규제 유무에 따른 순일자리 창출률 차이	69
[그림 14] 기업나이 통제 하의 기업규모별 순일자리 창출률 추정계수	76
[그림 15] 기업규모 통제 하의 기업나이별 순일자리 창출률 추정계수	76
[그림 16] OECD 주요국 평균대비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진입장벽 비교	84
[그림 17] 주요 부문별 OECD 대비 기업가정신 장벽 비교	85



1. 분석결과의 요약

서비스부문의 일자리는 기업의 진입 및 퇴출, 기존 기업의 사업확장 및 축소에 의해 이루어진다. 진입 및 사업확장의 제약은 일자리 창출의 제약을 초래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서비스산업의 법적 진입규제의 현황을 파악하여 진입규제(entry regulation)가 서비스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의 정도를 추계하였다. 또한 서비스업의 산업별·기업규모별·기업나이별 일자리 창출 정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000~2012년 기간의 사업체 기초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서비스 부분에서의 진입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초자료는 사업체수 기준으로 볼 때 2000년에 3,012,107개 사업체, 2012년 3,602,476개 사업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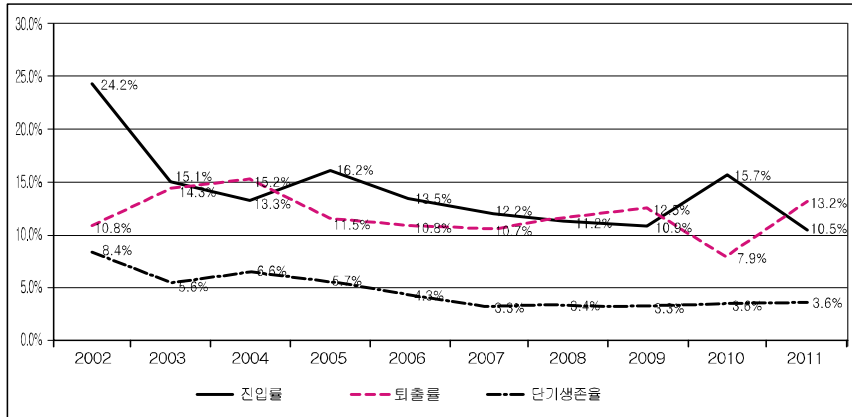
우선 분석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법적인 진입규제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부문은 높은 진입규제를 받고 있다. 상당히 많은 서비스업은 강한 법적인 진입규제를 받고 있어 이들 산업 부문으로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업의 경우 5-digit 기준으로 할 때 96.2%의 산업에서 강규제 또는 약규제 등 진입규제를 받고 있으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90% 이상의 산업이 진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 및 소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각각 37.9%, 34.6%의 산업에서 진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진입규제가 비교적 낮은 산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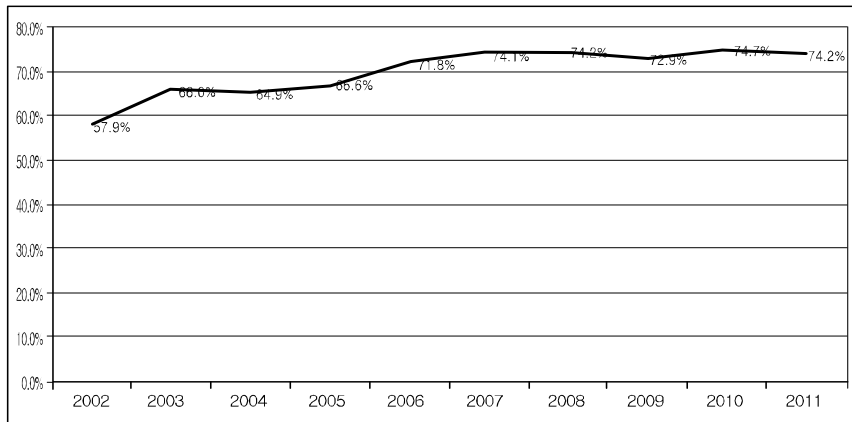
둘째로 새로운 방식으로 진입률과 퇴출률을 계산해 보면 2002~2011년 기간 중 사업체의 진입률이 뚜렷이 저하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 2002년 진입률은 24.2%였으나 2011년에 진입률은 10.5%로 푹 떨어졌다. 반면에 사업체 존속률은 2002년

57.9%에서 2011년 74.2%로 뚜렷하게 높아졌다. 퇴출률은 2002년 10.8%였으나, 2011년 13.2%로 퇴출률은 상대적으로 덜 증가하였다.

서비스업의 사업체 진입률·퇴출률·단기생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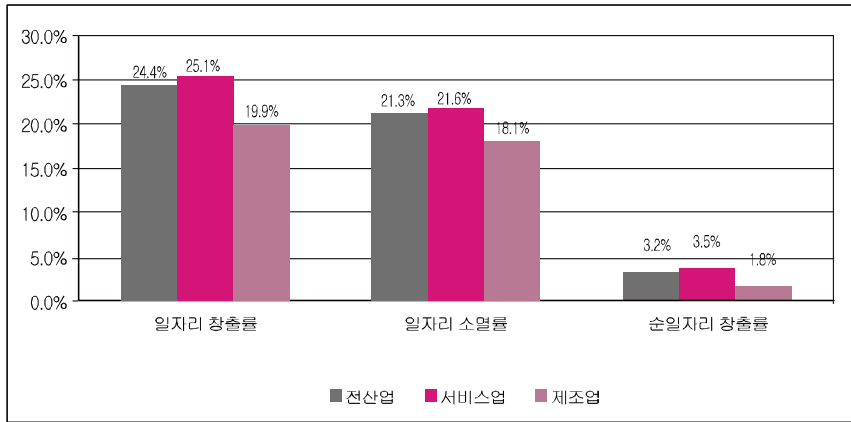
서비스업의 사업체 존속률



셋째로 서비스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이 전산업 평균 또는 제조업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2~2011년 기간 중 전산업의 일자리 창출률은 24.4%, 일자리 소멸률은 21.2%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률은 25.1%, 일자리 소멸률은 21.6%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2~2011년 기간 중 전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약 3.2%였으나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률은 약 3.5%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약 1.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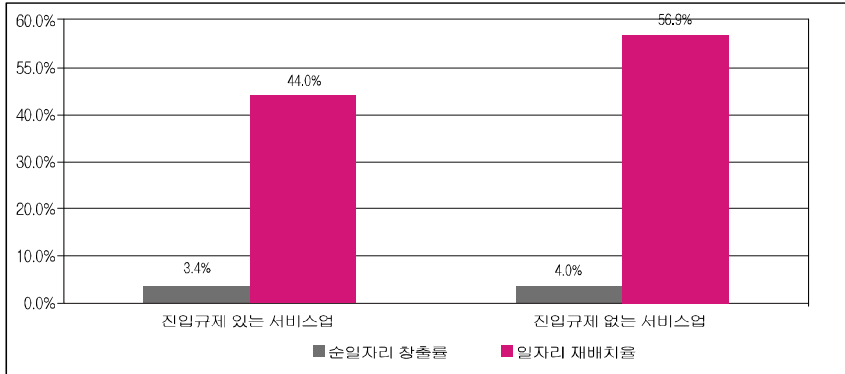
이렇게 보면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약 두 배 높은 순일자리 창출률을 나타내고 있다. 일자리 재배치율에 있어서는 전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거의 거의 비슷한 45~46%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의 일자리 재배치율은 약 38.0%로 나타나 서비스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률 · 소멸률 · 순일자리 창출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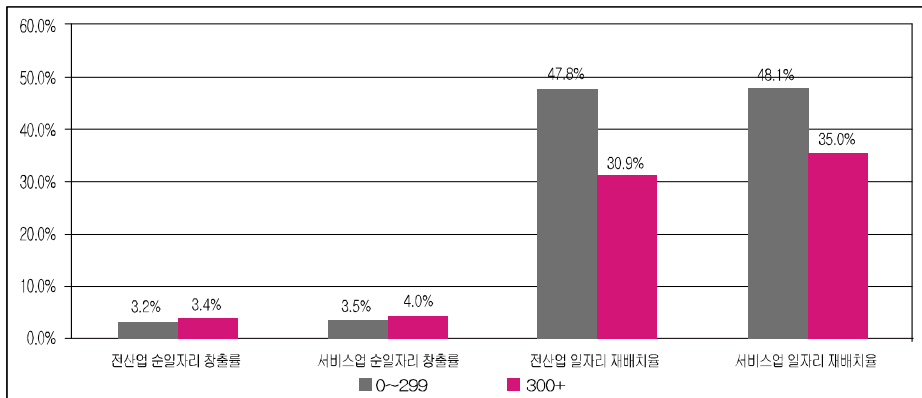
넷째로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의 일자리 창출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2~2011년 기간 중 진입규제가 있는 서비스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3.4%였으나, 진입규제가 없는 서비스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4.01%로 나타났다. 진입규제가 없는 서비스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입규제가 있는 서비스업의 일자리 재배치율은 44.0%, 진입규제가 없는 서비스업의 일자리 재배치율은 56.9%로 나타나 진입규제가 없는 경우 진입규제가 있는 경우보다 일자리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서 2005년까지는 진입규제가 있는 산업과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2005년 이후 뚜렷하게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의 일자리 창출률이 진입규제가 있는 서비스업의 순일자리 창출률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추세적으로 두 그룹 간에 일자리 창출률은 저하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의 일자리 창출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2년도에 진입규제가 있는 산업의 경우에 일자리 창출률은 7.8%였지만 2011년도에는 1.9%로 5.8%포인트 크게 떨어졌으며, 또한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의 경우에도 동기간 중 3.0%포인트 크게 저하하였다.

진입규제 있는 서비스업과 진입규제 없는 서비스업의 순일자리 창출률



다섯째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순일자리 창출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규모 300인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하였을 때, 2002~2011년 기간 중 전산업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3.4%, 중소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3.2%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할 때 중소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3.5%, 대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4.0%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률도 높지만 일자리 소멸률도 높기 때문에 '순'일자리 창출률은 대기업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상황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재배치율이 높게 나타나고 대기업의 일자리 재배치율이 낮은 결과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것은 사업체 규모와 일자리 창출률 간의 단순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업체 규모 이외에 기업나이 등을 통제한 후 나온 결과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순 고용창출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고용규모별 순고용 창출률 비교: 2002~2011



여섯째로 순일자리 창출률은 진입규제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에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었다. 진입규제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약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에서 활동하는 대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약 8.7%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진입규제가 있는 산업에서나 없는 산업에서나 순일자리 창출률은 거의 비슷한 3.4~3.6%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규모별 진입규제 유무에 따른 순일자리 창출률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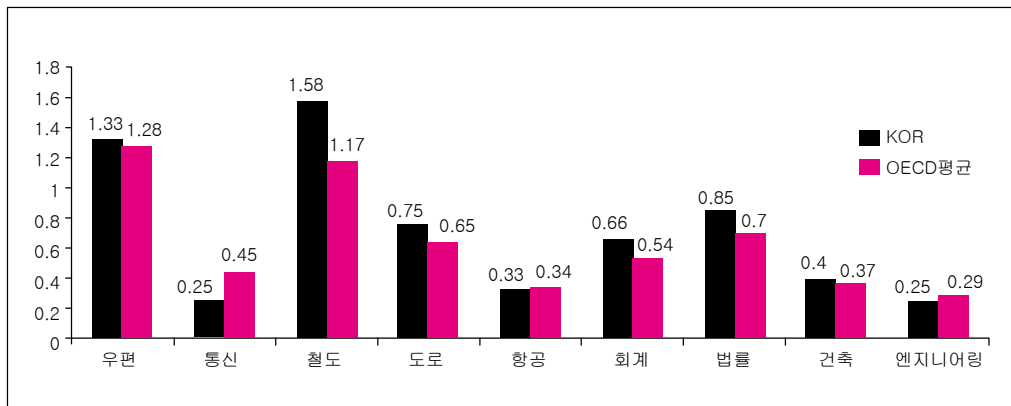
일곱째로 서비스업의 경우에 창업 첫해의 일자리 창출률은 31.9%였고 일자리 소멸률은 14.6%로 순일자리 증가율은 약 17.7%로 나타났다. 기업나이 2세에서 30세까지는 순일자리 창출률은 음수를 나타내다가 31세 이후부터 일자리 창출률이 양수를 나타내고 있다. 창업 초기 1~2세 이후 기간에는 기업나이와 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 간에는 미약한 양의 관계를 나타나고 있다.

여덟째로 기업규모, 기업나이를 통제하고 난 이후 진입규제와 순일자리 창출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입규제는 순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입규제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진입규제가 부과되는 경우에 순일자리 창출률을 약 0.96% 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현재의 분석에서 서비스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이 약 3.52%인 점을 감안하면 진입규제가 있는 경우 순일자리 창출률을 약 27.3% 감소시킨다. 또한 기업나이를 통제하고 난 후 기업규모와 순일자리 창출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규모가 클수록 순일자리 창출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서비스산업의 경우에 진입규제를 완화하면 순일자리 창출률은 증가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기업규모가 클수록 일자리 창출률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추진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보다 창업시점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아홉째로 정부에서 집중 육성 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요한 서비스산업에서도 여전히 많은 진입규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산업의 경우에 의료기관 설립주체 의사·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아직도 불허하고 있다. 원격의료도 제한되고 있다. 의료인 간 의료지식·기술지원 등의 원격의료만 허용되고 있다. 관광업의 경우엔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제한하고 있고 유해시설 없는 특급호텔의 경우에도 일괄 금지대상이다.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시 경사도 20~25도 미만인 토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등 경사도 기준으로 숙박시설 설립 규제가 있다. 교육 분야의 경우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시 과실송금이 불허되고 있다. 싱가포르, 두바이 등 경쟁국의 경우 과실송금이 허용되는 것과 다르다. 더구나 영리학교법인 설립은 불허하고 있다. 금융 분야의 경우에 금융업 전반의 진입·영업규제로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 사모펀드에 대한 진입·설립·운영규제가 여전히 있다. 자기자본, 운용성과, 전문인력, 물적설비, 대주주 요건 등 충족 시 사모펀드 운용업 진입이 가능한 상태다. 소프트웨어·정보통신업의 경우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는 금지하고 있다.

OECD 주요국 평균대비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진입장벽 비교



열번째로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분야별 진입장벽을 보면 항공, 통신,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우편, 철도, 도로, 회계, 법률, 건축 등 분야에서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기업가정신 제약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문제있는 부분이 많다. 규제절차의 복잡성, 인허가 체계,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기존기업의 규제적인 보호, 진입의 법적인 장벽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의 기업의 진입규제, 기업규모, 기업나이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 창출률이 어떤 부문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 정책에 있어서 진입정책 등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낮았으나, 진입규제 여부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의 정도가 매우 다르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 정책에 있어서 진입규제의 완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중소기업 부문도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는 중요한 부분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서비스산업의 경우에 기업나이를 고려한 후 기업규모의 크기 증가가 순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순일자리 창출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업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못지않게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큰 대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관심은 직접적인 지원방식이 아니라 규제완화와 같은 기업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로 우리나라 경제의 다이내믹스가 최근 급격히 저하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신생기업의 시장진입과 노쇠기업의 퇴출이 선순환을 이루는 가운데 경제의 활력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진다. 서비스 산업은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서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고 지속성장을 해야 할 중요한 부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향상된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성은 관련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서비스업의 발전과 제조업의 성장이 병행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세성을 벗어나 규모의 경제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산업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높은 현 상황에서 서비스업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지 못한다면 경제의 고부가가치화와 삶의 질 개선을 달성하기 어렵다. 보다 효율적인 새로운 기업이

서비스부문에 활발히 진입하여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에 가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진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대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이 중소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보다 높다. 중소기업은 진입규제가 완화되는 경우에도 순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대기업은 진입규제 완화로 순일자리 창출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다양한 형태의 진입규제를 받고 있는 대기업 부문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는 순일자리 창출을 더욱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서비스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는 선입견에서 탈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증 분석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순일자리 창출률이 높아진다. 또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창업초기 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이 매우 높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의 몫이라는 전제하에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던 그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업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한편으로 규모가 큰 기업의 창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같은 정책 전환은 중소기업의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방식이 아니라 진입규제 완화와 같은 소프트한 방식의 정책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이 들지 않는 방식의 지원이라는 이점도 있다.

넷째로 이익단체들이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갖도록 정부 및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업은 이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갈등으로 진입규제가 여전히 공고한 상태로 남아 있는 부문이다. 서비스업 부문의 규제개혁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이익집단의 존재 때문이다. 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범위 제한 등의 규제를 둘러싼 이해집단 간 갈등이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가 간 경제통합의 확대나 다자간 무역협상의 타결, 보조금 축소, 진입제한 철폐 등의 정책변화는 이익집단들의 활동 범위를 축소시키고 이들의 과거에 달성한 배분 왜곡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을 통해 개혁 아젠다를 중지시키려고 노력하는 경우에 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다섯째로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진행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승진과 보수라는 공무원의

인센티브 제도를 규제개혁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한번 만들어진 규제는 공무원들에게 있어 지켜야 할 권리로 인식되고 있고, 규제로 인해 집행상 편의를 누려온 공무원들은 이를 바꾸지 않고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할 경우 현재 조직과 관련 예산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여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행태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 정책의 구체적 실현은 규제행정 담당 관료들의 전문성에 궁극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관료조직의 벽을 허물고, 규제실무에 익숙한 전문 직업 관료들을 스스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규제개혁의 진전을 위해 중요하다.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진행시키는 방법은 승진과 보수라는 공무원의 인센티브 제도를 규제개혁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승진과 보수라는 인센티브에 좌우되는 공무원 조직의 기본원리를 규제개혁에 적용하고 연동시킬 때만이 규제개혁을 성공할 수 있다.



1. 연구의 필요성

서비스산업은 기업의 진입과 퇴출, 확장과 축소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산업으로서 미시 사업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보다 정밀한 일자리 창출 분석이 가능해 진다. 본 연구는 2000~2012년 기간의 사업체 기초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서비스 부분에서의 진입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서비스부문의 일자리는 기업의 진입 및 퇴출, 기존기업의 사업 확장 및 축소에 의해 이루어진다. 진입 및 사업 확장의 제약은 일자리 창출의 제약을 초래한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법적 진입규제의 현황 및 그 기초자료의 확장, 진입규제(entry regulation)가 서비스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의 정도를 추계하고 서비스업의 산업별·기업규모별·기업나이별 일자리 창출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최근 일고 있는 기업규모와 기업나이 논쟁에 대한 실증 평가를 시도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더구나 최근 일자리 없는 성장(jobless growth)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청년실업 증가 및 고용정체 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 일자리 창출(job creation)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고용사정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제조업보다 강하고 복잡한 진입규제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이며, 현 정부도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나 입법화 지연 등 추진이 더딘 상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에 비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서비스 부문의 법적인 진입규제를 검토하여 그 개혁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1) 필자는 이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대용량 데이터를 능률적으로 처리해 준 노기범 씨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본 보고서는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조사 자료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아 원격자료 이용을 통해 수행된 것이다. 자료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신 통계청 조은숙 주무관과 한국통계진흥원의 이동훈 연구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청년층의 실업 증가, 고용 없는 성장, 특히 최근의 경기침체 지속, 기업의 투자 부진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에 따라 고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부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논쟁은 주로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낸다는 전제하에 고용창출 정책은 주로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최근 기업규모와 기업나이 논쟁에서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그에 못지않게 큰 것으로 나타나며 또 기업나이가 적을수록 고용창출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소기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 능력과 기여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양하고 또 상반되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즉 민간 부문의 많은 신규 일자리를 중소기업 부문이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실제 중소기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과장되었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즉 고용 비중은 높지만 일자리 순증가율은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문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장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고용 규모의 성장보다 주로 창업에 의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퇴출에 의해 그에 못지않게 소멸된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일자리 창출 분석은 노동경제학의 주된 영역이었지만, 최근 산업조직론의 관점에서 어떤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진입규제가 기업의 동태적 변화 과정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평가하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 미시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 비해 그동안 한국이 상대적으로 이와 관련 연구가 부족하였던 것은 통계 데이터의 미흡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사업체 전수 조사결과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기업 미시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미시 심층연구가 가능해지고 있어 기업규모, 기업나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진입규제가 일자리 창출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는 서비스업 부문의 진입규제의 현황을 기존연구를 확장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진입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고 한다. 또한 진입규제를 받고 있는 산업과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다. 현재까지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 그 자체를 조사한 연구는 있으나 이것이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한 미시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본 연구에서

는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미시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진입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진입규제를 받고 있는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 간에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업규모의 일자리 창출 효과 및 기업나이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한다. 서비스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새로운 진입기업 또는 존속 기업 중 어느 부문에서 더 창출이 되는지를 분석하고, 또 서비스업 부문의 세부산업별·기업나이별·기업규모별 일자리 창출 효과분석을 통해서 서비스업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기업규모와 기업연령 논쟁 등은 향후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논쟁은 주로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낸다는 전제하에 고용창출 정책은 주로 중소기업을 향한 정책이 추진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용창출이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어떤 기업규모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는지를 분석하며 또 기업나이는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검토해 보려고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목적

국내외 미시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는 새로운 사업체 또는 기업의 진입이 장기적으로 고용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²⁾ 그렇지만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고용창출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멸의 동학을 수량적으로 설명하는 간단한 모형을 가지고 기업의 진입과 퇴출, 확장과 쇠퇴가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의 진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진입규제 개혁방안들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순일자리 창출률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통제변수인 기업규모와 기업나이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검토한다. 이들 변수들을 통제한 후 진입규제 유무가 순일자리 창출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용가중회귀분석(employment-weighted least squares)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를 검토한다.

2)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와 기업체를 같은 의미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실제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기본 분석단위는 사업체(establishment)이다.

우선 서비스업 부문에서 진입규제를 받는 산업과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의 차별적인 영향을 분석한다. 서비스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업규모별, 기업나이별로 일자리의 창출, 소멸, 순창출의 현황을 분석한다. 일자리 창출은 창업과 사업확장을 통한 규모 확대, 일자리 소멸은 퇴출과 사업축소에 의한 규모 축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각각의 경로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소멸 현황을 파악하려고 한다. 또한 기업규모가 중요한지 기업나이가 중요한지에 대한 논쟁에 대한 실증검토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미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업 부문의 진입규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여 진입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제 I 장의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와 기본 개념을 정리한다. 제 III 장에서는 서비스산업의 진입, 퇴출, 존속, 단기생존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진입률, 퇴출률을 분석한다. 제 IV 장에서는 진입규제의 유무가 순일자리 창출률에 미치는 영향을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또한 진입규제가 일자리 창출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통제변수로서 기업규모와 기업나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우선 검토한다. 제 V 장에서는 진입규제, 기업나이, 기업규모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Saturated dummy variable model을 추정하여 그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서비스산업 관련 정부정책의 동향, OECD 서비스업 관련 규제의 국제비교를 통해서 향후 서비스업 진입규제 개혁을 위한 정치경제학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제 VI 장에서는 현재 진행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II. 분석에 이용되는 자료와 개념정의

1. 기초자료와 산업분류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의 관련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분석의 단위로 기업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전국의 모든 기업체를 포함하는 기초자료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³⁾ 사업체 자료(establishment level data)-기업체 자료(firm level data) 간의 선택에서 사업체 자료를 선택한 이유이다. 또 하나의 고려사항은 본 연구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소멸 분석을 위해서는 각 사업체와 그 사업체의 근로자 수 정보가 연도별로 이용 가능해서 패널형태의 자료가 있어야 한다. 통계청의 기초자료들은 오랜 기간 동안 각 연도별로 사업체 자료는 존재하였지만 그 사업체의 연도별 연결은 자료 공개가 미루어져 왔었다. 최근에 와서야 각 사업체의 연도별 연결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체-근로자 연계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사업체 자료의 고용자 수 자료가 있으면서 연도별 연결이 가능해 패널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가장 대표적인 자료로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를 고려할 수 있다. 『전국사업체조사』의 경우,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전수 조사하는 기초통계이며 다행히 2000년부터 최근까지 사업체를 패널자료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⁴⁾ 다만 일부 연도의 경우 미싱(missing data)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체 정보를 이용하여 부분적인 보완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0~2012년 기간 중의 『전국사업체조사』 기초자료(raw data)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전국사업체조사』는 현재까지 2000~2012년의 사업체 패널 구축

3) 한국신용정보(주) 및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단위 조사결과가 있으나 그 포괄범위가 전수조사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기업 포괄 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이 포함된 이후의 시계열이 짧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세청의 기업자료는 기업체 전수 자료라는 장점이 있으나 그 이용 및 접근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4) 일부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동부의 『고용보험DB』도 유용한 자료로 검토해 보았으나, 이 자료는 사실상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 유형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능하면 가장 긴 자료와 가장 포괄범위가 넓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편의 및 통계왜곡을 줄일 수 있다.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는 각 산업을 5-digit 수준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분석에서는 대분류 서비스산업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이 조사 자료는 다음 절에서 논의할 법적 진입규제 자료와 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법적인 진입규제의 정도를 정리한 것은 5-digit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⁵⁾ 전산업은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goods-producing industry)과 서비스를 생산해 내는 산업(service-producing industry)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재화를 생산해 내는 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은 표준산업분류 상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표 1]은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사업체의 산업별 분포와 그 비중을 계산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주로 도매 및 소매업에서부터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 등 13개의 서비스업을 주로 분석하고, 연구의 필요에 따라 전체산업과의 비교를 하고 있다. 2012년의 경우에 전체산업 중에서 도매 및 서비스업은 약 25.7%를 차지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약 18.7%, 운수업은 10.1%,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는 1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서비스산업은 전체서비스산업에서 차지하는 사업체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서비스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사업체 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에서 2012년 기간 중에 전체 사업체 수는 2000년의 경우 약 300만 개, 2012년의 경우 약 360만 개 사업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서비스업은 2000년의 경우 약 260만여 개 사업체로 전산업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의 경우에는 약 310만여 개 사업체로 전산업의 약 8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OECD(2000)는 서비스업을 크게 생산자서비스업(Producer services), 유통서비스업(Distributive services), 개인서비스업(Personal services), 사회서비스업(Social services)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도별 사업체 수와 그 비중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농업, 임업 및 어업	2,998 (0.0010)	2,413 (0.0008)	2,287 (0.0007)	2,274 (0.0007)	2,262 (0.0007)	2,247 (0.0007)	2,186 (0.0007)	2,260 (0.0007)	2,111 (0.0006)	2,295 (0.0007)	2,354 (0.0007)	2,443 (0.0007)	2,451 (0.0007)
광업	1,997 (0.0007)	1,931 (0.0006)	1,873 (0.0006)	1,810 (0.0006)	1,787 (0.0006)	1,798 (0.0006)	1,791 (0.0006)	1,775 (0.0005)	1,756 (0.0005)	1,836 (0.0006)	1,770 (0.0005)	1,792 (0.0005)	1,842 (0.0005)
제조업	307,543 (0.1021)	325,247 (0.1068)	328,181 (0.1048)	320,754 (0.1008)	322,730 (0.1013)	334,517 (0.1044)	331,058 (0.1027)	331,379 (0.1022)	319,371 (0.0980)	317,130 (0.0980)	326,813 (0.0974)	340,771 (0.0982)	360,394 (0.1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420 (0.0005)	1,478 (0.0005)	1,485 (0.0005)	1,495 (0.0005)	1,500 (0.0005)	1,536 (0.0005)	1,552 (0.0005)	1,565 (0.0005)	1,406 (0.0004)	1,469 (0.0005)	1,499 (0.0004)	1,530 (0.0004)	1,605 (0.0004)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1,085 (0.0037)	10,821 (0.0036)	11,144 (0.0036)	11,317 (0.0036)	12,266 (0.0039)	13,900 (0.0043)	15,000 (0.0047)	16,329 (0.0050)	17,472 (0.0054)	18,048 (0.0056)	19,800 (0.0059)	21,565 (0.0062)	23,133 (0.0064)
건설업	66,581 (0.0221)	72,831 (0.0239)	78,548 (0.0251)	82,623 (0.0260)	83,712 (0.0263)	89,397 (0.0279)	90,418 (0.0280)	93,249 (0.0288)	94,306 (0.0289)	93,071 (0.0288)	96,833 (0.0289)	103,944 (0.0300)	109,201 (0.0303)
도매 및 소매업	908,689 (0.3017)	884,608 (0.2905)	891,094 (0.2847)	885,046 (0.2782)	868,818 (0.2728)	854,687 (0.2668)	854,495 (0.2650)	851,100 (0.2626)	845,451 (0.2595)	832,386 (0.2573)	862,792 (0.2571)	888,287 (0.2561)	925,959 (0.2570)
운수업	261,465 (0.0868)	283,385 (0.0931)	303,785 (0.0970)	321,097 (0.1009)	326,544 (0.1025)	335,085 (0.1046)	339,749 (0.1054)	338,407 (0.1044)	340,371 (0.1045)	343,290 (0.1061)	347,179 (0.1035)	353,972 (0.1021)	364,209 (0.1011)
숙박 및 음식점업	607,656 (0.2017)	616,628 (0.2025)	635,428 (0.2030)	647,763 (0.2036)	643,609 (0.2021)	621,242 (0.1939)	621,578 (0.1928)	618,055 (0.1907)	623,047 (0.1912)	613,155 (0.1895)	634,500 (0.1891)	655,137 (0.1889)	673,767 (0.187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3,969 (0.0080)	24,194 (0.0079)	25,798 (0.0082)	26,175 (0.0082)	25,616 (0.0080)	27,249 (0.0085)	27,209 (0.0084)	26,716 (0.0082)	26,545 (0.0081)	27,059 (0.0084)	30,344 (0.0090)	34,257 (0.0099)	38,468 (0.0107)
금융 및 보험업	35,207 (0.0117)	36,094 (0.0119)	36,167 (0.0116)	34,533 (0.0109)	33,874 (0.0106)	34,676 (0.0108)	35,621 (0.0110)	36,834 (0.0114)	37,405 (0.0115)	37,675 (0.0116)	39,389 (0.0117)	40,679 (0.0117)	41,681 (0.0116)

([표 1] 계속)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95,205 (0.0316)	94,887 (0.0312)	102,281 (0.0327)	111,013 (0.0349)	113,058 (0.0355)	116,156 (0.0363)	120,361 (0.0373)	122,558 (0.0378)	124,620 (0.0382)	121,739 (0.0376)	126,045 (0.0376)	129,296 (0.0373)	131,451 (0.036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1,024 (0.0169)	51,386 (0.0169)	55,910 (0.0179)	58,718 (0.0185)	59,483 (0.0187)	59,907 (0.0187)	60,158 (0.0187)	63,169 (0.0195)	65,784 (0.0202)	66,083 (0.0204)	70,064 (0.0209)	75,786 (0.0218)	82,818 (0.023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7,570 (0.0058)	19,392 (0.0064)	21,388 (0.0068)	22,194 (0.0070)	22,933 (0.0072)	24,290 (0.0076)	26,060 (0.0081)	27,428 (0.0085)	28,258 (0.0087)	28,804 (0.0089)	31,941 (0.0095)	36,272 (0.0105)	39,875 (0.01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2,378 (0.0041)	12,061 (0.0040)	12,022 (0.0038)	12,215 (0.0038)	12,318 (0.0039)	12,568 (0.0039)	12,439 (0.0039)	12,273 (0.0038)	12,019 (0.0037)	11,715 (0.0036)	11,929 (0.0036)	11,938 (0.0034)	12,007 (0.0033)
교육 서비스업	123,392 (0.0410)	130,205 (0.0428)	139,201 (0.0445)	147,284 (0.0463)	151,193 (0.0475)	159,099 (0.0497)	157,080 (0.0487)	161,153 (0.0497)	166,840 (0.0512)	165,529 (0.0512)	173,676 (0.0518)	177,993 (0.0513)	180,708 (0.050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3,687 (0.0211)	60,476 (0.0199)	63,671 (0.0203)	66,776 (0.0210)	70,063 (0.0220)	73,140 (0.0228)	83,055 (0.0258)	87,977 (0.0271)	93,815 (0.0288)	98,102 (0.0303)	107,012 (0.0319)	113,227 (0.0326)	120,928 (0.03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5,173 (0.0316)	87,878 (0.0289)	86,596 (0.0277)	89,229 (0.0280)	91,471 (0.0287)	92,678 (0.0289)	90,686 (0.0281)	92,234 (0.0285)	93,488 (0.0287)	92,590 (0.0286)	95,236 (0.0284)	95,508 (0.0275)	95,826 (0.026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325,068 (0.1079)	328,760 (0.1080)	333,497 (0.1065)	339,453 (0.1067)	342,067 (0.1074)	349,297 (0.1090)	354,194 (0.1098)	357,052 (0.1101)	364,060 (0.1117)	362,902 (0.1122)	376,293 (0.1121)	384,197 (0.1108)	396,153 (0.1100)
전체	3,012,107 (1.0000)	3,044,675 (1.0000)	3,130,356 (1.0000)	3,181,769 (1.0000)	3,185,304 (1.0000)	3,203,469 (1.0000)	3,224,690 (1.0000)	3,241,513 (1.0000)	3,258,125 (1.0000)	3,234,878 (1.0000)	3,355,469 (1.0000)	3,468,594 (1.0000)	3,602,476 (1.0000)
서비스업	2,620,483 (0.8700)	2,629,954 (0.8638)	2,706,838 (0.8647)	2,761,496 (0.8679)	2,761,047 (0.8668)	2,760,074 (0.8616)	2,782,685 (0.8629)	2,794,956 (0.8622)	2,821,703 (0.8661)	2,801,029 (0.8659)	2,906,400 (0.8662)	2,996,549 (0.8639)	3,103,850 (0.8616)

2. 법적 진입규제

이 연구는 진입규제, 기업규모 및 기업나이 등이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법적인 진입규제가 존재하는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같이 미시데이터를 이용하여 법적인 진입규제가 고용창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검토한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법적인 진입규제 현황에 대해서는 김재홍(2004, 2008)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는 2001년도와 2008년도 등 두 연도에 한해 법적인 진입규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시계열적인 규제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2002~2007년, 2009~2012년도에 대한 추가적인 진입규제 현황, 변경 등의 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도에 대해서 법제처 법령검색을 통해 기존연구 결과를 확대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법령검색을 통해서 서비스산업 관련 각 법에 나타난 진입규제들이 연도별로 어떤 변화과정을 거쳤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조사결과를 보완·추가하여 기존의 연구결과의 미비점을 보강하는 작업을 하였다. 2007년도 이루어진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이병희 외(2007)의 진입규제 분석보고서를 이용하여 앞서의 김재홍의 진입규제 분석결과에서 누락된 법적인 진입규제의 일부를 보완하였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법적인 진입규제 기초자료는 5-digit 산업에 대해 조사된 것으로 법적 진입규제를 개념 규정하는데 있어서는 8개의 규제를 조사하였다. 김재홍(2008)은 법적인 진입규제를 강진입규제와 약진입규제로 구분하고, 강진입규제와 약진입규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산업은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일반적으로 민간의 진입을 사전적으로 배제하는 정부독점이 가장 강력한 형태의 진입규제가 될 것이며, 그 다음으로 지정과 함께 인가, 승인, 허가, 면허가 비교적 강한 진입규제가 될 것이고, 등록과 신고는 상대적으로 약한 형태의 진입규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김재홍의 분류법에 따라 정부독점, 지정, 인가, 승인, 허가, 면허 6가지를 강한 형태의 진입규제로, 그리고 등록과 신고 2가지를 약한 형태의 진입규제로 분류하였다. 또한 현재 분석에서 산업분류는 제8차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를 결합하여 일관성있게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5-digit 산업수준에서 일부 산업이 통합되거나 분리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일관성있게 재정리하였다.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는 8차의 산업분류체계와 대분류체계의 포

합범위가 많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김재홍(2008)의 연구에서 제8차 한국 표준산업분류 체계를 따라 정리된 법적 진입규제의 수준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표 2] 우리나라 서비스업 별 진입규제: 2011년 기준

	산업수	무규제	비중	약규제	비중	강규제	비중	유규제 (강+약)	비중
도매 및 소매업	169	105	0.6213	41	0.2426	23	0.1361	64	0.3787
운수업	50	12	0.2400	14	0.2800	24	0.4800	38	0.7600
숙박 및 음식점업	25	2	0.0800	19	0.7600	4	0.1600	23	0.92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정보서비스업	40	16	0.4000	15	0.3750	9	0.2250	24	0.6000
금융 및 보험업	37	3	0.0811	9	0.2432	25	0.6757	34	0.9189
부동산업 및 임대업	24	15	0.6250	9	0.3750	0	0.0000	9	0.3750
전문,과학, 및기술서비스업	52	34	0.6538	16	0.3077	2	0.0385	18	0.346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2	9	0.4091	8	0.3636	5	0.2273	13	0.590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6	1	0.0385	0	0.0000	25	0.9615	25	0.9615
교육 서비스업	39	13	0.3333	13	0.3333	13	0.3333	26	0.666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3	2	0.0870	12	0.5217	9	0.3913	21	0.913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47	20	0.4255	17	0.3617	10	0.2128	27	0.574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기타 개인서비스업	50	24	0.4800	22	0.4400	4	0.0800	26	0.5200

자료 : 김재홍(2008)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이병희 외(2007) 자료를 이용하여 보완한 후, 제8차와 제9차의 산업분류를 일치시키는 작업 병행

서비스업 부문은 높은 진입규제를 받고 있다. 상당히 많은 서비스업은 강한 법적인 진입규제를 받고 있어 이들 산업 부문으로의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⁶⁾ 특히,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6.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6) 진입규제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 정부독점, 지정, 허가, 면허, 인가, 승인, 등록, 신고의 8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정부독점 : 정부만이 특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로 전통적으로 정부의 고유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는 행정부문에 대한 진입규제에 적용됨(민간의 진입을 사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의 진입규제임) ② 지정 : 특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 또는 개인에게만 해당 업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민간에 대한 가장 강력한 형태의 진입규제) ③ 허가 ④ 면허: 법규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

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90% 이상의 강규제 또는 약규제 등 진입규제를 받고 있는 서비스업에 속한다.

위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행위(상대적 금지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절대적 금지에 있어서는 허용되지 않음) ⑤ 인가 ⑥ 승인 : 개인이나 법인의 행위에 국가가 동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그 행위에 법률상의 효력을 보충하는 행위 ⑦ 등록: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공시 또는 증명하는 공중행위 ⑧ 신고: 사업자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사항을 보고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병희·조병익·김영민(2007) 참조



1. 진입률과 퇴출률의 개념 규정

가. 개념규정

진입률과 퇴출률을 정의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소멸을 계산할 때 퇴출, 진입, 존속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추정치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노동경제학에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소멸을 분석할 때 대부분의 연구가 Davis, Haltiwanger and Schuch(1996)의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진입, 퇴출, 존속의 정의에 따르고 있다. 진입기업, 퇴출기업, 존속기업의 정의는 두 기간에 걸쳐 나타난 활동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진입기업의 경우 $t-1$ 기에 고용 및 생산활동을 하지 않다가 t 기에 산업내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퇴출기업은 $t-1$ 기에 생산활동과 고용이 t 기에 해당 기업이 산업 외부로 나감에 따라 중지되는 기업이다. 한편 존속기업의 경우 $t-1$ 기와 t 기 두 기간에 생산활동과 고용을 존속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같은 진입기업, 퇴출기업, 존속기업에 대한 정의는 절단데이터의 경우 그 개념규정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⁷⁾

연도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진입률과 퇴출률을 계산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즉, 2년 기준법(two-year rule)과 3년 기준법이 그것이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진입률과 퇴출률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출결과상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⁸⁾ 2년 기준법에서 어느 한 해의 퇴출기업은 같은 해의 진입기업이나 존속기업과 상호

7) 이하의 일부 내용은 이병기(2014) 참조

8) Maliranta and Määtänen(2012)은 전체기간 동안 계속 살아 있는 기업을 존속기업(stayers), 일정기간 중 초기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진입 후 일정기간 말까지 살아있는 기업을 진입기업, 첫해부터 존재하였으나 그 이후 사라진 기업을 퇴출기업으로 정의하고, 일정기간 중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고 끝까지 생존하지도 않은 기업을 방문기업(visitors)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기업을 진입기업, 퇴출기업, 존속기업으로 구분할 때에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정의하기 보다는 특정기간 동안의 기업의 행동패턴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즉, Devine et al.(2012)은 처음 해와 마지막 해 기간동안 살아 있었지만 일부 기간 중 잠시 사라졌다가 다

배타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카테고리별 기업의 수가 합계해서 활동하는 기업의 총수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⁹⁾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진입률과 퇴출률을 정의하고 계산할 때 3년 기준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¹⁰⁾ 3년 기준법 하에서는 단기생존기업(short-lived firms)을 분리해 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단기생존기업은 단지 한해만 생존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은 제외하고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3년 기준법으로 진입율과 퇴출률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모든 카테고리가 상호 배타적이 되어 이들을 합한 활동기업의 총수와 같아진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1년 생존기업은 t기에는 존재하였지만 그 해의 전후 기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단기생존기업들이다. OECD(2004)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기업들은 측정오차를 가져오게 되고 잘못 정의된 자료의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일년생존기업은 생산성 분해를 하는 경우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분석한다.

Ciobanu and Wang(2012)의 방법론은 이같은 3년 기준법을 사용한 퇴출률과 진입률 분석 방법론이다. 3년 기준법¹¹⁾으로 진입과 퇴출을 정의할 때 짧게 생존한 기업체들을 분리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기생존기업은 단지 1년 생존한 기업을 의미한다. 진입기업은 두 기간에 고용자가 양인 기업을 의미한다. 퇴출기업은 t기와 t-1기에 존재하였지만 그 다음기 t+1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업이다.

그러므로 t기에 활동 중인 기업은 진입기업(N), 존속기업(C), 퇴출기업(X), 단기생존기업(S)으로 이루어진다. 즉,

$$T_t = N_t + C_t + X_t + S_t \quad (1)$$

이때 t년도 i산업에 대한 기업의 진입률(R^N), 존속률(R^C), 퇴출률(R^X), 단기생존율(R^S)

시 진입한 기업은 계속기업으로 분류하였고, 진입기업 및 퇴출기업 중에서도 일부 기간 중 사라졌다가 다시 들어온 기업은 그대로 진입기업과 퇴출기업으로 구분하였다.

9) 2년 기준법 하에서 활동기업의 수(T^f), 진입기업의 수(N^f), 존속기업의 수(C^f), 퇴출기업의 수(X^f)라고 할 때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즉 $T_t^f = N_t^f + C_t^f = X_t^f + C_{t+1}^f \neq N_t^f + C_t^f + X_t^f$ 이다.

10) Bartelsman, Scarpetta, and Schivardi(2003)은 3년 기준법을 사용하여 진입률과 퇴출률을 계산하였다.

11) Ciobanu and Wang(2012)은 캐나다의 기업동학을 분석할 때에 2000~2008년 기간의 캐나다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진입률과 퇴출률 등을 분석할 때에 3년 기준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OECD(2004)에서도 3년 기준법을 사용하여 진입률과 퇴출률을 정의하고 분석하였다.

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ext{진입률: } R_{it}^N = \frac{N_{it}}{T_{it}}, \text{ 퇴출률: } R_{it}^X = \frac{X_{it}}{T_{it}}, \text{ 존속률: } R_{it}^C = \frac{C_{it}}{T_{it}}, \text{ 단기생존률: } R_{it}^S = \frac{S_{it}}{T_{it}} \quad (2)$$

기준연도의 활동기업의 비율로 측정되고 단기생존기업은 이 측정치에서 단 한번 고려된다. 진입기업과 퇴출기업은 계속기업에 비해 작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산업고용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는 것은 중요하다.¹²⁾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소멸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2년 기준법을 사용하여 진입기업과 퇴출기업을 구분하고 있는 점이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단기생존기업 처리 방식이다.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과 소멸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단기생존기업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2개년 기준법을 사용하는 경우 단기 생존기업의 존재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다. 본 연구에서는 3년 기준법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퇴출기업, 진입기업, 존속기업, 단기생존기업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렇게 하여 추출한 단기생존기업은 진입사업체에도 같은 고용자 수가 일자리 창출로 잡히고 또 동시에 퇴출사업체로서 같은 수의 고용자 수가 일자리 소멸로 잡히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기생존기업을 제외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멸을 분석한다.

나. OECD 주요국 서비스업의 진입률 · 퇴출률 · 생존율 비교

[표 3]은 OECD 주요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진입률 및 퇴출률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창업률은 11.1%로 나타나 멕시코의 16.1%보다 낮고 호주의 11.3%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창업률은 OECD 주요국가

12) 총진입률과 총퇴출률은 2년 기준법을 사용한 연구와 비교하기 위해 계산할 수 있다. $\widetilde{R}_{it}^N = R_{it}^N + R_{it}^S$, $\widetilde{R}_{it}^X = R_{it}^X + R_{it}^S$. 총기업교체율(turnover rate, R^o)은 단기생존기업 포함 여부에 따라 협의의 기업교체율과 광의의 기업교체율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즉, $R_{it}^O = R_{it}^N + R_{it}^X$ 또는 $R_{it}^O = R_{it}^N + R_{it}^X + R_{it}^S$

가운데 높은 나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의 폐업률은 8.8%로 나타나 호주(8.8%)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높은 창업률을 나타내고 있어 순창업률은 2.3%를 나타내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가 순창업율 감소를 나타낸 것과 대조를 이룬다. 우리나라 서비스 창업률은 15.7%로 OECD 주요국가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편이며, 폐업률은 13.0%로 비교적 높은 국가에 속한다. 서비스업의 창업률과 폐업률을 뺀 순창업률은 한국이 2.7%로 나타나고 있어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스라엘은 순창업률은 높지 않으나 한국을 제외하고 서비스업에서 높은 순창업률을 나타내고 있는 나라에 속한다.

[표 3] OECD 주요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창업률 및 폐업률

	제조업		서비스업	
	창업률	폐업률	창업률	폐업률
Australia	0.113	0.118	0.148	0.147
Austria	0.043	0.061	0.086	0.105
Belgium(2007)	na	0.018	na	0.029
Brazil(2009, 2008)	0.114	0.09	0	0
Canada(2009, 2008)	0.041	0.061	0.071	0.079
Czech Republic (2010, 2009)	0.079	0.094	0.11	0.13
Estonia(2009)	0.054	0.126	0.106	0.149
France(2009)	0.071	0.092	0.109	0.108
Hungary	0.092	0.138	0.146	0.188
Israel(2011, 2009)	0.055	0.039	0.086	0.051
Italy	0.061	0.077	0.101	0.089
Korea(2011, 2010)	0.111	0.088	0.157	0.13
Luxembourg	0.054	0.056	0.108	0.086
Mexico(2008)	0.161	na	0.222	na
New Zealand (2011, 2010)	0.058	0.077	0.092	0.107
Portugal	0.061	0.085	0.104	0.11
Slovenia(2009)	0.052	0.07	0.086	0.075
Spain	0.043	0.092	0.095	0.116
Sweden(2008)	0.053	na	0.101	na
Switzerland(2008)	0.017	na	0.036	na
United States (2011, 2010)	0.021	0.081	0.033	0.097

자료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3

한편 [표 4]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산업 내 기업의 창업 후 1년 생존율 (survival rate)은 약 62%로 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호주, 이스라엘, 이탈리아, 미국 등 국가들은 기업 1년 생존율이 약 85% 정도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업생존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하락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한국은 일관되게 10~20%포인트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의 3년 생존율은 40%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OECD 주요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기업생존율이 OECD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한국 기업의 창업의 질이 낮거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표 4] OECD 주요국의 전체산업·제조업·서비스업의 기업생존율: 2007~2009

	전체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1년 생존율	3년 생존율	1년 생존율	3년 생존율	1년 생존율	3년 생존율
Australia	0.863	0.628	na	na	na	na
Austria	na	na	0.898	0.722	0.858	0.623
Canada	0.879	na	0.883	na	0.883	na
Czech Republic	0.836	0.589	0.868	0.655	0.831	0.577
Spain	0.81	0.464	0.861	0.576	0.815	0.5
Estonia	0.857	0.577	0.88	0.648	0.848	0.567
Finland	0.75	na	0.741	na	0.75	na
Hungary	0.709	0.42	0.734	0.471	0.709	0.424
Israel	0.85	0.554	0.882	0.614	0.849	0.551
Italy	0.848	0.548	0.883	0.609	0.854	0.572
Korea	0.62	0.41	0.7	0.5	na	na
Luxembourg	0.902	0.668	0.813	0.634	0.899	0.66
Netherlands	0.816	na	0.837	na	0.813	na
New Zealand	0.711	0.457	0.759	0.523	0.711	0.458
Portugal	0.712	0.417	0.792	0.51	0.704	0.414
Slovak Republic	0.833	na	0.857	na	0.83	na
Slovenia	0.9	0.684	0.903	0.693	0.9	0.679
United States	0.846	0.576	0.913	0.659	0.831	0.575

자료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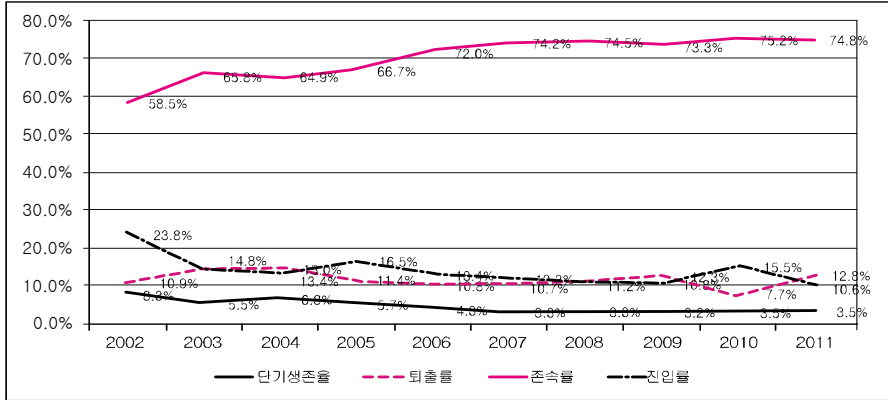
2. 서비스업에서의 진입·퇴출·존속·단기생존

이제는 이미 논의한 진입률 및 퇴출률 계산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진입률과 퇴출률을 계산하였다. 우선 전산업의 진입률과 퇴출률을 보여주는 것이 [그림 1]이다. 이 그림을 보면 전산업의 경우 진입률은 떨어지고, 존속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서비스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표 5]를 보면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사업체 진입률, 퇴출률 및 존속률을 보여준다. 특징적인 것은 사업체의 진입률이 뚜렷이 저하하고 있는 현상이다. 서비스업의 경우 2002년 진입률은 24.2%였으나 2011년에 진입률은 10.5%로 뚝 떨어졌다. 반면에 사업체 존속률은 2002년 57.9%에서 2011년 74.2%로 뚜렷하게 높아진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퇴출률은 2002년 10.8%였으나, 2011년 13.2%로 나타났다. 퇴출률은 상대적으로 덜 증가하였다. 이같은 상황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이 [그림 2]과 [그림 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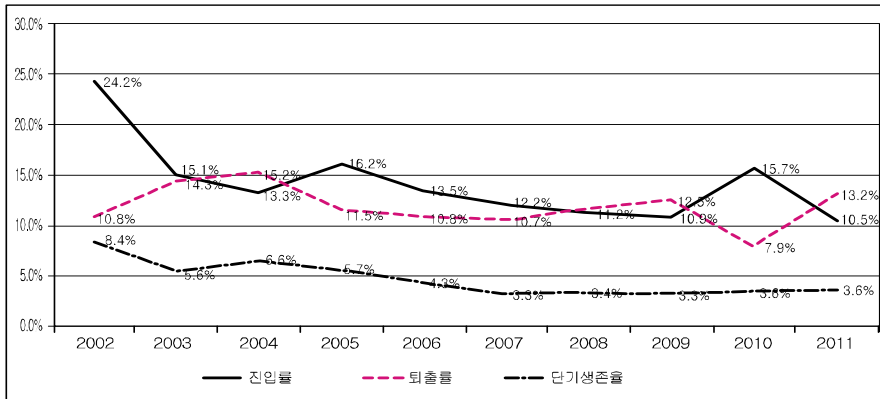
[표 6]을 보면 2002~2011년의 경우 전체산업의 기업교체율(진입률과 퇴출률의 합)은 26.4%로 나타나고 있고 서비스업의 기업교체율은 26.6%로 나타나고 있다. 전산업의 순진입률은 1.7%, 서비스업의 순진입률은 1.6%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가운데 기업교체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기업교체율은 31.6%로 나타났다.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기업교체율은 31.4%로 나타났다. 한편 순진입률이 높은 산업으로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2002~2011년 기간 동안 연평균 5.8%의 높은 기업순진입률을 나타내었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연간 5.3%의 높은 기업순진입률을 나타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의 경우에도 3.8% 내외의 높은 기업순진입률을 나타냈다.

기업규모별로 진입률 및 퇴출률을 살펴 보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기업교체율은 매우 높다. 전체산업의 경우 0~4인 기업규모의 기업교체율은 26.4%를 보였으나 500인 이상의 기업규모에서 기업교체율은 10.3%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순진입율을 보면 0~4인 기업규모에서는 1.9%로 나타나고 있고 500인 이상의 기업규모에서는 1.3%의 순기업진입률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산업에서나 서비스업에서 순기업 진입률이 높은 기업규모는 5~9인 기업규모로 나타났다. 전체산업의 경우 5~9인 기업규모에서의 순기업진입률은 5.6%로 나타났고 서비스업의 경우 6.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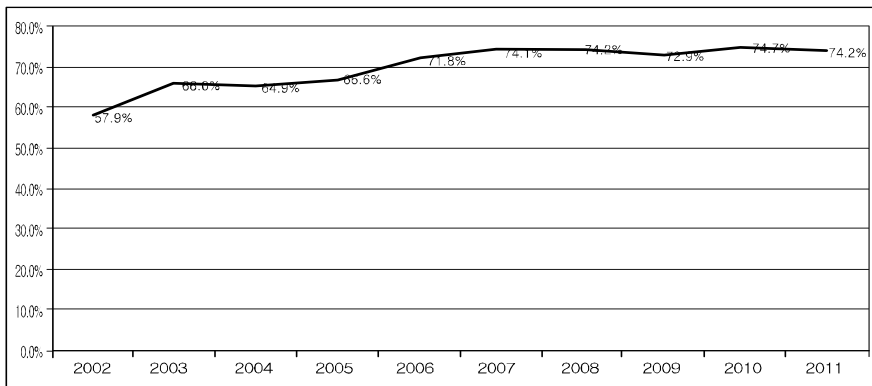
[그림 1] 전산업의 사업체 진입률·퇴출률·존속률·단기생존률



[그림 2] 서비스업의 사업체 진입률·퇴출률·단기생존률



[그림 3] 서비스업의 사업체 존속률



[표 5] 전체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진입·퇴출·존속·단기생존 변화추이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산업	단기생존율	0.0826	0.0551	0.0675	0.0568	0.0425	0.0327	0.0327	0.0324	0.0345	0.0352
	퇴출률	0.1085	0.1473	0.1496	0.1137	0.1076	0.1065	0.1143	0.1232	0.0769	0.1276
	존속률	0.5852	0.6576	0.6492	0.6672	0.7196	0.7417	0.7447	0.7333	0.7515	0.7482
	진입률	0.2376	0.1481	0.1343	0.1652	0.1336	0.1217	0.1109	0.1075	0.1554	0.1056
서비스업	단기생존율	0.0842	0.0555	0.0658	0.0568	0.0433	0.0326	0.0338	0.0332	0.0357	0.0363
	퇴출률	0.1084	0.1445	0.1524	0.1149	0.1078	0.1065	0.1165	0.1248	0.0790	0.1320
	존속률	0.5794	0.6595	0.6492	0.6661	0.7181	0.7411	0.7421	0.7289	0.7472	0.7418
	진입률	0.2424	0.1505	0.1325	0.1620	0.1349	0.1220	0.1124	0.1094	0.1565	0.1052

[표 6] 전체산업의 산업별 진입·퇴출·존속·단기생존 기업비중

	진입률	퇴출률	존속률	단기생존률
전산업	0.1406	0.1234	0.6847	0.0513
서비스업	0.1412	0.1249	0.6822	0.0518
농업, 임업 및 어업	0.1144	0.1101	0.7492	0.0262
광업	0.0890	0.0908	0.7904	0.0298
제조업	0.1275	0.1086	0.7219	0.04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1023	0.0702	0.8003	0.0272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1698	0.1090	0.6787	0.0426
건설업	0.1698	0.1361	0.6230	0.0712
도매 및 소매업	0.1305	0.1219	0.6944	0.0532
운수업	0.1586	0.1346	0.6443	0.0625
숙박 및 음식점업	0.1551	0.1469	0.6394	0.058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1760	0.1376	0.5776	0.1088
금융 및 보험업	0.1213	0.0966	0.7228	0.0593
부동산업 및 임대업	0.1532	0.1242	0.6670	0.055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1555	0.1166	0.6663	0.061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1870	0.1293	0.5975	0.086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766	0.0554	0.8488	0.0191
교육 서비스업	0.1503	0.1210	0.6881	0.040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1164	0.0634	0.8035	0.016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1582	0.1514	0.6425	0.047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0.1152	0.0987	0.7549	0.0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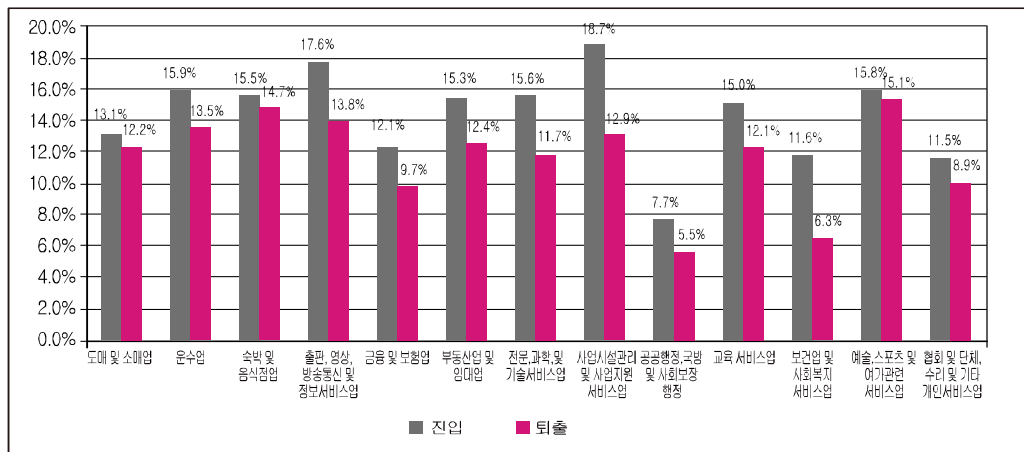
[표 7] 전산업의 기업규모별 진입·퇴출·존속·단기생존 기업비중

	진입률	퇴출률	존속률	단기생존률
0~4	0.1417	0.1226	0.6874	0.0483
5~9	0.1510	0.0947	0.7111	0.0432
10~19	0.1226	0.0816	0.7621	0.0338
20~49	0.1099	0.0764	0.7841	0.0295
50~99	0.0835	0.0558	0.8384	0.0222
100~299	0.0767	0.0519	0.8481	0.0233
300~499	0.0710	0.0545	0.8512	0.0233
500+	0.0579	0.0449	0.8745	0.0227

[표 8] 서비스업의 기업규모별 진입·퇴출·존속·단기생존 기업비중

	진입률	퇴출률	존속률	단기생존률
0~4	0.1421	0.1232	0.6860	0.0488
5~9	0.1495	0.0898	0.7203	0.0404
10~19	0.1225	0.0767	0.7688	0.0320
20~49	0.1183	0.0764	0.7748	0.0305
50~99	0.0850	0.0514	0.8422	0.0213
100~299	0.0823	0.0511	0.8420	0.0246
300~499	0.0773	0.0540	0.8470	0.0218
500+	0.0613	0.0455	0.8721	0.0212

[그림 4] 서비스산업별 진입률과 퇴출률





1.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개념 규정

(1) 기존의 국내외 연구결과

가. 해외 관련 연구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진입과 퇴출, 사업의 확장과 축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일자리 분석은 단순히 고용증가를 살펴보는 것에 그쳐 일자리 창출의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논쟁은 그 정책적 함의가 매우 큰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고 주의 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규제산업과 비규제산업 간 일자리 창출 효과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가설이다. 둘째 기업규모의 차이와 기업나이의 차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률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가설이다. 이같은 논의를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부문의 사업체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해 봄으로써 어떤 기업 규모에서 일자리 창출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나이의 기업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미 격렬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우선 사업체 규모와 일자리 창출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들의 결과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Wagner(1995)는 독일 제조업의 사업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멸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일자리 창출과 소멸이 기업규모가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순일자리 창출률과 기업규모 간에 어떤 체계적인 관계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소규모 기업은 새로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아주 높지만 소멸된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ohti(2000)는 Wagner와 아주 비슷한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률도 높지만 일자리 소멸률도 매우 높고, 기업규모와 순일자리 창출률 간에 체계적인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소규모 기업과 대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의 질(job quality) 측면에서는 아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Picot and Dupuy(1998)은 캐나다 모든 기업을 포함하는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일자리를 분석하였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일자리 성장률은 거의 비슷하였다.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소멸은 각 기업규모 그룹별로 일부 기업에 매우 집중되었다. 각 기업규모별로 고도성장기업군(fast growing firm)이 존재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일자리 창출이 소규모 기업군에서 나타나기는 했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대규모기업은 소규모 기업보다 높은 일자리 창출률을 보여주었다. Birch(1979)는 1970년대에 종사자 100명 미만의 기업들이 미국에서 10개의 신규 일자리 중에서 8개를 창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중소기업이 고용창출 면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많은 실증연구들은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엔진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률이 높지만 소멸률 또한 높아, 순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규모 사이에는 체계적인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¹³⁾ Hijzen, Upward and Wright(2007)은 영국 산업을 대상으로 1997~2005년에 걸친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이같은 관계를 분석하였다. 서비스부문 기업은 일자리 창출률이 가장 높았고 일자리 소멸률도 약간 높았다. 새로운 일자리의 1/3은 새로운 진입기업이 만들어 낸 것이고 소멸된 일자리의 절반은 퇴출기업에 의한 것이다. 100명 이하의 종업원 수를 갖는 소규모 기업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큰 일자리 창출비율과 일자리 파괴비율을 나타내었다.

한편, Davis, Haltiwanger and Schuch(1996)는 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률에 대한 신화가 통계적 오류임을 지적하고 있다. 소기업은 일자리 창출률이 높지만 동시에 일자리 소멸률도 높기 때문에 일자리 순증가율이 낮으며, 오히려 대기업과 업력이 오래된 기업들이 일자리 순증가율이나 일자리 지속성도 높다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의 상당 부분이 신생 기업에서 나타나지만, 수많은 신생 기업들이 시장에서의 생존에 실패하기 때문에 소기업에서는 일자리 소멸도 높다는 것이다. Haltiwanger, Jarmin and Miranda(2010)은 기업나이를 통제하고 나면 기업규모와 기업성장 간에 어떤 체계적인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창업기업과 젊은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일본 경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최근 분석한 권혁욱(2012)의 연구 결과는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기업규모와 고용의

13) Davis et al.(1993) 참조

순증가에 대한 강한 역의 상관관계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을 가장 활발히 창출한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500인 이상 5,000인 미만의 중견기업이었다. 둘째, 일본의 독립계 기업은 고용을 크게 감소시켰지만, 일본의 자회사와 외국계 기업은 고용을 증가시켰음을 발견했다. 셋째, 기업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이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일본의 경우 30년 넘게 존속하는 기업은 고용을 감소시켰다. 이같은 결과는 고용창출의 결정요인으로 기업연령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젊은 기업의 산업별 분포를 분석하고 어떤 산업에서 젊은 기업이 성공하는가를 분석했다. 그 결과 통신, 금융·보험, 사업서비스업, 기계, 개인 서비스업 등에서 젊은 기업이 크게 성공하였다. 현재 일본이 직면한 청년실업과 같은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규모에 근거해서 작은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정책보다는 기업연령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 국내의 관련연구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분석은 이루어졌으나 고용창출이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원천에 대한 심도 있는 종합적인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많은 진입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러한 진입규제가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사업체 자료를 이용한 미시차원의 실증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우선 제조업 부문에 대한 미시자료를 이용한 일자리 창출과 소멸 분석은 일부 이루어진 바 있다. 김혜원(2004)의 연구는 한국 광공업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광공업통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광공업에서 지난 20여년 동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소멸의 유량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지속사업체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은 연평균 9.75%와 10.33%로 측정되었는데 이러한 수치는 OECD국가들과 몇몇 개발도상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의 지속성이 낮고 일자리변동의 집중성이 높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한국의 일자리의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권혜자(2006)의 연구가 있다. 이 분석을 통해서 1988년을 기점으로 일자리 창출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일자리 소멸은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사업체의 시장지배력 수준은 일자리 창출에는 부의 효과를 미치고, 일자리 소멸에는 정의 효과를 미치며, 일자리 순증가율에는 부의 효과

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윤규·고영우(2006)는 고용보험DB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의 원천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작을수록) 일자리 창출률과 일자리 소멸률이 모두 낮아져서(높아져서) 일자리 재배치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순일자리 증가율에서는 사업체 분포의 양 끝, 즉 20인 미만과 500인 이상 사업체가 높게 나타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소규모 사업체와 대규모 사업체가 상대적으로 높은 순일자리 증가율을 보여준다고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력의 원천이라는 단순한 인식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이 기업지원 정책의 우선적인 대상 집단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적 시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서비스업은 높고 많은 진입규제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규제개혁이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는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이 필요한 부문이고, 또 기업나이별, 세부산업별, 기업규모별 일자리 창출 효과 검토를 통해서 현실적인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대안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산업부문으로 판단된다. 권혜자(2011)는 서비스 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전현배 외(2013)는 전국사업체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서비스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높은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을 보여주었다. 서비스업은 일자리 순증가율 또한 제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적으로 활발한 창출과 소멸을 보여주는 산업이나 지역이 궁극적으로 더 높은 순일자리 증가율을 보여준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또한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의 성과가 기존사업체의 성장(확장)을 통한 고용창출의 성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사업체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규모 신규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체의 일자리 소멸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일자리 순증가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과 지속사업체 중 영세사업체의 일자리 순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이들 사업체에 의존하는 일자리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하였다. 서비스업의 경우 창출률과 소멸률은 사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서서히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으나, 일자리 순증가율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을 Davis-Haltiwanger-Schuh 방식에 따라 추계해 본 것이다. 위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사업체 자료를 이용하여 진입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기업나이를 고려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어떤지, 기업규모와 기업나이를 통제된 상태에서 기업진입 규제가 일자리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엄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이 사업체 자료의 이용이 가능하였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연구였다. 일부 연구는 서비스업 부문에 대해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일자리 창출이 기업의 진입규제에 의해 제약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진입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이루어진 바 없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진입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사업체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서비스 부문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기업나이와 기업규모가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계량경제학적인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바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나이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또한 심도있게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일자리 창출과 소멸 분석모형

일자리 창출의 원천은 무엇인가? 일자리의 창출 및 소멸에 따른 변동은 산업간, 지역간, 사업체 규모간 끊임없이 일자리를 재분배하는 과정이다. 이 연구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규정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자리(job)는 근로자에 의해 채워진 고용지위로 정의할 수 있고,¹⁴⁾ 일반적으로 사업체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사업체 내 일자리 수의 변동을 중심으로 일자리의 변동을 분석하게 된다. 일자리 수의 시간에 따른 변동의 배후에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소멸이 자리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소멸은 주로 Davis and Haltiwanger(1996)가 정의한 개념을 사용하였고 이는 일자리 변동을 연구하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이다. 일자리 변화의 규모 자체보다는 일자리의 창출, 확장, 소멸, 축소라는 동태적인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일자리가 새로운 기업에 의한 창출 또는 기존기업의 확장에 따라 일자리가 창출되었는지, 혹은 기존기업의 축소에 따른 일자리 소멸 또는 폐업에 따른 일자리 축소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변화는 사업체 수와 일자리 수의 복잡하고 다양한 동태적인 변화들이 함께

14) Davis, Haltiwanger and Schuh(1996) 참조

개입되어 나타나는 결과이지만, 일자리 창출과 소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일자리 변동을 보다 단순화하여 분석할 수가 있다.¹⁵⁾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동태적인 변화와 일자리 창출·소멸의 관계 분석, 기업규모별·기업나이별·산업별 일자리 창출 등 기업특성별 일자리 창출·소멸 문제를 분석한다. 기업의 진입과 퇴출, 존속기업의 사업 확장과 축소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소멸을 분석하기 위해 Davis, Haltiwanger and Schuch(1996)가 사용했던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 일자리 순증가율 등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제는 일자리 창출·일자리 소멸·순일자리 창출·일자리재배치율 등 다양한 개념을 정리한다.¹⁶⁾ 한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두 기간의 고용자수를 이용하여 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우선 t 기 I 산업의 일자리 창출(JC_{It})은 확장기업의 고용량증가(즉 $(t-1)$ 과 t 두 기간의 고용량 수준의 비교)와 t 기 그 산업부문에 진입한 새로운 기업의 고용자 수를 합한 것이다. t 기 I 산업의 고용파괴(JD_{It})는 기업고용수준의 감소와 그 부분으로부터 퇴출로 인해 나타난 고용자 수의 감소를 합한 것이다.

일자리 창출률과 일자리 소멸률은 일자리 창출량과 일자리 소멸량을 산업크기 측정치로 나누어 줌으로써 구할 수 있다. 기업 i 의 크기는 두 기간, 즉 $(t-1)$ 과 t 기의 평균 고용규모로 측정할 수 있다. 즉, $Z_{it} = 0.5(N_{it} + N_{it-1})$ 이고 이에 상응하는 고용증가율은 $g_{it} = \frac{\Delta N_{it}}{Z_{it}}$ 이다.

결국, 산업 I 의 일자리 창출률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JC_{It} = \sum_{i \in S^+, I \in E_{It}} \frac{Z_{it}}{Z_{It}} g_{it} = \frac{JC_{It}}{Z_{It}} \quad (3)$$

또한, 산업 I 의 일자리 소멸률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JD_{It} = \sum_{i \in S^-, I \in X_{It-1}} \frac{Z_{it}}{Z_{It}} |g_{it}| = \frac{JD_{It}}{Z_{It}} \quad (4)$$

15) 권혜자(2008) 참조

16) 이들 논문이 발표된 이후 오래되었지만 노동경제학계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멸을 추계하는 다른 방식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위 두식은 산업부문 별 일자리 창출률과 일자리 소멸률이 개별기업의 성장률을 가중평균하여 구할 수 있으며, 이때 가중치는 개별기업의 고용비중을 사용한다.

Davis, Haltiwanger and Schuch(1996)은 위의 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계산하고 있다. 즉,

$$\text{순일자리 증가율} ; net_{It} = JC_{It} - JD_{It} \quad (5)$$

$$\text{일자리 재배치율} : jr_{It} = JC_{It} + JD_{It} \quad (6)$$

$$\text{일자리 초과 재배치율} : xjr_{It} = jr_{It} - |net_{It}| \quad (7)$$

순일자리 증가율은 경제내의 일자리 변동의 동태적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약점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일자리 재배치율에 대한 분석은 순일자리 증가율이 가지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¹⁷⁾ 이러한 측정치들은 전체경제는 물론 기업연령, 기업나이 등에 대해서도 구해질 수 있다.

(3) 일자리 창출과 소멸 분석결과의 국제비교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동일한 방법론, 즉 Davis-Haltiwanger-Schuh 방식을 이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소멸을 연구한 많은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분석기간이 상이, 분석 대상 산업이 전체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분석단위에 있어서도 기업분석인지 또 사업체 분석인지에 따라 분석결과가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분석기간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경기변동의 하강기인지 상승기인지에 따라서도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한 분석결과는 아직 없기 때문에 국제비교에 있어서는 현재의 제약된 분석결과 하에서 대략적인 비교·분석을 해 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표 3]은

17) 위의 식(5)와 식(6)을 보면 순일자리 증가율이 같은 값을 갖는다고 해도 일자리 재배치율은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일자리 창출률이 0.25, 소멸률이 0.2인 경우와 일자리 창출률이 0.07, 소멸률이 0.02인 경우 순일자리 증가율은 0.05로 동일하게 계산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일자리 재배치율은 0.45이고 후자는 0.09에 불과하다. 일자리가 활발하게 창출·소멸되는 경제와 일자리 창출·소멸이 거의 없는 경제 모두 순일자리 증가율은 같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순일자리 증가율은 경제 내의 일자리변동의 동태적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약점을 갖는다. 일자리 재배치율 분석은 순일자리 증가율이 가지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윤윤규·고영우(2009) 참조

Centeno et al.(2007)의 국제비교 결과에 의하면 총일자리 재배치율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일자리 창출률은 독일의 9.0%에서부터 덴마크의 16.0%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여준다. 일자리 소멸률은 독일의 7.5%에서 뉴질랜드의 19.8%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포를 하고 있다. 순일자리 창출률은 -1.6%에서 2.6%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포를 하고 있다. 일자리 재배치율은 독일의 16.5%에서 뉴질랜드의 35.5%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한 분포를 보여준다. 기존 기업의 순사업확장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국가(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미국 등)가 있는가 하면, 순기업진입의 증가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 국가(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포르투갈 등)도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자리변동은 분석기간(경기상승기 대 경기하강기), 분석단위(기업체 대 사업체), 분석대상(제조업 대 서비스업)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표 9] 주요국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 비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미국	포르투갈
	1983 ~1991	1983 ~1989	1986 ~1991	1991 ~1996	1983 ~1990	1984 ~1992	1987 ~1992	1985 ~1992	1998 ~2005	1984 ~1991	2001 ~2006
일자리 창출률	14.5	16.0	10.4	10.2	9.0	12.3	15.7	15.5	15.2	13.0	13.3
창업	3.2	6.1	3.9	4.0	2.5	3.9	7.4	6.5	5.4	8.4	4.6
사업확장	11.2	9.9	6.5	6.2	6.5	8.4	8.3	8.0	9.8	4.6	8.7
일자리 소멸률	11.9	13.8	12.0	10.3	7.5	11.1	19.8	14.6	14.5	10.4	11.8
퇴출	3.1	5.0	3.4	3.7	1.9	3.8	8.5	5.0	7.3	7.3	4.7
사업축소	8.8	8.8	8.7	6.6	5.6	7.3	11.3	9.6	7.2	3.1	7.1
순일자리 변동율	2.6	2.2	-1.6	-0.1	1.5	1.3	-4.1	-0.1	0.7	2.6	1.6
신생기업	0.2	1.1	0.5	0.3	0.5	0.2	-1.1	1.5	-1.9	1.1	4.0
순사업확장	2.4	1.1	-2.1	-0.4	0.9	1.1	-3.0	-1.6	2.6	1.5	1.6
일자리 재배치율(job turnover)	26.3	29.8	22.4	20.5	16.5	23.4	35.5	29.1	29.7	23.4	25.1
실업률	9.5	7.5	3.4	11.3	7.6	11.1	7.5	2.5	5.2	6.3	5.8

자료 : Centeno et al.(2007) 참조

2.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

(1) 전체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가. 서비스산업의 연도별·산업별 일자리 창출률

이제는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전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비교하여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려고 한다. 전산업의 경우 2002년에 437만 5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348만 1천명의 일자리가 소멸된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에는 333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321만 3천명 정도의 일자리가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2~2011년 기간 중 평균 369만 5천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321만 3천명의 일자리가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산업의 경우 연평균 약 48만 1천명 정도의 순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 2002~2011년 기간 중 연평균 약 273만 6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35만 3천명의 일자리가 소멸된 것으로 나타나 연평균 약 38만 3천명 정도의 순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과 [표 11]을 보면 전체산업보다 서비스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002~2011년 기간 중 전산업의 일자리 창출률은 24.4%, 일자리 소멸률은 21.2%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률은 25.1%, 일자리 소멸률은 21.6%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2~2011년 기간 중 전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약 3.2%였으나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률은 약 3.5%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약 1.8%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약 두 배 높은 순일자리 창출률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량이 얼마나 변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일자리 재배치율에 있어서는 전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거의 거의 비슷한 45~46%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의 일자리 재배치율은 약 38.0%로 나타나 서비스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전산업의 일자리 창출률 분석결과

	일자리 창출수	일자리 소멸수	일자리 순증가수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소멸률	순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재배치율
2002	4,375,712	3,481,550	894,162	0.3285	0.2614	0.0671	0.5900
2003	3,422,154	3,086,623	335,531	0.2456	0.2215	0.0241	0.4671
2004	3,312,148	3,810,881	-498,733	0.2391	0.2751	-0.0360	0.5142
2005	4,248,098	3,316,049	932,049	0.3020	0.2357	0.0663	0.5377
2006	3,420,011	2,961,552	458,459	0.2317	0.2006	0.0311	0.4323
2007	3,374,672	2,855,430	519,242	0.2213	0.1872	0.0340	0.4085
2008	3,561,716	3,153,893	407,823	0.2266	0.2007	0.0259	0.4273
2009	3,600,932	3,267,076	333,856	0.2238	0.2031	0.0208	0.4269
2010	4,307,854	3,271,827	1,036,027	0.2569	0.1951	0.0618	0.4519
2011	3,330,180	2,934,274	395,906	0.1904	0.1678	0.0226	0.3582
연평균	3,695,348	3,213,916	481,432	0.2443	0.2125	0.0318	0.4568

[표 11]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률 분석결과

	일자리 창출수	일자리 소멸수	일자리 순증가수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소멸률	순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재배치율
2002	3,274,609	2,530,023	744,586	0.3488	0.2695	0.0793	0.6183
2003	2,526,003	2,258,788	267,215	0.2553	0.2283	0.0270	0.4836
2004	2,410,740	2,681,826	-271,086	0.2437	0.2711	-0.0274	0.5148
2005	3,014,071	2,441,652	572,419	0.3001	0.2431	0.0570	0.5432
2006	2,532,877	2,162,331	370,546	0.2409	0.2057	0.0352	0.4466
2007	2,590,174	2,074,218	515,956	0.2364	0.1893	0.0471	0.4257
2008	2,713,538	2,299,732	413,806	0.2376	0.2013	0.0362	0.4389
2009	2,752,640	2,409,171	343,469	0.2333	0.2041	0.0291	0.4374
2010	3,093,792	2,530,648	563,144	0.2525	0.2065	0.0460	0.4590
2011	2,458,804	2,143,112	315,692	0.1937	0.1688	0.0249	0.3625
연평균	2,736,725	2,353,150	383,575	0.2514	0.2162	0.0352	0.4676

서비스업 부문의 순일자리 창출률을 살펴 본 것이 [표 12]와 [그림 6]이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부문의 순일자리 창출률이 연평균 9.7%로 매우 높은 일자리 창출률을 보이고 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경우 연평균 8.2%의 순일자리 창출률을 나타내어 서비스 부문에서 상당히 빠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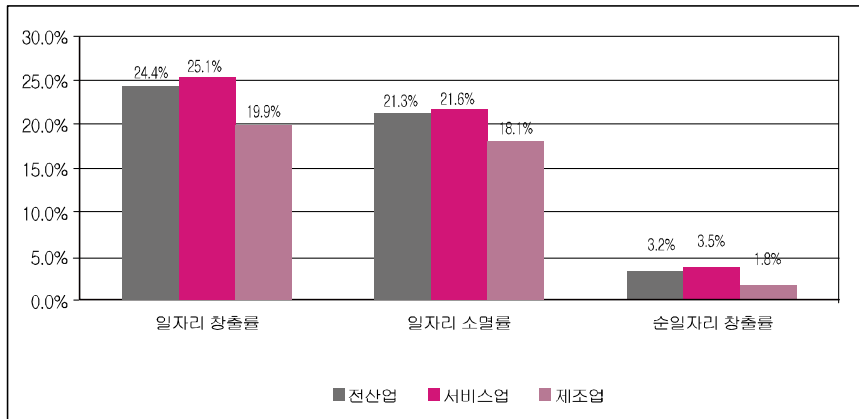
가지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순일자리 창출률이 6.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각각 1.6%, 1.7%의 낮은 순일자리 창출률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이 산업 부분은 일자리 창출률도 비교적 높지만 이와 함께 일자리 소멸률도 동시에 높아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순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표 12] 산업별 일자리 창출률 분석결과: 2002~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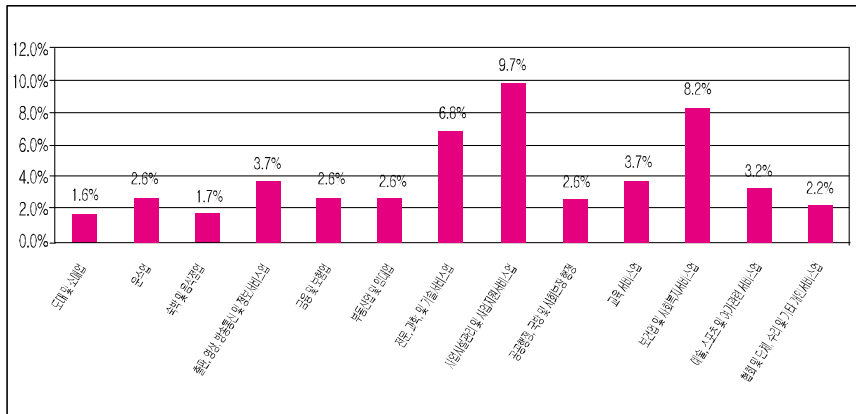
	일자리 창출수	일자리 소멸수	일자리 순증가수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소멸률	순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재배치율
전산업	3,695,348	3,213,916	481,432	0.2443	0.2125	0.0318	0.4568
서비스업	2,736,725	2,353,150	383,575	0.2514	0.2162	0.0352	0.4676
농업, 임업 및 어업	8,107	8,327	-220	0.2598	0.2668	-0.0071	0.5266
광업	2,947	3,259	-312	0.1667	0.1843	-0.0176	0.3510
제조업	643,500	584,017	59,483	0.1993	0.1809	0.0184	0.380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7,928	6,450	1,478	0.1238	0.1007	0.0231	0.2244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2,823	17,895	4,928	0.2555	0.2004	0.0552	0.4559
건설업	326,514	271,575	54,939	0.4096	0.3406	0.0689	0.7502
도매 및 소매업	620,997	582,287	38,710	0.2609	0.2447	0.0163	0.5056
운수업	185,492	163,036	22,456	0.2166	0.1904	0.0262	0.4070
숙박 및 음식점업	445,770	418,559	27,211	0.2720	0.2554	0.0166	0.527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4,716	99,490	15,226	0.2759	0.2393	0.0366	0.5151
금융 및 보험업	153,358	137,453	15,904	0.2509	0.2249	0.0260	0.475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6,672	96,452	10,219	0.2715	0.2455	0.0260	0.517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46,196	110,520	35,676	0.2777	0.2099	0.0678	0.487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93,438	144,857	48,581	0.3856	0.2887	0.0968	0.674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9,295	74,903	14,392	0.1603	0.1345	0.0258	0.2948
교육 서비스업	231,566	185,524	46,042	0.1861	0.1491	0.0370	0.335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38,260	76,392	61,868	0.1834	0.1013	0.0821	0.284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2,354	63,911	8,443	0.2781	0.2456	0.0324	0.523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85,416	169,008	16,408	0.2443	0.2227	0.0216	0.4670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일자리 재배치율이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률과 일자리 창출률을 합한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소멸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 경우 일자리 재배치율은 증가한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 일자리 재배치율은 6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대략 50% 초반의 일자리 재배치율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공공행정 및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 등 대표적인 규제산업은 낮은 일자리 재배치율을 나타내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5]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률·소멸률·순일자리 창출률



[그림 6] 서비스산업별 순일자리 창출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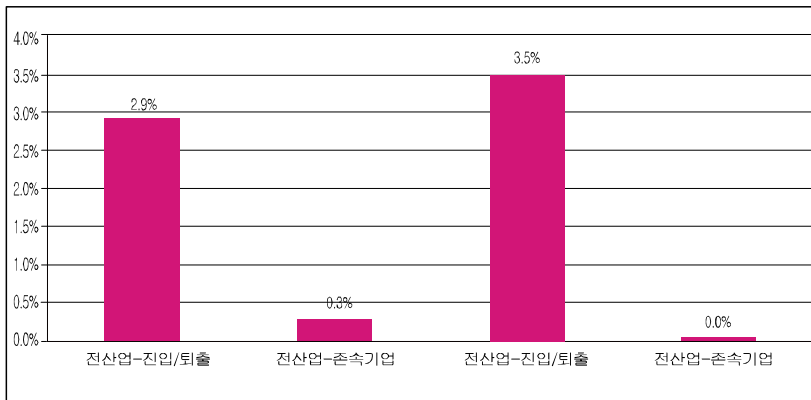
나. 일자리 창출의 원천 : 진출입기업 vs. 존속기업

이제는 순일자리 창출이 기업의 진입과 퇴출 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기존기업의 사업확장이나 사업축소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Centeno et al.(2007) 및 Genda(1998) 등은 일자리 변동이 창업 및 퇴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기존 사업체의 확장이나 축소를 통해 발생한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표 13]과 [그림 7]을 보면 순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진입·퇴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전산업에서는 2.9%가 기업의 진출입 과정에서 순일자리 증가율이 있었던 반면에 기존기업의 사업확장이나 사업축소에 의한 순일자리 창출은 그리 많지 않았다. 또한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순일자리 창출률은 전산업 보다 높은 3.5%가 기업의 진입과 퇴출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기존기업의 사업확장이나 축소 과정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3] 전산업 및 서비스산업 전체의 진출입기업 및 존속기업의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창출수	일자리 소멸수	일자리 순증가수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소멸률	순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재배치율
전산업	진입/퇴출	1,801,107	1,362,552	438,555	0.1191	0.0901	0.0290	0.2092
	존속기업	1,894,241	1,851,364	42,877	0.1252	0.1224	0.0028	0.2476
서비스업	진입/퇴출	1,439,765	1,059,741	380,024	0.1323	0.0973	0.0349	0.2296
	존속기업	1,296,960	1,293,409	3,551	0.1191	0.1188	0.0003	0.2380

[그림 7] 진입·퇴출기업과 존속기업 간 순일자리 창출률



한편 [표 14]는 서비스업을 세부 산업별로 보면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기업의 진입과 퇴출과정에서 발생한 순일자리 창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도매·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존속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마이너스 값을 보이고 있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경우 기업의 진입과 퇴출에 의한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기존기업의 사업확장에 의한 일자리 창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4] 산업별 진출입기업 및 존속기업의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창출수	일자리 소멸수	일자리 순증가수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소멸률	순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재배치율
농업, 임업 및 어업	진입/퇴출	2,903	2,532	372	0.0930	0.0811	0.0119	0.1741
	존속기업	5,204	5,796	-592	0.1667	0.1857	-0.0190	0.3524
광업	진입/퇴출	1,392	1,306	85	0.0787	0.0739	0.0048	0.1526
	존속기업	1,556	1,953	-397	0.0880	0.1104	-0.0225	0.1984
제조업	진입/퇴출	289,893	247,265	42,628	0.0898	0.0766	0.0132	0.1664
	존속기업	353,606	336,752	16,855	0.1095	0.1043	0.0052	0.213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진입/퇴출	3,215	2,539	676	0.0502	0.0396	0.0106	0.0898
	존속기업	4,713	3,911	802	0.0736	0.0611	0.0125	0.1346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진입/퇴출	11,902	7,226	4,675	0.1333	0.0809	0.0524	0.2142
	존속기업	10,921	10,668	252	0.1223	0.1195	0.0028	0.2417
건설업	진입/퇴출	119,454	90,822	28,633	0.1498	0.1139	0.0359	0.2638
	존속기업	207,060	180,753	26,306	0.2597	0.2267	0.0330	0.4864
도매 및 소매업	진입/퇴출	330,062	270,609	59,453	0.1387	0.1137	0.0250	0.2524
	존속기업	290,935	311,678	-20,742	0.1223	0.1310	-0.0087	0.2532
운수업	진입/퇴출	103,460	81,223	22,237	0.1208	0.0949	0.0260	0.2157
	존속기업	82,032	81,813	219	0.0958	0.0955	0.0003	0.1913
숙박 및 음식점업	진입/퇴출	273,761	213,526	60,235	0.1670	0.1303	0.0367	0.2973
	존속기업	172,010	205,033	-33,024	0.1049	0.1251	-0.0201	0.23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진입/퇴출	60,812	44,577	16,235	0.1462	0.1072	0.0390	0.2534
	존속기업	53,904	54,913	-1,009	0.1296	0.1321	-0.0024	0.2617
금융 및 보험업	진입/퇴출	73,680	55,926	17,754	0.1205	0.0915	0.0290	0.2120
	존속기업	79,678	81,528	-1,850	0.1303	0.1334	-0.0030	0.2637
부동산업 및 임대업	진입/퇴출	57,729	37,625	20,104	0.1470	0.0958	0.0512	0.2427
	존속기업	48,942	58,827	-9,885	0.1246	0.1497	-0.0252	0.274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진입/퇴출	70,992	46,308	24,684	0.1349	0.0880	0.0469	0.2228
	존속기업	75,204	64,212	10,992	0.1429	0.1220	0.0209	0.264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진입/퇴출	76,812	49,093	27,718	0.1531	0.0979	0.0553	0.2510
	존속기업	116,626	95,763	20,863	0.2325	0.1909	0.0416	0.423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진입/퇴출	27,086	20,831	6,254	0.0486	0.0374	0.0112	0.0860
	존속기업	62,209	54,072	8,137	0.1117	0.0971	0.0146	0.2088

교육 서비스업	진입/퇴출	94,604	65,663	28,942	0.0760	0.0528	0.0233	0.1288
	존속기업	136,962	119,861	17,101	0.1101	0.0963	0.0137	0.206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진입/퇴출	69,972	28,337	41,635	0.0928	0.0376	0.0552	0.1304
	존속기업	68,289	48,055	20,233	0.0906	0.0637	0.0268	0.154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진입/퇴출	39,543	29,572	9,971	0.1520	0.1137	0.0383	0.2656
	존속기업	32,811	34,339	-1,528	0.1261	0.1320	-0.0059	0.258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진입/퇴출	93,835	67,571	26,264	0.1236	0.0890	0.0346	0.2127
	존속기업	91,581	101,437	-9,856	0.1207	0.1337	-0.0130	0.2543

(2)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

가.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의 관계 기존연구

기업의 창업은 숨페터 이래로 GDP성장을 가져오는 중요한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제품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진입은 경쟁을 보다 치열하게 하고 소비자 가격을 낮추고 보다 나은 기술을 채택하도록 한다. 그렇지만 기업을 시작하는 능력은 정부규제를 준수하는 부담을 포함하여 몇 가지 요소에 의해 제한된다. Djankov et al.(2002)은 85개국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정부당국에 기업을 등록하는 것은 기업가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예컨대 기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절차들, 이에 들어가는 시간 및 이러한 절차들을 수행할 때 들어가는 공식적인 비용 등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적인 진입은 매우 까다롭고 시간 소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더구나 엄격한 진입규제로 부패수준은 더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Bripi(2013)의 연구는 기업등록절차를 개혁한 이후 이탈리아 지역행정부담의 차이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였다. 개혁 이전 이탈리아 지역의 규제자료와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수준에서 측정된 진입률 자료를 연결하여 규제장벽이 진입률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였다. 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행정절차가 부과되면 진입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기업에 대한 행정부담은 기업창업율을 낮추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해외의 연구는 서비스산업 부문의 진입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실증 결과를 내놓고 있다.

최근의 이론적인 연구는 총량수준에서 경쟁이 증대되면 장기적인 고용의 성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산업수준에서는 경쟁이 증가할 때 효과가

모호하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규제완화는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어진 생산 수준에서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입장벽을 낮추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가격은 낮아지고 제품수요는 증대되어 오히려 고용은 증가할 수 있다. 진입장벽과 고용증가의 관계는 여전히 논쟁적인 이슈로 남아 있으며 진입장벽을 낮추는 경우에 산업별 수준에서 고용창출에 양의 영향을 줄지 또 음의 영향을 줄지는 실증적인 문제로 할 수 있다. 최근 Bertrand and Kramarz(2001)는 프랑스 소매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진입규제가 고용창출을 억제하였음을 보여주었다. 1973년에 도입된 진입규제(소위 Loi Royer)는 대규모 사업체의 경쟁 확대로부터 소규모 소매업자를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소매업 보호정책은 프랑스 소매부분의 고용성장에 상당한 정도의 음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들 연구는 진입규제가 없었다면 고용은 지금보다 약 10% 더 높아졌을 것이며, 따라서 고용창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상품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스페인의 소매산업을 분석한 Ciarreta et al.(2009)의 경우에도 진입규제가 고용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소매업 부문에 대해서 개점시간 제한, 새로운 아울렛 진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새로운 소매업자에 부과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규제들은 소매업자가 고용을 증대시키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지역별로 도입된 제한규제들은 소매업의 고용을 감소시켰다. 이탈리아에서도 이 같은 소매업 부문의 규제가 도입되었다. Viviano(2006)는 Abruzzo와 Marche의 대표적인 두 지역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 두 지역은 가깝기도 하고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아주 다른 정책을 펼친 지역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규모 상점의 개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지역과 실질적인 진입장벽을 부과하지 않는 두 지역을 샘플로 하여 진입규제가 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difference in difference 추정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진입장벽을 설정하였을 경우에 고용성장에 상당한 정도의 음의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었다. 더구나 경쟁을 치열하게 시키면 소규모의 도매점은 보다 효율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고용에 미치는 양의 영향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다. 우선 진입장벽을 낮추게 되면 대규모 점포의 창업비용을 감축시켜 준다. 결국 자유화된 지역에서 대규모점포의 고용성장은 총고용성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다른 요인은 대규모점포는 소규모점포와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규모 점포의 근로자들은 자유화 이후 유의할 정도로 감소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화가 전통적인 가족소유의 점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경쟁의 심화는 새로운 유형의 소규모점포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이들의 연구가 대부분 진입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미친 연구에 집중되었다면 또 다른 연구에서는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에 관한 것이다. Branstetter et al.(2010)은 진입규제 완화가 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지만 이러한 규제개혁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와 기업의 질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진입규제 완화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그동안 강한 규제에 진입이 어려웠던 한계기업(marginal firms)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들 한계기업은 주로 교육수준이 낮은 기업가가 소유한 소기업, 저급기술 산업 부문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부문의 규제완화와 제조업 부문의 성과 개선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한 산업별 사례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Bertrand et al.(2007)은 1980년대 프랑스 은행산업의 규제완화가 기업의 실질적 행태와 상품시장의 동학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규제완화에 따라 은행들은 경영성과가 나쁜 기업을 구하는 역할을 덜하게 되고 은행 의존적인 기업은 구조조정작업을 더욱 활발히 수행하였다. 산업수준에서 볼 때 자산과 일자리의 재조정이 증가하고 배분적인 효율성이 증진되었음은 물론 집중도 저하를 가져왔다. Arnold et al.(2012)는 1991년 이후 인도의 제조업 부문의 성장이 서비스업 부문의 무역자유화와 라이선스 허용제도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은행, 통신, 보험 및 운송부문의 개혁작업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하였다.

나.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 분석결과

앞서의 법적인 진입 규제 분석에 따르면 서비스산업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법적인 진입규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재홍(2008)의 분석과 한국은행의 법적인 규제 분석(2007)에 의하면 서비스산업의 규제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진입규제가 서비스 산업 전반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진입을 더욱 늘리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재홍(2008)과 이병희(2007) 등 기존의 진입규제 연구결과를 확대한 법적 진입규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이들 진입규제가 서비스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법적인 진입규제가 있는 산업과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으로 구분한 후, 각 산업별로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소멸률 및 일자리 재배치율을 추계하였다.

[표 15]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에서 법적인 진입규제가 일자리 창출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분석에 의하면 일부 연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도에서 법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다도 일자리 창출률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⁸⁾ 더군다나 일자리 창출률과 일자리 소멸률을 합한 일자리 재배치율은 법적인 진입규제가 존재하는 경우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법적인 진입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산업의 경우에 일자리 재배치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의 일자리 창출률이 진입규제 있는 산업의 일자리 창출률이 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에서는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에서는 일자리 소멸률도 동시에 높아 순일자리 창출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표 15] 서비스업 부문의 진입규제가 있는 산업의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창출수	일자리 소멸수	일자리 순증가수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소멸률	순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재배치율
2002	2,338,626	1,791,549	547,077	0.3340	0.2558	0.0781	0.5898
2003	1,920,598	1,675,679	244,919	0.2445	0.2133	0.0312	0.4578
2004	1,824,436	2,030,312	-205,876	0.2325	0.2587	-0.0262	0.4912
2005	2,259,715	1,802,097	457,618	0.2834	0.2260	0.0574	0.5095
2006	1,879,464	1,612,490	266,974	0.2270	0.1947	0.0322	0.4217
2007	1,874,174	1,512,501	361,673	0.2171	0.1752	0.0419	0.3923
2008	2,010,678	1,695,183	315,495	0.2242	0.1890	0.0352	0.4133
2009	2,038,184	1,768,720	269,464	0.2203	0.1912	0.0291	0.4116
2010	2,288,710	1,848,901	439,809	0.2384	0.1926	0.0458	0.4309
2011	1,766,883	1,572,037	194,846	0.1783	0.1587	0.0197	0.3370
연평균	2,020,147	1,730,947	289,200	0.2368	0.2029	0.0339	0.4397

18) Anxo and Storrie(200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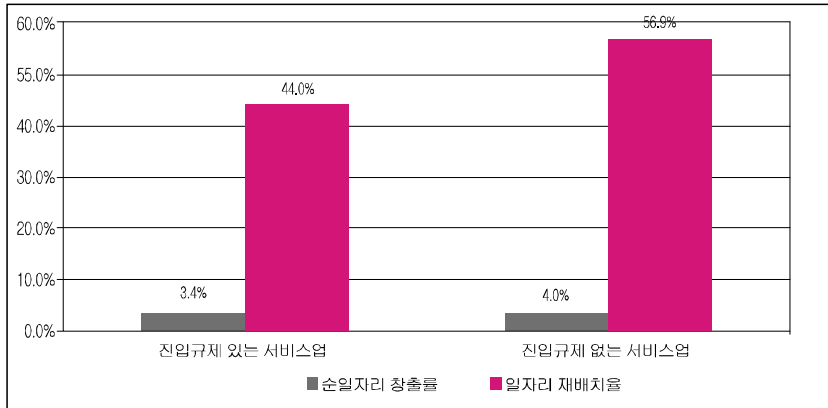
[표 16] 서비스업 부문의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의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창출수	일자리 소멸수	일자리 순증가수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소멸률	순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재배치율
2002	935,983	738,474	197,509	0.3923	0.3096	0.0828	0.7019
2003	605,405	583,109	22,296	0.2970	0.2860	0.0109	0.5830
2004	586,304	651,514	-65,210	0.2867	0.3186	-0.0319	0.6053
2005	754,356	639,555	114,801	0.3643	0.3089	0.0554	0.6732
2006	653,413	549,841	103,572	0.2926	0.2462	0.0464	0.5388
2007	716,000	561,717	154,283	0.3080	0.2417	0.0664	0.5497
2008	702,860	604,549	98,311	0.2862	0.2462	0.0400	0.5325
2009	714,456	640,451	74,005	0.2801	0.2511	0.0290	0.5311
2010	805,082	681,747	123,335	0.3035	0.2570	0.0465	0.5605
2011	691,921	571,075	120,846	0.2483	0.2049	0.0434	0.4532
연평균	716,578	622,203	94,375	0.3044	0.2643	0.0401	0.5686

[그림 8]은 법적인 진입규제가 있는 산업과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의 일자리 창출률을 비교해 본 것이다. 2002~2011년 기간 중 진입규제가 있는 서비스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3.39%였으나, 진입규제가 없는 서비스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4.01%로 나타났다. 진입규제가 없는 서비스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입규제가 있는 서비스업의 일자리 재배치율은 44.0%, 진입규제가 없는 서비스업의 일자리재배치율은 56.9%로 나타나 진입규제가 없는 경우 진입규제가 있는 경우보다 일자리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를 보면 2002년에서 2005년까지는 진입규제가 있는 산업과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2005년 이후 뚜렷하게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의 일자리 창출률이 진입규제가 있는 서비스업의 순일자리 창출률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추세적으로 두 그룹 간에 일자리 창출률은 저하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의 일자리 창출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8] 진입규제 있는 서비스업과 진입규제 없는 서비스업의 순일자리 창출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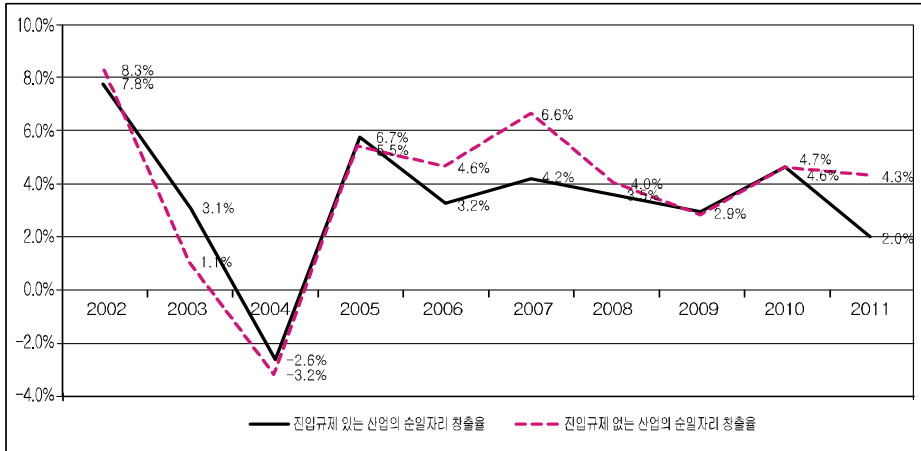
순일자리 창출률 측면에서 또 하나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은 진입규제가 있든 없든 간에 순일자리 창출률이 시간이 지나면서 추세적인 저하를 나타내고 있는 점이다. 진입규제가 있는 산업의 경우에 2002년도 일자리 창출률은 7.8%였지만 2005년도 5.7%, 2011년도에는 1.9%로 5.8%포인트 크게 떨어졌으며, 또한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의 경우에도 동기간 중 약 3.0%포인트 크게 저하하였다.

한편, 일자리 창출률과 일자리 소멸률의 합으로 나타나는 일자리 재배치율은 법적인 진입규제가 있는 산업과 법적인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 간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2002~2011년 기간에 법적인 진입규제가 있는 산업에서 일자리 재배치율은 44.0%를 나타내었는데 반해 법적인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의 경우에는 약 56.9%를 나타내었다. 법적인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의 경우에는 일자리의 창출률과 소멸률이 매우 높아 일자리 재배치율이 높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의 경우에 일자리 측면에서도 창조적인 파괴과정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진입규제가 낮은 산업에서는 일자리 재배치율 또한 낮은 현상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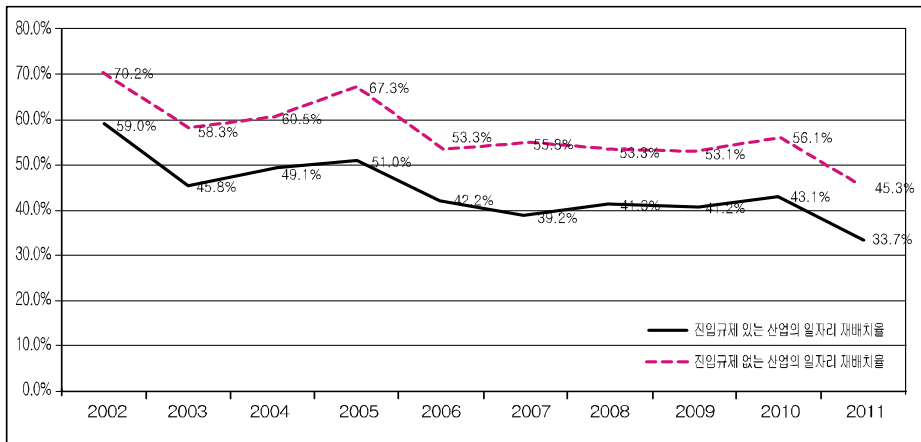
일자리 재배치율 측면에서 또 하나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은 진입규제가 있든 없든 간에 일자리 재배치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하하고 있는 점이다. 진입규제가 있는 산업의 경우에 2002년도 일자리 재배치율은 59.0%였지만 2011년도에는 33.7%로 25.3%포인트 크게 떨어졌으며, 또한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의 경우에도 2002년 70.2%에서 2011년에는 45.3%로 동기간 중 24.9%포인트 크게 저하하였다. 일자리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률과 일자

리 소멸률이 푹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측면에서 볼 때에도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림 9] 진입규제가 있는 산업과 없는 산업 간 순일자리 창출률 비교



[그림 10] 진입규제가 있는 산업과 없는 산업 간 일자리 재배치율 변화 추이



(3) 서비스산업의 기업나이와 일자리 창출

가. 기업나이와 일자리 창출 기존연구

이미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기업나이

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일자리 창출은 소규모 기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규모의 관점에서 이같은 소규모 기업의 진입과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논거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고용창출의 원천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해서 살펴보자. David Birch(1979, 1981, 1987)의 도발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책당국자들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소규모 기업의 역할에 대해 상당히 주목하였다. 이 연구의 중심적인 테마는 소규모 기업이 미국경제에서 일자리 창출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1969년부터 1976년의 사이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모든 신규 일자리의 66%는 20인 이하의 기업이 만들어낸 것이며, 1981년부터 1985년까지의 기간 사이 신규 일자리의 81.5%는 100명 이하의 기업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 이후 Birch(1987)는 1981~85년 기간 중에 20인 이하의 고용자 수를 갖는 기업이 기존 기업의 확장과 축소에 의해 고용성장의 82%를 담당하였으며 전체 고용성장의 88.1%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소규모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Birch의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는 미국정부의 정책에 잘 부합하는 것이었다. 일자리가 고용 규모 20명 이하의 소기업에 의해 창출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래, 고용창출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계속 강조되어 왔다.¹⁹⁾

이후 일련의 연구결과에 의해 기업규모와 순고용 변화율 간에 강한 마이너스의 관계가 확인되었고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 금융지원등과 같은 많은 중소기업 우대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Ayyagari et al.(2011)은 최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영세기업이 고용, 일자리 창출, 성장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세기업은 기업나이를 통제하고 난 이후에도 일자리 창출의 가장 큰 비율을 점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은 가장 높은 생산성 성장을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젊은기업(young firm)은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기업규모이고 성숙 대기업은 가장 큰 고용비율을 보였지만 소규모 젊은기업이 가장 높은 일자리 창출률을 나타내었다. Lawless(2013)는 아일랜드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소규모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을 담당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젊은기업이 모든 규모에서 가장 높은 일자리 창출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젊은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할 때 동일 기업규모에 머무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Criscuolo, Gal and Menon(2014)는 18개 국가의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고용성장의 동학을 분석하였다.

19) Birch(1981) 참조

중소기업과 젊은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나이 많은 중소기업(old SME)은 일자리를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일본경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을 분석한 Genda(1998)는 1991~1995년 기간 중 일자리 창출률은 떨어지고 일자리 소멸률은 증가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일자리 재배치율은 순일자리 창출률보다 높았다.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소멸률 및 일자리 재배치율은 임시직, 파트타임직, 여성근로자보다 정규직, 풀타임직 및 남성근로자의 경우에 더 낮았다.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소멸은 소규모 사업체와 소기업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기업나이와 일자리창출 간에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선 OECD(2013) 자료를 이용해서 기업나이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²⁰⁾ 젊은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소멸은 제조업 보다 서비스업 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는 OECD 주요국의 젊은기업과 성숙기업(mature firm)이 고용, 일자리 창출, 일자리 소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것이다. 이를 보면 5년 이하의 젊은기업은 대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약 4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자리 소멸의 약 2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젊은기업은 일자리를 소멸시키기 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6~10년의 성숙기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7%이지만, 일자리를 소멸시키는 비중은 20.5%로 나타나서 성숙기업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자리 소멸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 OECD(2013)는 창업 후 존속 연수를 기준으로 5년 이내의 기업을 젊은기업(young firm)으로 정의하고 올드 펌(old firm)은 기업나이가 6년 이상 기업을 의미한다.

[표 17] OECD 주요국 젊은기업과 성숙기업의 일자리 창출·파괴 비중: 2001~2011

	젊은기업(5년 미만)			성숙기업(6~10세)		
	고용	일자리 소멸	일자리 창출	고용	일자리 소멸	일자리 창출
Finland	0,161	0,152	0,340	0,178	0,181	0,167
United States	0,122	0,203	0,376	0,095	0,142	0,103
Japan(2001~09)	0,095	0,118	0,377	0,087	0,113	0,077
Norway	0,201	0,230	0,415	0,211	0,226	0,169
Belgium	0,118	0,165	0,453	0,103	0,141	0,108
Sweden(2001~10)	0,171	0,227	0,456	0,177	0,205	0,176
Luxembourg(2001~10)	0,127	0,221	0,458	0,123	0,195	0,141
Italy(2001~10)	0,180	0,236	0,465	0,183	0,228	0,168
Hungary	0,212	0,266	0,534	0,247	0,273	0,204
New Zealand(2001~09)	0,211	0,282	0,538	0,196	0,239	0,160
Austria(2001~10)	0,242	0,291	0,551	0,267	0,236	0,182
Spain(2003~09)	0,242	0,379	0,562	0,203	0,235	0,160
France(2002~07)	0,262	0,268	0,579	0,112	0,144	0,100
Netherlands	0,275	0,311	0,639	0,168	0,191	0,108
Brazil(2002~10)	0,463	0,489	0,714	0,326	0,333	0,180
OECD 주요국의 평균	0,205	0,256	0,497	0,178	0,205	0,147

자료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3

두 번째로 [표 18]은 OECD 주요국 젊은기업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일자리 창출, 일자리 소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것이다. 젊은 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소멸은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서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제조업의 경우 표에 나타난 주요 OECD 국가에서 젊은 기업이 고용, 일자리 소멸 및 일자리 창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2%, 17.3%, 42.2%로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에 젊은 기업이 고용, 일자리 파괴, 일자리 창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4.3%, 29.3%, 52.7%로 나타났다.

제조업 일자리 창출 가운데 젊은 기업의 비중은 네덜란드 59.8%, 프랑스 55.6%, 오스트리아 43.2% 등으로 50%대 내외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가운데 젊은기업의 비중은 브라질 75.1%, 네덜란드 63.8%, 프랑스 60.8%, 오스트리아 61.4% 등 다수의 국가에서 제조업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표 18] OECD 주요국 젊은기업의 제조업·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소멸 비중: 2001~2011

	제조업			서비스업		
	고용	일자리 소멸	일자리 창출	고용	일자리 소멸	일자리 창출
Brazil(2002~10)	0.460	0.476	0.721	0.514	0.516	0.751
Netherlands	0.209	0.235	0.598	0.285	0.318	0.638
France(2002~07)	0.218	0.207	0.556	0.323	0.328	0.608
New Zealand(2001~09)	0.171	0.191	0.460	0.229	0.313	0.554
Austria(2001~10)	0.120	0.143	0.432	0.325	0.368	0.614
Hungary	0.154	0.172	0.429	0.252	0.311	0.587
Italy(2001~10)	0.142	0.183	0.428	0.198	0.241	0.464
Spain(2003~09)	0.128	0.196	0.401	0.239	0.347	0.544
Japan(2001~09)	0.098	0.118	0.394	na	na	na
Norway	0.158	0.163	0.377	0.234	0.262	0.458
Belgium	0.069	0.090	0.347	0.134	0.185	0.472
Sweden(2001~10)	0.105	0.138	0.336	0.216	0.281	0.497
Luxembourg(2001~10)	0.051	0.071	0.317	0.152	0.237	0.452
Finland	0.138	0.106	0.292	0.173	0.176	0.352
United States	0.061	0.100	0.245	0.131	0.220	0.392
OECD 주요국의 평균	0.152	0.173	0.422	0.243	0.293	0.527

자료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3.

나. 기업나이와 일자리 창출률 분석결과

이제는 우리나라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업나이별 일자리 창출률을 추정된 결과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표 19]는 기업나이별로 구분한 자료를 이용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기업나이의 구간 구분은 0, 1, 2, 3, 4, 5, 6~10, 11~15, 16~20, 21~25, 26~30, 31~50, 50+로 구분하였다. 기업나이와 일자리 창출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문이라 할 수 있다. 기업나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전국사업체조사』 자료가 제공하는 창업연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²¹⁾ 전산업의 경우에 창업 첫해의 일자리 창출률은 34.5%이고, 일자리 소멸률은 14.2%로 순일자리 창출률은 약 20.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의 경우에 창업 첫해의 일자리 창출률은 31.9%였고 일자리 소멸률은 14.6%로 순일자리 증가율은 약 17.7%로 나타났다. 초기에 이

21)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창업연도를 활용하여 기업나이를 계산하였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창업연도 자료가 조사시점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즉 조사시점별로 창업연도가 다른 경우에 조사초기의 창업연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업나이를 계산하였다.

에 따르면 창업기업(start-up)기업을 제외하면²²⁾ 기업나이와 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 간에는 미약한 양의 관계를 나타나고 있다. 16세 이후부터는 일자리 창출률보다 일자리 소멸률이 낮아져 일자리 창출률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기업규모를 통제하고 난 이후 기업나이가 순일자리 창출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다른 문제이다. 이같은 분석은 다음 장의 회귀분석을 논하는 자리에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한다.

서비스업의 경우 창업한 다음 해인 기업나이 1세 기업의 경우 약 17.3%의 높은 순일자리 창출률을 나타내고 있고, 또 기업나이 31세 이상인 기업에서 순일자리 창출률은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튀니지아의 일자리 창출률을 분석한 Rijkers et al.(2014)의 분석에서도 순일자리 창출률은 기업나이 1~3년에서 대부분 창출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나이 1세인 경우를 제외하면 줄곧 일자리 소멸이 많다가 기업나이 31세 이상인 경우부터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자리 재배치율에 있어서는 전산업과 서비스업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기업나이에 따라서 큰 차이를 나타낸다. 기업나이 1세인 경우에 일자리 재배치율은 전산업의 경우에 48.8%이고 서비스업의 경우에 56.5%로 나타난 반면에 기업나이 31~50세인 경우에 전체산업의 경우 일자리 재배치율은 27.1%로, 서비스업의 경우에 28.8%로 똑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나이가 증가하면서 일자리에 있어서 보다 일자리 안정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표 19] 전산업의 기업나이별 일자리 창출률 및 소멸률 분석결과

	일자리 창출수	일자리 소멸수	일자리 순증가수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소멸률	순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재배치율
0	874,432	-	874,432	2.0000	0.0000	2.0000	2.0000
1	343,770	141,748	202,022	0.3459	0.1426	0.2033	0.4886
2	268,234	355,558	-87,325	0.2434	0.3227	-0.0792	0.5661
3	228,343	316,447	-88,104	0.2207	0.3058	-0.0851	0.5265
4	200,155	278,102	-77,947	0.2098	0.2915	-0.0817	0.5013
5	178,319	241,787	-63,468	0.2014	0.2730	-0.0717	0.4744
6~10	644,659	813,864	-169,204	0.1866	0.2356	-0.0490	0.4222
11~15	340,317	407,076	-66,759	0.1705	0.2039	-0.0334	0.3744
16~20	185,540	210,469	-24,929	0.1590	0.1803	-0.0214	0.3393
21~25	115,964	128,945	-12,982	0.1490	0.1657	-0.0167	0.3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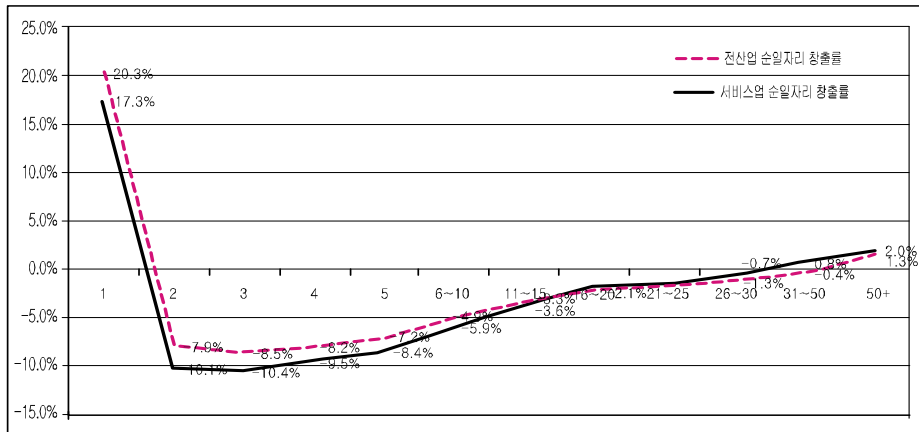
22) Davis-Haltiwanger-Schuh 방식의 순일자리 창출률 계산 방식에 따라서 시장진입 첫해(기업나이 0살)인 경우 일자리 창출률은 2로 계산된다.

26~30	78,963	86,493	-7,530	0.1395	0.1528	-0.0133	0.2922
31~50	150,459	155,460	-5,000	0.1337	0.1382	-0.0044	0.2719
50+	86,194	77,967	8,227	0.1367	0.1237	0.0131	0.2604
나이별							
0~5	2,093,252	1,333,642	759,610	0.3871	0.2466	0.1405	0.6338
6+	1,602,095	1,880,273	-278,177	0.1649	0.1935	-0.0286	0.3584

[표 20] 서비스산업의 기업나이별 일자리 창출 및 소멸률 분석결과

	일자리 창출수	일자리 소멸수	일자리 순증가수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소멸률	순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재배치율
0	735,208	-	735,208	2.0000	0.0000	2.0000	2.0000
1	260,665	119,290	141,374	0.3195	0.1462	0.1733	0.4657
2	200,343	288,694	-88,351	0.2290	0.3300	-0.1010	0.5590
3	165,695	248,419	-82,724	0.2080	0.3118	-0.1038	0.5198
4	144,039	212,188	-68,150	0.2010	0.2960	-0.0951	0.4970
5	126,802	181,793	-54,991	0.1938	0.2778	-0.0840	0.4716
6~10	441,504	585,904	-144,400	0.1813	0.2405	-0.0593	0.4218
11~15	223,527	271,707	-48,180	0.1681	0.2044	-0.0362	0.3725
16~20	120,544	133,095	-12,551	0.1617	0.1786	-0.0168	0.3403
21~25	78,686	86,486	-7,800	0.1542	0.1694	-0.0153	0.3236
26~30	53,602	56,035	-2,432	0.1456	0.1522	-0.0066	0.2977
31~50	108,325	102,809	5,516	0.1529	0.1452	0.0078	0.2981
50+	77,785	66,730	11,055	0.1383	0.1186	0.0197	0.2570
나이별							
0~5	1,632,751	1,050,384	582,366	0.3863	0.2485	0.1378	0.6349
6+	1,103,974	1,302,766	-198,792	0.1658	0.1956	-0.0298	0.3614

[그림 11] 전산업과 서비스업의 기업나이별 순일자리 창출률 비교



(4) 서비스산업의 기업규모,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

가. 일자리 창출과 기업규모 논쟁

일자리는 누가 창출하는가(Who creates jobs)에 대한 논쟁은 최근 더욱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쟁점중 하나이다. 이중 가장 핵심적인 논쟁거리는 기업규모와 관련된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는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이 한다는 논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Davis, Haltiwanger, and Schuh(1996)는 1972년부터 1988년까지 미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서 이 가설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쟁은 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미국 제조업 고용창출의 50%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500인 정도의 규모를 가진 기업에 의해서 창출된다는 것을 보였다.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정반대로 새로운 고용창출이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부분 대기업에서 이루어짐을 보인 연구결과는 고용창출의 원천이 어떤 기업인가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Birch의 연구결과는 '부적절한 데이터에 결함이 있는 방법론을 사용한 결과(a result of flawed methodology applied to some unsuitable data)'라는 것이 Davis et al.의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에 Neumark, Wall, and Zhang(2011)은 Davis, Haltiwanger, and Schuh(1996)의 연구결과에 재반론을 제기하고, 중소기업이 보다 많은 고용을 창출함을 보였다. Neumark et al.의 연구결과는 Birch의 연구결과와 같이 소규모 기업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Davis et al.이 제시한 방법론을 사용하였을 때 그 차이가 Birch가 원래 제시한 것보다는 작았다 하더라도 소규모 기업과 사업체들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조업 부문에서 사업체 규모와 일자리 창출 간에 음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소규모 기업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매우 명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Haltiwanger, Jarmin, and Miranda(2010)는 기업나이(firm age)를 통제하고 나면, 기업규모가 적을수록 고용창출이 크다는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Davis, Haltiwanger, and Schuh(1996)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기업나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Neumark, Wall, and Zhang(2011)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순일자리 창출률과 기업규모 간에 역의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일단 기업나이를 통제하면 순일자리 창출률과 기업규모 간에 체계적인 역의 관계는 발견되지 않는다. 기업나이의 주요한

역할은 기업의 창업(firm birth)과 관련되는 것이다. 기업창업은 총일자리 창출과 순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중요한 것은 신생기업은 소규모인 경향이 있으므로 이전의 분석에서는 기업규모와 순일자리 창출 간의 체계적인 역의 관계는 소규모 기업 구간으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신생기업의 기여로 돌려진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이 미국의 고용성장 다이내믹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젊은기업(young firm)은 성숙기업보다 빠르게 성장한다. 그러나 젊은기업은 퇴출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일반적으로 젊은기업은 불안정하며 나이 많은 기업보다 높은 총일자리 창출과 소멸률을 동시에 나타낸다.

이같은 분석결과는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정책은 초점을 다시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이다. 소규모 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높다는 분석결과는 이들의 정책을 채택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기초로 작용하였다. Haltiwanger et al. 및 Davis et al.의 결과에 의하면 기업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업규모에 기초하여 기업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전체 일자리 창출에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로 일본의 경우에도 Haltiwanger, Jarmin, and Miranda(2010)의 논의를 지지하는 논문이 최근 발표되었다. 일본 경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최근 분석한 권혁욱(2012)의 연구결과는 기업규모와 고용의 순증가에 대한 강한 역의 상관관계는 발견하지 못했다. 고용을 가장 활발히 만든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500인 이상 5,000인 미만의 중견기업이었다는 것이다. Kiyota(2006)은 다국적 기업이 국내기업과 비교해 볼 때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소멸에 있어서 상이한 패턴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1995~2002년간의 일본인 소유 다국적 기업과 외국인소유 기업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총일자리 창출률은 진입과 퇴출, 산업, 노동자형태 및 다국적 기업의 형태 등을 일단 통제하고 나면 총일자리 창출률은 순일자리 창출률과 같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국적 기업형태는 기업 간 고용패턴의 이질성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다.²³⁾

나. 분석결과

이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업규모의 차이가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Haltiwanger, Jarmin and Miranda

23) Kiyota, Matsuura, and Kozo(2007) 참조

(2013)의 정의에 따라서 기업규모를 고용기준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기업규모는 고용자 수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0~4명,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 등으로 구분하였다.²⁴⁾

고용규모 별로 구분하여 추정된 순일자리 창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표본을 고용규모 300인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하였을 때,²⁵⁾ 2002~2011년 기간에 걸쳐 전산업 중 중소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3.2%, 대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3.4%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할 때 중소기업은 3.5%, 대기업은 4.0%로 나타났다. 순일자리 창출률 측면에서 기업규모가 클수록 순일자리 창출률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1]과 [표 22]는 전산업과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률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고용규모별로 기업규모를 구분하여 분석하여 보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일자리 창출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소멸률 또한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이 낮아진다. 문제는 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다. 예컨대 서비스업의 경우를 살펴보자. 0~4인 고용규모의 경우에 28.4%의 일자리 창출률을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소멸률은 25.6%를 나타내어 순일자리 창출률은 약 2.7%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기업규모가 커지면서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은 기업규모가 작을 때 보다는도 저해된다. 즉 500인 이상의 기업규모의 경우 18.8%의 일자리 창출률을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일자리 소멸률은 약 14.7%로 나타나 순일자리 창출률은 약 4.1%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장 작은 0~4인 기업규모 계층과 500인 상의 기업규모 계층 간에는 약 1.38% 포인트의 순일자리 창출률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일자리 재배치율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높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안정적인 경향을 뚜렷이 나타낸다. 서비스업의 경우 0~4인 고용규모의 일자리 재배치율은 약 54.0%였던 반면 500인 이상 기업규모의 경우 일자리 재배치율은 약 33.5%를 나타냈다. 양 극단의 기업규모 간에 일자리 재배치율은 약 20.5% 포인트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은

24) 고용기준에서 100~249명, 250~499명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준에 맞게 100~299명, 300~499명으로 구분하였다.

25) 사업체 자료를 사용해서 기업규모를 구분할 때는 편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복합기업의 경우 몇 개의 사업체가 모여 단일의 기업체를 형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전기간에 걸쳐 사업체를 기업체로 묶는 변환코드가 있는 경우 기업단위의 분석이 가능하지만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변환코드는 제약되어 있는 상태이다. 추후 사업체를 기업체로 묶는 변환코드가 제공되는 경우 기업체 단위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을 시도해 보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높은 일자리 창출과 높은 일자리 소멸을 나타내었지만,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률과 일자리 소멸률이 낮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대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즉, 서비스업에서 일자리 순증가율은 중소기업이 약 3.5%, 대기업은 약 4.0%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100개의 일자리에 대해 중소기업은 3.5개의 순일자리가 창출되고 대규모사업체는 4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업의 경우 0~4명 기업규모에서 순일자리 창출률은 2.73%였고 5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4.11%로 나타났다. 순일자리 창출은 소규모사업체들의 고용비중이 높기 때문에 소기업의 순일자리 창출수는 많다. 그렇지만 0~4명 기업규모에서 순일자리 창출률은 2.7%로 나타났는데 이같은 영세사업체는 다산다사형의 일자리 창출 특성을 갖는 것으로서 높은 고용 및 사업체 수 비중에 비해 순고용 창출에 대한 기여는 대규모기업에 비해 낮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위의 결과는 어디까지나 기업규모와 순일자리 창출률의 단순한 상관관계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순일자리 창출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고려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기업규모, 진입규제 등 순일자리 창출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순일자리 창출률 변동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순일자리 창출률은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결과는 중소기업에 집중된 일자리 창출 정책은 오히려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사업체보다 중소기업을 더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전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²⁶⁾

[표 21] 전산업의 기업규모 계층별 일자리 창출률 분석결과

	일자리 창출수	일자리 소멸수	일자리 순증가수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소멸률	순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재배치율
0~4	1,383,648	1,247,158	136,490	0.2912	0.2624	0.0287	0.5536
5~9	487,586	426,736	60,850	0.2670	0.2337	0.0333	0.5007
10~19	429,100	373,612	55,488	0.2384	0.2017	0.0367	0.4402
20~49	481,311	407,207	74,105	0.1903	0.1578	0.0325	0.3481
50~99	274,899	227,967	46,932	0.1903	0.1578	0.0325	0.34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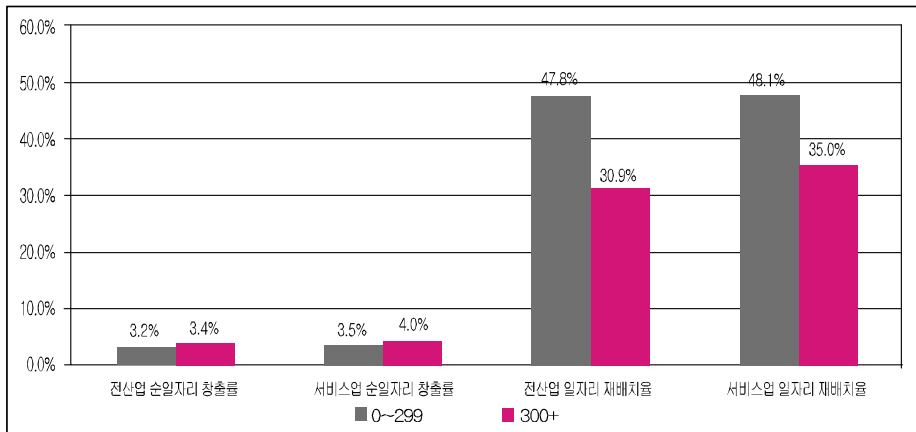
26) 新정부에서는 공약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체계 통합, 골목과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인프라 구축, 영업활성화 등을 소상공인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약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나들가게 2만개 육성, 전통시장 주차장 대폭 확충, 온누리상품권 1조 원 확대 등 기존 지원방식의 양적 확충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등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연구원(2013) 참조

100~299	316,096	272,994	43,102	0,2055	0,1774	0,0280	0,3829
300~499	101,476	86,317	15,160	0,2019	0,1717	0,0302	0,3736
500+	221,231	171,926	49,305	0,1604	0,1247	0,0358	0,2851
규모별							
0~299	3,372,640	2,955,673	416,967	0,2546	0,2232	0,0315	0,4778
300+	322,707	258,242	64,465	0,1715	0,1372	0,0343	0,3087

[표 22] 서비스업의 기업규모 계층별 일자리 창출률 분석결과

	일자리 창출수	일자리 소멸수	일자리 순증가수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소멸률	순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재배치율
0~4	1,185,869	1,071,751	114,118	0,2837	0,2564	0,0273	0,5402
5~9	341,547	295,477	46,070	0,2608	0,2256	0,0352	0,4864
10~19	282,094	238,981	43,113	0,2510	0,2031	0,0479	0,4540
20~49	313,608	253,771	59,838	0,1865	0,1472	0,0392	0,3337
50~99	181,104	142,982	38,122	0,1865	0,1472	0,0392	0,3337
100~299	210,169	173,732	36,437	0,2194	0,1814	0,0380	0,4008
300~499	73,101	59,819	13,282	0,2112	0,1728	0,0384	0,3840
500+	149,234	116,638	32,596	0,1882	0,1471	0,0411	0,3353
규모별							
0~299	2,514,391	2,176,693	337,697	0,2580	0,2233	0,0346	0,4813
300+	222,334	176,456	45,877	0,1952	0,1549	0,0403	0,3501

[그림 12] 전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고용규모별 순일자리 창출률 비교: 2002~2011



이같은 연구결과는 이미 우리나라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윤윤규·고영우(2009)의 연구는 순일자리 창출률에서는 사업체 분포의 양 끝, 즉 20인 미만과 500인 이상 사업체가 높게 되는 U자형의 비선형관계가 성립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들은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력의 원천이라는 단순한 인식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이 기업지원정책의 우선적인 대상 집단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적 시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순일자리 창출율의 측면에서 모든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다. 사업체규모 별 순일자리 증가율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사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단순한 이원적 구분에 기초하기보다는 보다 세분화된 사업체규모 별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일자리 창출정책이나 기업지원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전현배(2013)의 연구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체가 고용창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연구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소규모사업체보다도 중규모 또는 대규모 사업체의 총고용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은 사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서서히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으나, 일자리 순증가율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David-Haltiwanger 등이 대기업, 고부가가치 등 기업들이 일자리 순증가율이 높다는 보고와 일관성을 갖는 결과이다. 소기업은 일자리 창출률이 높지만 동시에 일자리 소멸률도 높기 때문에 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률에 대한 신화는 통계적 오류임을 지적하고 오히려 대기업과 업력이 오래된 기업들이 일자리 순증가율이나 일자리 지속성도 높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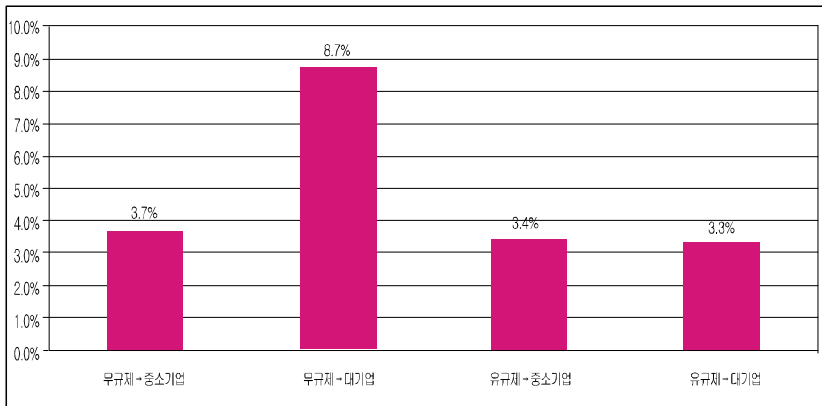
또 하나 매우 흥미로운 것은 진입규제 유무별로 측정한 기업규모별 순일자리 창출률 분석결과이다. [표 23]를 보면 순일자리 창출률은 대기업의 경우에 진입규제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순일자리 창출률에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기업의 경우 진입규제가 존재하는 경우에 순일자리 창출률은 약 3.3%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에서 활동하는 대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약 8.7%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진입규제가 있는 산업에서나 없는 산업에서나 순일자리 창출률은 거의 비슷한 3.4~3.6%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중소기업은 진입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대기업의 경우 진입규제 완화로 순일자리 창출률이 매우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에 충분하다. 물론 진입규제가 완화되는 경우에 규제가 완화된 산업에서 활동하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일자리 재배치율은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같은 상황은 대기업에서나 중소기업에서나 마찬가지이다. 이같은 사정을 말해주는 것이 [그림 13]이다.

[표 23] 진입규제 유무별 기업규모별 고용창출률 분석결과

		일자리 창출수	일자리 소멸수	일자리 순증가수	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소멸률	순일자리 창출률	일자리 재배치율
무 규제	중소기업	669,861	588,927	80,934	0.3045	0.2677	0.0368	0.5722
	대기업	46,717	33276.7	13,441	0.3025	0.2155	0.0870	0.5180
유 규제	중소기업	1,844,529	1,587,766	256,763	0.2444	0.2104	0.0340	0.4548
	대기업	175,616	143,180	32,437	0.1784	0.1454	0.0329	0.3238

[그림 13] 기업규모별 진입규제 유무에 따른 순일자리 창출률 차이





V.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효과와 규제개혁의 정치경제학

1. 서비스산업 진입규제의 일자리 창출 효과분석

(1) 기존의 연구와 모델

지금까지는 서비스산업과 전체산업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산업에서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었는지, 또 진입규제 유무별·기업규모별·기업나이별로 어떤 기업들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였는지를 검토해 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산출한 순일자리 창출률이었다.

이제부터는 간단한 모델을 가지고 기업규모, 기업나이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진입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논쟁에서 중요한 논쟁거대로 대두된 것처럼 기업나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기업규모가 순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일자리 창출과 진입규제 간에는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이론적·실증적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다. Coesino, Gabriele and Trento(2010)는 일자리 창출률과 일자리 소멸률의 차이를 순일자리창출률로 정의하고, 이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추정식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독립변수로 기업규모와 기업나이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은 기업규모를 기본 기업규모, 현재 기업규모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이들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Lawless(2013)는 기업규모와 기업나이를 설명변수로 하는 순고용 증가율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기업규모는 음의 추정계수를 나타내었으나 기업규모의 제곱항은 양의 추정계수를 나타내었다. 기업나이는 음의 추정계수를 나타내었다. Dixon and Rollin(2012)은 회귀분석을 할 때 모든 기업에 대한 분석과 존속기업에 대한 분석으로 구분하여 효과를 분석하였다. Criscuolo, Gal and Menon(2014)은 순일자리 창출률의 변동요인을 분석하는 설명변수로 기업나이, 기업규모 변수를 포함하는 모델을 추정하였는데, 이들은 국가별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cross-country study의 성격을 지닌다.²⁷⁾

최근에 일자리 창출률 추정 방법과 관련하여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Geurts and van Biesebrock(2014)는 2004~2011년 기간에 벨기에 경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은 Saturated dummy variable model을 사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분석에서 모든 진입 코호트에서 대기업들은 소규모 기업보다 신속하게 고용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신참(de novo) 진입자의 성장률은 기업나이를 통제하고 난 후에도 기업규모가 커지면서 증가하였다. 기업성장-기업규모 간의 양의 관계는 진입 후 첫해에 특히 현저하였지만 기업나이가 5년쯤에 비례적인 성장률로 수렴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Huber, Oberhofer and Pfaffermayr(2013)는 Davis-Haltiwanger-Schuh(1996) 방식의 단순 고용가중 OLS 추정법을 적용할 때 기업체 수준의 일자리 창출률에 편의를 가져오고 비일관적인 파라미터 추정치를 가져온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몬테갈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최우 추정(ML)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스트리아 기업에 적용하여 일자리 창출률을 분석한 결과, 기업규모와 기업나이 계층을 고려한 퇴출의 차이를 고려하였을 때 소기업그룹은 전체적인 순일자리 창출에 부의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기업의 순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는 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ijkers et al.(2014): 1996~2010년 기간의 튀니지아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고용가중 회귀분석(employment-weighted least squares) 방법을 사용하여 일자리 창출률의 변동요인을 분석하였다. 기업규모 더미, 기업나이 더미와 함께 산업더미와 연도더미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이들은 이윤성과 생산성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들 변수를 포함하는 분석을 하고 있다. 최근 논문을 발표한 Haltiwanger et al.(2013)에서는 일자리 창출률 분석을 위해 단순한 OLS 방식보다 고용가중 회귀분석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일관적이고 불편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서 기업나이를 통제하였을 때 기업규모가 증가하면서 일자리 창출률이 더욱 증가한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Rijkers et al.(2014)는 기업규모와 기업나이의 더미변수 이외에도 생산성과 수익성을 추가로 추가하여 일자리 창출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에서는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성장패턴과 퇴출패턴의 특징을 분석하고 추정치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주요한 설명변수인 기업나이와 기업규모 계층(class) 이외에도 산업 더미, 연도더미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Angrist and Pischke(2009)가 지적한 것처럼

27) Haltiwanger, Jarmin and Miranda(2012), Huber, Oberhofer, and Pfaffermayr(2013), Geurts, and Van Biesebrock(2014), Rijkers, Aroui, Freund, and Nucifora(2014)는 추정방법과 관련한 상당한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

Saturated dummy variable model은 종속변수의 분포와 관계없이 조건부 기대함수에 완전히 부합한다. 이 분석을 위해 고용가중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이전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추정식에서 종속변수는 순일자리 창출률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 단위의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모델을 추정한다. 순일자리 창출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업규모 계층변수와 기업나이 계층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전형적인 일자리 창출률 분석 모형이다. 그러나 예전의 모델과 다른 점은 기업규모와 기업나이를 그 자체로 사용하지 않고 이들 변수를 여러 계층으로 구분한 다음 더미변수로 바꾸어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나이와 기업규모를 구분하는 더미변수를 포함하는 Saturated dummy variable model은 교란항의 분포와 관련없이 각 셀의 평균을 불편 추정치로 얻는다.²⁸⁾ 즉,

$$y_{it} = \alpha + \sum_{i=1}^n \beta_i ENTreg_{it} + \sum_{j=1}^n \gamma_j Ageclass_{it} + \sum_{k=1}^n \delta_k Sizeclass_{it} + \tau_t + \tau_i + \epsilon_{it} \quad (8)$$

여기서 i 는 진입규제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j 는 기업나이 계층, k 는 기업규모 계층, t 는 연도를 의미한다. 각각의 종속변수는 순일자리 창출률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기업규모 계층과 기업나이 계층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기업규모 계층 더미 변수는 ① 0~4 ② 5~9 ③ 10~19 ④ 20~49 ⑤ 50~99 ⑥ 100~299 ⑦ 300~499 ⑧ 5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업나이 계층더미 변수는 ① 0 ② 1 ③ 2 ④ 3 ⑤ 4 ⑥ 5 ⑦ 6~10 ⑧ 11~15 ⑨ 16~20 ⑩ 21~25 ⑪ 26~30 ⑫ 31~50 ⑬ 50+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그리고 법적 진입규제 정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는 진입규제가 존재하는 경우를 1로 하는 더미변수이다. 또한 모형에 산업더미와 연도더미를 추가하여 분석해 보았다. 산업더미는 서비스산업 13개 대분류를 더미변수로 하여 추정하였고, 연도더미 변수는 10년간의 연도더미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실제 추정에서는 기업규모 계층 더미변수의 경우 500+ 및 기업나이 계층 더미변수의 경우 50+를 빼고 추정하였다. 분석을 할 때에는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사용한 바 있는 고용가중 회귀분석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식(8)로 표시된 간단한 모델을 추정한다. 이러한 모형을 추정할 때 단순 OLS의 적용은 추정치가 편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까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28) Angrist and Pischke(2009, pp.37 and 48~51) 참조

해 다양한 방법론이 사용된 바 있다. 첫째는 이러한 모델을 추정할 때 지금까지 흔히 사용되는 추정방법은 단순한 OLS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OLS는 추정치가 편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로 순일자리 증가율이 -2에서 +2의 범주 내에서 변동한다는 특성에 따라 Tobit 추정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량경제학에서 이런 모형에 대한 토빗 추정법의 적용은 또 다른 계량경제학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가중회귀분석추정법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것이다. 이들 추정법은 Angrist and Pischke(2009)가 지적한 바와 같이 종속변수의 분포와 관계없이 조건부 기대함수에 완전히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이 분야의 연구에서 자주 사용된 단순한 OLS는 편기되고 불일치 추정량이 된다. 따라서 추정방법으로는 고용가중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2) 자료 및 분석결과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제공되는 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02~2011년 기간 중의 일자리 순증가율을 법적 진입규제 더미변수, 기업규모 계층별 더미변수, 기업나이 계층별 더미변수를 설명변수로 하고 산업특성 및 경기변동 효과 등을 통제하기 위하여 산업더미 변수, 연도더미를 포함하는 모형을 실증 추정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다.

식(8)을 이용하여 서비스업의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24]와 같다. 이 분석결과에 의하면 연도더미, 산업더미 등을 모두 통제하고 난 이후 법적인 진입규제가 순일자리 창출률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법적인 진입규제가 존재하는 경우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순일자리 창출률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⁹⁾ 각 더미변수에 대응하는 추정계수는 기준그룹과 나머지그룹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즉 진입규제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진입규제가 부과되는 경우에 순일자리 창출률을 약 0.96% 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현재의 분석에서 서비스산업의 순일자리

29) 김종호(2009)는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진입규제가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바 있다. 강진입규제를 10%포인트 완화하면 고용창출률이 0.44포인트 증가하고, 중진입규제를 10%포인트 완화하면 고용창출률이 0.48%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전체 종사자 수가 1,570만여 명이므로, 산업 전반에 걸쳐 중진입규제를 10%포인트 낮추면 신규 기업에 의해 약 7만 5,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의 진입규제 효과를 비교하면, 진입규제가 신규창업 기업에 의한 고용창출을 저해하는 효과는 주로 서비스업에서 나타나고, 그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 따른 진입규제 효과를 비교하면, 진입규제는 신규 중소기업에 의한 고용창출을 저해하지만, 신규 대기업에 의한 고용창출을 억제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출률이 약 3.52%인 점을 감안하면 진입규제가 있는 경우 순일자리 창출률을 약 27.3% 감소시킨다.

또한 순일자리 창출률 분석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던 기업규모 변수와 기업나이 변수를 더미변수화하여 추정식에 넣어 추정하였다. 이때 각 변수의 계층별 구분은 이미 앞에서 분석하였던 계층을 그대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한 것이다.

[표 24]의 추정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14]이다. 이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규모가 커지면 기업의 순고용 창출률은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얻고 있다. 기업규모를 고용규모별로 8개 계층으로 나누고 이들 각 계층을 더미변수로 하여 추정해 보면 개별 기업규모 계층별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음의 추정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들 추정계수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추정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정결과를 고려할 때 기업나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기업규모의 추정계수는 매우 유의미하고 또 고용규모가 커질수록 순일자리 창출률 또한 커진다는 결과를 얻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산업더미와 연도더미를 추가하여 추정한 결과로도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의 분석에서 분석에서 빠진 그룹은 기업규모의 경우 500인 이상의 고용규모이다. 따라서 0~4인 기업규모의 기업들은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보다 기업창출률이 약 11.6%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20~49명의 고용규모를 갖는 기업은 가장 큰 기업규모의 기업보다 약 2.1% 낮은 순일자리 창출률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같은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순일자리 창출률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논쟁이 되어 왔던 기업규모-순일자리 창출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업나이를 통제하고 추정하는 경우 역관계나 무관련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순일자리 창출률은 증가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업나이를 13개 계층별로 구분하여 더미변수화한 다음 추정식에 넣어 추정한 결과도 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기업나이 추정계수는 기업나이가 2살 정도가 지난 이후부터 기업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순일자리 창출률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나이와 일자리 창출률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업나이가 1살인 경우 순일자리 창출률이 최고로 높다가 2살인 경우에 순일자리 창출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나이가 50 이상인 기업에 비해 1살의 기업은 순일자리 창출률이 약 35.1%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2살인 경우에 약 0.3% 높은 것으로 나타나다가 기업나이가 3세 이후의 경우부터 기업나이가 많아지면서 순일자리 창출률도 약간

씩 증가하는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표 24] 법적 진입규제, 기업규모 및 기업나이가 순일자리 창출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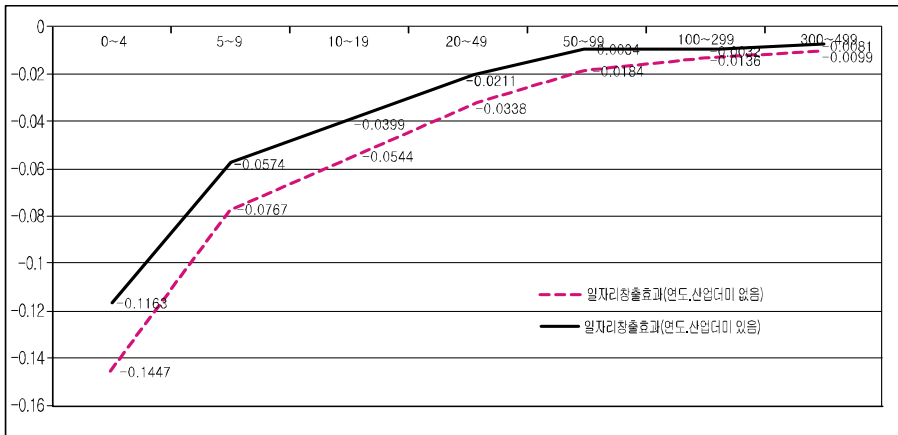
	추정식(1)		추정식(2)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항	0.0621	0.0007	0.1502	0.0009
진입규제 여부 (유규제=1)	-0.0233	0.0003	-0.0096	0.0003
기업규모 계층				
0~4	-0.1447	0.0005	-0.1163	0.0006
5~9	-0.0767	0.0006	-0.0574	0.0006
10~19	-0.0544	0.0006	-0.0399	0.0006
20~49	-0.0338	0.0006	-0.0211	0.0006
50~99	-0.0184	0.0006	-0.0094	0.0006
100~299	-0.0136	0.0006	-0.0097	0.0006
300~499	-0.0099	0.0008	-0.0081	0.0008
기업나이 계층				
0	2.0725	0.0009	2.0879	0.0010
1	0.3417	0.0007	0.3513	0.0008
2	-0.0010	0.0007	0.0032	0.0008
3	-0.0559	0.0007	-0.0586	0.0008
4	-0.0479	0.0007	-0.0477	0.0008
5	-0.0403	0.0008	-0.0405	0.0008
6~10	-0.0212	0.0006	-0.0227	0.0007
11~15	-0.0075	0.0007	-0.0104	0.0007
16~20	0.0043	0.0007	0.0008	0.0008
21~25	-0.0035	0.0008	-0.0071	0.0008
26~30	-0.0056	0.0009	-0.0087	0.0009
31~50	-0.0007	0.0007	-0.0026	0.0007
산업더미	N		Y	
연도더미	N		Y	
Adj. R ²	0.1952		0.1991	
관측치수	30,288,363		30,288,363	

주 : 모든 변수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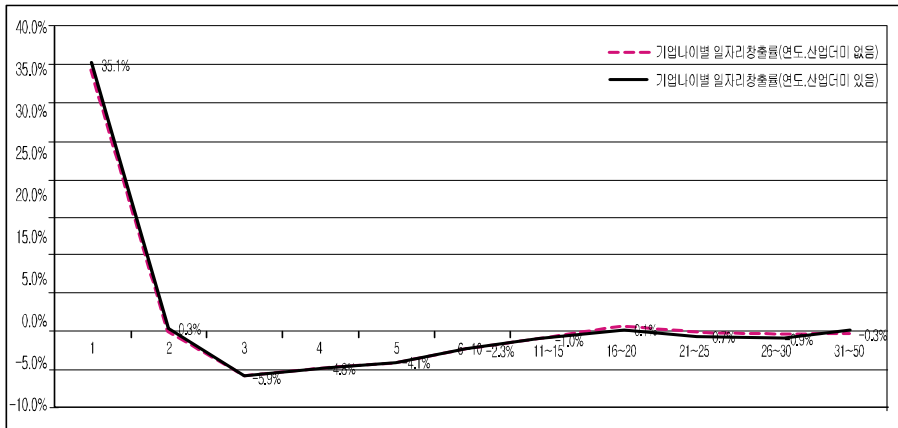
연도더미 및 산업더미를 추가하여 추정한 결과에 큰 차이는 없다. [그림 14]는 추정 결과 중 기업규모 계층의 추정치들을 가지고 그린 것이다. 기업규모의 증가에 따라 뚜렷하게 순일자리 창출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15]는 기업규모를 통제된 상태에서 기업나이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기업이 창업된

이후 1~2년 정도에 일자리 창출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이후부터는 급격히 저하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기업의 나이가 들면서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이미 Haltiwanger, Jarmin and Miranda(2013) 등이 실증적으로 보여준 바와 같이 순일자리 창출률 추정식에서 기업나이를 통제하고 나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순일자리 창출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의 몫이라는 전제하에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던 그간의 일자리창출 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서비스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창업초기 기업을 중시하는 방향, 그간 경시되어 왔던 대기업에 의한 순일자리 창출률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14] 기업나이 통제 하의 기업규모별 순일자리 창출률 추정계수



2. 서비스업 규제개혁의 정치경제학

(1) 서비스산업 관련정책의 추진 추이

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 추진³⁰⁾

정부의 서비스산업 정책은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80년대의 개방압력과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제조업 수출에 의존한 성장전략의 한계와 고용창출의 시급성이 인지되면서 서비스산업은 정책적 조명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전 시기의 제조업에 부수된 또는 제조업을 지탱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 자체의 생산성과 고용 및 성장잠재력 그리고 국민 후생과의 직결성 등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둘째는 1980년대부터 외환위기까지의 시기로, 대내적으로는 안정화·개방화 기조가 시작되고 대외적으로는 통상압력이 가중되었던 기간이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흑자 누적과, 선진국의 비교우위가 서비스산업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계속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재화시장과 더불어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기다. 1981년부터 도소매 투자제한 완화를 통해 유통시장의 부분적 개방이 이루어졌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영화 등의 문화산업과 통신, 유통 등을 중심으로 연속적인 개방이 이루어졌다. 당시 서비스산업 개방은 대부분의 경우 소극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졌고,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되거나 시행되지 못했다. 세 번째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률의 둔화현상이 가시화되고 고용의 탈공업화 현상이 급진전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과 고용완충지대로서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특히 서비스산업이 제조업의 혁신 및 생산 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서비스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 관심사였다. 네 번째 시기는 서비스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확고히 인식하고 선진화를 추진하는 2008년 이후 시기이다. 정부는 2008년 두 차례, 2009년 세 차례 그리고 2010년 6월, 9월 등 두 차례를 포함해 총 일곱 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선진화 방안 추진을 통해 교육·의료부터 미디어, IT, 관광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개혁과제와 정책방향이 제시되었고, 필요한 법령 개정이 진행되었다. 특히 주요 서비스부문에

30) 차문중(2010)을 일부 정리하였다.

대한 인적자원 개발과 서비스기업과 제조기업 간의 차별적 정책 개선에 많은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었다.

나.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관련 정책 내용

서비스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에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고용구조, 생산성, 대외경쟁력, 서비스연구개발 등 측면에서 후진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특히 서비스산업은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매우 낮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 부문은 생산성을 높이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OECD의 보고서(Jones, 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저생산성은 각종 진입규제 및 영업규제가 많고 시장개방이 미흡한데 따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부문의 역동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진입과 퇴출을 확대하여 이 부문의 경제 역동성을 적극적으로 높이는 일이다. 이미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분석에서는 진입을 확대하는 진입규제 개혁을 하면 퇴출률 또한 높아지면서 동 부문에 존재하고 있던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들이 퇴출되는 자연선택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이같은 자연선택 메커니즘의 작동은 자연스럽게 진입규제가 완화된 부분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³¹⁾ 예를 들어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전산업에 걸쳐 산업연관효과도 높고 혁신의 중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진입규제 등으로 인해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전형적인 고부가가치 유망 서비스산업들이지만 공공성을 과다하게 강조하면서 신규 인력의 진입을 대폭 제한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은 2008년부터 새로운 전기를 맞이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일곱 차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종합대책 및 유망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이후에도 다양한 서비스산업 관련정책이 발표된 바 있다.

[표 25]은 정부의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을 이명박 정부 이후 최근까지 시대 순으로 정책의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들의 발표내용을 들여다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분산된 흐름이 있는 것을 볼 수

31) 이병기(2014) 및 한진희(2003) 참조

있다. 첫째는 서비스업 중 특정한 산업을 지정하여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2008년 4월에 발표된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에서는 관광, 유학·연구, 의료, 지식기반서비스 부문 등이 포함되었고, 2차 선진화 방안에서는 고용서비스, 방송·통신, 콘텐츠, 법률, IT서비스·S/W, 보건·외식업 등이 포함되었다. 서비스업 내 특정산업을 지정하여 육성하려는 이러한 정책은 발표시점 마다 특정되는 대상 산업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는 지원제도를 통한 서비스산업 지원이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에 차별이 크다는 인식에서 경제적 효과가 큰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세제·재정·금융지원, 서비스인력 확충, 인프라 조성 등 차별완화 정책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셋째로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제2차와 제4차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에 규제완화 내용이 포함되었고 서비스업 정책을 추진할 때에 약방의 감초처럼 정책 과제로 포함되는 것이 규제완화 논의이다. 넷째로 최근 들어 논의가 부쩍 늘어난 것 중의 하나가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이슈이다. 2010년 6월 발표된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이 처음 발표된 이후 2012년에 서비스업 해외진출 촉진방안을 또 다시 발표하였다. 이 때에는 의료, 엔지니어링, 콘텐츠, 이러닝을 해외진출 우선 업종으로 선정하고 업종별 우선 진출 국가 선정 및 서비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정책과제 발굴하는 정책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표 25] 2008년 이후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 추진 경과

발표시점	정책방향
2008.4.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동력 확충과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제1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 관광부문, 유학·연구부문, 의료부문, 지식기반서비스 부문 등 주요 서비스적자 부문의 개선방안 마련
2008.9.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제2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 고용서비스, 방송·통신, 콘텐츠, 법률, IT서비스·S/W, 보건·외식, 자격사제도 선진화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합리화로 기업투자 활성화, 선진적인 제도도입
2009.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산업의 인적인프라 구축 및 R&D 활성화 방안 마련 (제3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 서비스산업의 맞춤형 인재 양성, 서비스산업의 직업훈련 확대, 서비스산업의 R&D 활성화 등 사람과 지식 경쟁력의 관건인 서비스산업의 인프라에 대한 정책 노력
2009.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제4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 부가가치·고용창출, 성장가능성, 서비스수지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료·물류·방송통신·콘텐츠·컨설팅·디자인·IT서비스·고용지원 등 9개

	<p>유망서비스 분야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개 유망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합리화, 경쟁촉진 및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 개선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2009.5.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 서비스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방안 - 녹색기술산업 분야, 첨단산업 융합분야, 고부가 서비스산업 분야 등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방안
2009.9.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회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 (제5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 해외소비수요 국내흡수, 외국인관광객 친화적 관광인프라 구축, 고소득층의 소비촉진을 통해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관련규제 완화
2010.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진출 지원체계 정비, 해외진출 지원제도 강화 및 서비스 전문인력 해외진출 기반확대 추진
2010.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새로운 수요창출, 경영여건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등 추진
2011.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 주요내용 :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 구성·운영, 서비스산업 R&D투자 유도, 서비스산업에서 IT서비스 및 관련기술 활용 촉진, 서비스산업 규제 및 지원제도 근거 규정 마련,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지정, 통계DB 구축 및 실태조사, 전문연구센터 지정, 서비스산업연합회 설립
2012.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관광·사업서비스·방송통신·사회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 그리고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
2012.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 방안 - 의료, 엔지니어링, 콘텐츠, 이러닝을 해외진출 우선업종으로 선정하고 업종별 우선 진출 국가 선정 및 서비스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정책과제 발굴
2012.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산업 차별 완화 방안 - 경제성장과정에서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경제적 효과가 큰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세제·재정·금융지원, 서비스인력 확충, 인프라 조성 등 차별완화 정책 추진
2012.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전략 - 서비스업은 일자리 창출력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생산성은 정체상태라는 인식하에 서비스산업에 IT활용을 촉진하여 부가가치 제고 도모 - 의료, 교육, 금융, 출판·콘텐츠, 관광, 물류·건설, 의식주, 교통, 생활안전, 소비자보호, 환경 등과 IT를 결합 촉진
2013.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 방향 및 1단계 대책 발표 - 콘텐츠산업, 정보보호산업 등 서비스산업 육성계획 추진
2014.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육성을 위한 135개 정책과제 제시

자료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main/main.jsp>) 보도자료 참조

이러한 서비스업 발전방안 내용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서비스업 정책이 전반적으로 큰 틀의 체계적인 시각에서 추진되기보다는 개별 부처가 각론 위주의 부문별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국민경제적인 파급효과, 관련 산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핵심 추진과제를 발굴하거나 정책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주로 정부가 조세, 재정, 금융, 인프라구축 등 물량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서비스산업 내 특정 산업을 육성하려는 과거 제조업 육성식 특정 산업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뚜렷이 엿보인다. 서비스산업은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갖는 다양한 산업의 집합이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로 서비스업 고유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부족으로 세부대책의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무형적, 인적 집약적인 특성이 강하고 또 서비스업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개별 산업 간에 이질성이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질적인 특성을 갖는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별 산업군 별로 내재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다원적인 접근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비교적 높은 행정규제를 받고 있는 산업이다. 특히 일부 산업에서는 아직도 매우 높은 법적인 진입규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제조업 육성방식의 지원정책으로 서비스업이 발전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서비스산업 내 진입 및 영업 규제완화 등 경쟁기반 개선은 적어도 그 중요성 및 추진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크지 않은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집단의 반대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서비스 부문의 규제개혁을 위한 정치경제학

가. 현재 등록규제 중 서비스업 부문의 주요한 진입규제

서비스업 부문은 국내적으로 볼 때 제조업에 비해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나타난 서비스산업의 업무활동별 주된 규제 현황을 살펴 본 것이 [표 26]이다.

이에 따르면 주된 규제³²⁾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전체 서비스산업 규제 중 정부가 집중 육성할 계획인 관광·문화·스포츠 분야, 의료·보건·복지 분야, 정보·통신·출

32)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규제를 '주된 규제'와 '부수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고, 부수적 규제는 주된 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 절차적 규제와 주된 규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사후 보완적 규제를 의미하며, 주된 규제와 부수적 규제를 합하면 15,281개로 나타났다.

판·방송 분야, 교육 분야, 금융·보험 분야 등 5대 서비스산업 부문에 대한 규제는 47.6%에 달한다. 금융·보험업이 712개로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교육(294개), 의료·보건·복지(270개), 정보통신·출판·방송(252개), 관광·문화·스포츠(186개) 순이다. 5대 서비스산업의 등록규제 중 진입관련 규제는 금융·보험업이 106개로 가장 많고 이어 의료, 보건·복지(75개), 교육(54개), 관광·문화·스포츠(52개), 정보통신·출판·방송(50개) 순으로 나타났다. 5대 서비스산업 진입관련 규제는 총 337개로 이는 제조업 전체규제인 338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에서 집중 육성 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요한 서비스산업에서도 여전히 많은 진입규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첫째로 의료산업의 경우에 의료기관 설립주체 의사·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진입은 아직도 불허하고 있다. 의사와 비영리법인만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의 경우 영리추구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제한되고 있고, 의료인 간 의료지식·기술지원 등의 원격의료만 허용되고 있다. 둘째로 관광업의 경우엔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제한하고 있고, 유해시설 없는 특급호텔의 경우에도 일괄 금지대상이다. 호텔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시설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관광호텔까지 포함하여 유해시설로 규제하고 있다.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시 경사도 20~25도 미만인 토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등 경사도 기준으로 숙박시설 설립 규제가 있다. 셋째로 교육 부문의 경우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시 과실송금이 불허되고 있다. 싱가포르, 두바이 등 경쟁국의 경우 과실송금이 허용되는 것과 다르다. 더구나 영리학교법인 설립은 불허하고 있다. 넷째로 금융 부문의 경우에 금융업 전반의 진입·영업규제로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 사모펀드에 대한 진입·설립·운용규제가 여전히 있다. 자기 자본, 운용성과, 전문인력, 물적설비, 대주주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모펀드 운용업 진입이 가능한 상태다. 다섯째로 소프트웨어·정보통신업의 경우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는 금지하고 있다.³³⁾

33) 전경련(2014) 및 김현중 외(2014) 참조

[표 26] 서비스산업의 업무활동별 주된 규제* 현황 및 진입규제 현황

(단위 : 개, %)

구 분	사업 개시 인허가	공장, 법인 설립	품질 관리, 제품 등록	시설· 설비관리 관리, 제품 관리, 제품	영업, 업무관리 관리, 제품	노동, 조직 관리	안전관 리정보 통신	재무 가격	변경, 휴폐업	기타	총계	진입 규제 비율**
관광·문화·스포츠	47	5	6	10	76	4	9	18	3	8	186	28.0
의료·보건·복지	55	20	5	9	114	17	19	14	2	15	270	27.8
정보·통신· 출판·방송	44	6	8	4	114	4	46	12	6	8	252	19.8
교육	32	22	1	14	120	61	5	18	1	20	294	18.4
금융·보험	64	42	1	0	344	67	13	158	14	9	712	14.9
운송·창고업	89	4	14	42	151	36	75	24	6	44	485	19.2
공공기관	38	24	12	17	120	20	13	16	0	58	318	19.5
연구개발 전문서비스	83	15	3	2	122	16	13	15	4	25	298	32.9
부동산	75	46	1	12	101	10	3	32	1	10	291	41.6
단체·협회	18	17	0	0	57	26	0	31	2	75	226	15.5
도소매·수출입	17	3	0	1	42	1	2	2	1	33	102	19.6
환경산업	15	2	2	1	12	0	0	2	0	37	71	23.9
사업시설·관리지원	13	3	2	7	21	6	1	0	1	3	57	28.1
개인·가사·보육	5	0	1	2	9	7	0	0	0	2	26	19.2
공중위생·요식	3	0	1	0	5	1	1	0	0	2	13	23.1
총계	598	209	57	121	1408	276	200	342	41	349	3,601	22.4

주: 진입규제비율은 사업개시·인허가 및 공장·법인 설립 규제의 합이 각 산업의 전체규제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료: 전경련, 『서비스산업 등록규제』, 201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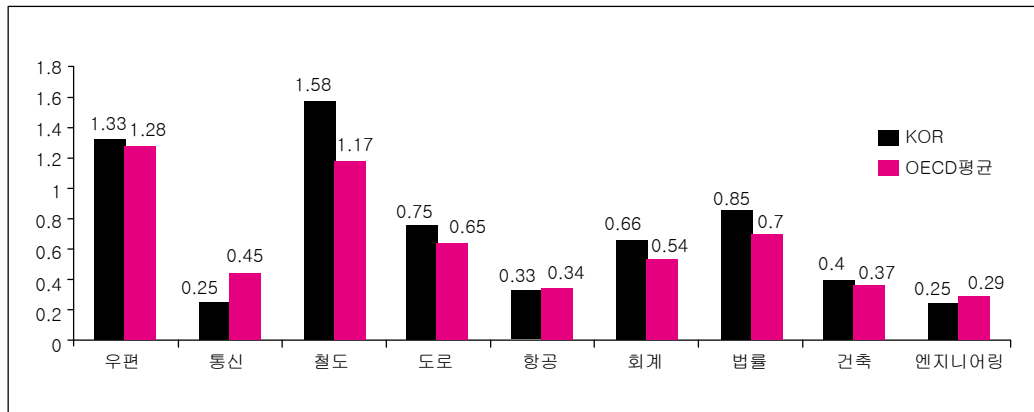
나. 서비스업 진입장벽의 국제비교

국내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OECD의 분석 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산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 보아도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높은 규제가 존속되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보아도 우리나라 서비스업 부문의 진입규제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2014)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높은 국가 중 하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특히 진입규제 측면에서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OECD(2014)의 상품시장 규제는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수의 제한, 경쟁할 공급자의 능력의 제한, 경쟁할 공급자의 인센티브 제한, 소비자가 이용할 선택권과 정보의 제한 등을 모두 포함하여 만든 지수이다. 따라서 이 지수는 진입제한 등 다양한 형태의 경쟁제약을 포함하는 지수를 의미한다. OECD는 서비스산업 중 사업서비스(회계서비스, 건축, 엔지니어링, 법무서비스), 소매업, 기반사업(우편, 항공, 철도, 도로) 분야별로 회원국의 진입규제 현황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 [그림 16]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분야별 진입장벽을 보면 항공, 통신,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우편, 철도, 도로, 회계, 법률, 건축 등 분야에서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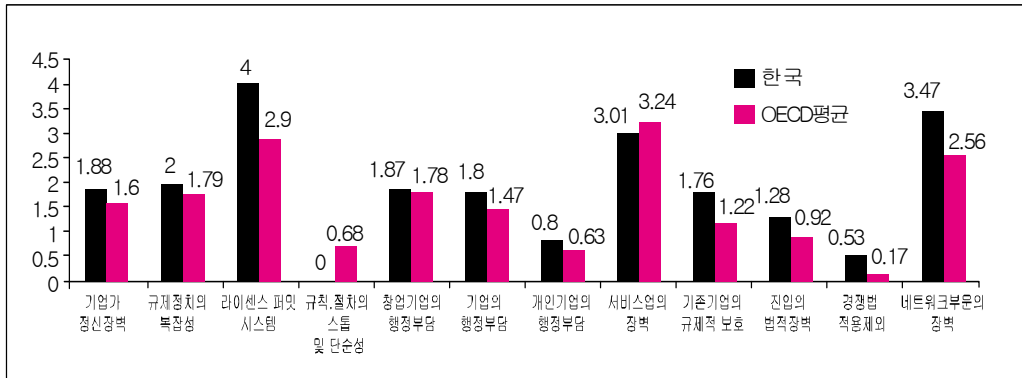
[그림 17]은 기업가정신 제약을 나타낸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부분이 많다. 규제절차의 복잡성, 인허가 체계,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기존기업의 규제적인 보호, 진입의 법적인 장벽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OECD 주요국 평균대비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진입장벽 비교



자료: OECD(2014)

[그림 17] 주요 부문별 OECD 대비 기업가정신 장벽 비교



자료: OECD(2014)

다. 서비스업 규제개혁의 정치경제학

서비스산업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법적인 규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입규제가 많은 산업은 여전히 서비스산업 부문에 존재한다. 특히 진입규제가 많은 산업은 여전히 서비스산업 부문에 존재한다.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을 논의한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근본적인 규제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규제개혁이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는 두 가지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비스업 부문에서 진입규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관련 산업 부문에 이익집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며, 또 다른 하나는 관료집단도 이익에 포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특수이익집단의 존재이다. 역대 정부가 꾸준히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음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 어려웠던 중요한 이유는 이익집단의 반발 때문이다. 예컨대 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범위 제한 등의 규제를 둘러싼 이해집단 간 갈등이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³⁴⁾ 규제개혁으로 손해를 입게 되는 집단이나 계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저항에 부딪혀 규제개혁이 좌초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을 설명하는 규제포획이론이 있다. 이에 의하면 이익집단들은 흔히 잘 조직되어 있어 규제자들의 재당선·재임명·재취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34) 박정수 외(2014) 참조

수 있는 데 반해, 일반 소비자들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규제자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규제자들이 규제대상이 되는 이익집단의 요구에 순응하게 된다는 것이다.³⁵⁾

Olson(1990)에 의하면 사회내의 집단행동을 위한 조직들은 산출물을 추가적으로 생산해 내는 것 보다는 소득과 부의 분배를 위해 더 강력하게 투쟁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조직들을 특수이익집단(special interest group)이라고 부르고 있다. 특수이익집단들은 사회의 효율성과 산출량을 감소시키면서 그 구성원들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중의 하나는 가격이나 임금을 어느 정도 상승시키거나 어떤 부류의 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유형의 소득보다 낮은 비율로 세금을 부과시키도록 로비활동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특수이익집단의 대다수는 소득을 창출한다기 보다는 재분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여러 면에서 사회의 효율성과 산출물을 감소시킨다.³⁶⁾ 특수이익집단과 같은 폐쇄적인 집단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반면에, 개방적인 이익집단은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노조라든지 서비스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진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이익집단은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 경제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한 사회가 특수한 이익집단으로 기능하는 많은 조직을 가지고 있다면, 경제 효율성이 감소하고, 소득은 그들이 활동하는 이익집단으로 모이게 되고, 정치활동은 보다 알력을 초래하게 되어 경제성장은 어렵게 된다. Olson은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s)이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들을 수행하는 국가의 힘을 제약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안정된 사회는 담합을 조장할 위험이 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집단행동의 조직화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 국가가 노동시장을 개혁하려고 할 때, 노동자의 권리는 감소되고 값싼 노동력을 갖는 산업으로 채워지게 되고 노동시간은 확대되고 실업혜택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지출은 감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익집단의 단결력이 높은 경우에 국가의 개혁노력에 반대하고 집단행동을 통해 개혁 아젠다를 중지시키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Olson은 1960년대까지의 고도성장 이후에도 안정된 사회가 지속되면서 재분배 목적의 이익단체들이 점차 늘어나고 이로 인해 이들 나라에서 성장률이 낮아졌다고 보았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규제는 상당한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어 대다수 선진국에 비해 규제강도가 지나치게

35) 김동연(2014) 참조

36) Olson(1990) 참조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교육·의료·전문서비스업 등 주요 서비스업에서 규제개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익단체는 더욱 개방적인 자세를 갖도록 정부 및 정치권의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는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부재 때문이다. 이용규·이성로(2002)는 일반시민에 비해 한국의 관료는 시장원리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공무원들의 이러한 가치체계는 정부의 범위와 역할을 결정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저항 정도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일선 공무원들의 의식구조가 변화하지 않으면 규제개혁의 성과는 분명히 한계를 갖게 될 것이다. 최근 규제완화를 향한 정치권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정부규제의 본질적 요소들은 여전히 각급 규제기관의 관료적 행태와 이해관계 집단의 보호막 속에서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다. 그 원인의 하나로 지난 30여 년간 강력한 규제권한을 행사하는 관료집단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규제를 풀어나가는 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요구하는 데는 아무래도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한번 만들어진 규제는 공무원들에게 있어 지켜야 할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시대와 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불편해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해 집행 상 편의를 누려온 공무원들은 이를 바꾸지 않고 계속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할 경우 현재 조직과 관련 예산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여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행태로 나타나기도 한다.³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 정책의 구체적 실현은 규제행정 담당 관료들의 전문성에 궁극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개혁에 대하여 소극적인 관료조직의 벽을 허물고, 규제실무에 익숙한 전문 직업 관료들이 스스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은 중요하다.

Stephen G. Breyer는 규제개혁이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 마인드가 있는 참신한 관료엘리트들의 동참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직업관료들이야말로 규제개혁의 선봉에 설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 즉 특정규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할 능력, 일반적인 행정관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전문성에 근거한 실무를 수행함으로써 이익집단이나 일반대중의 편향된 주장에 대하여 상당한 독립성과 공정성 유지 가능, 규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대중매체의 편견, 정치권의 과잉반응, 과학적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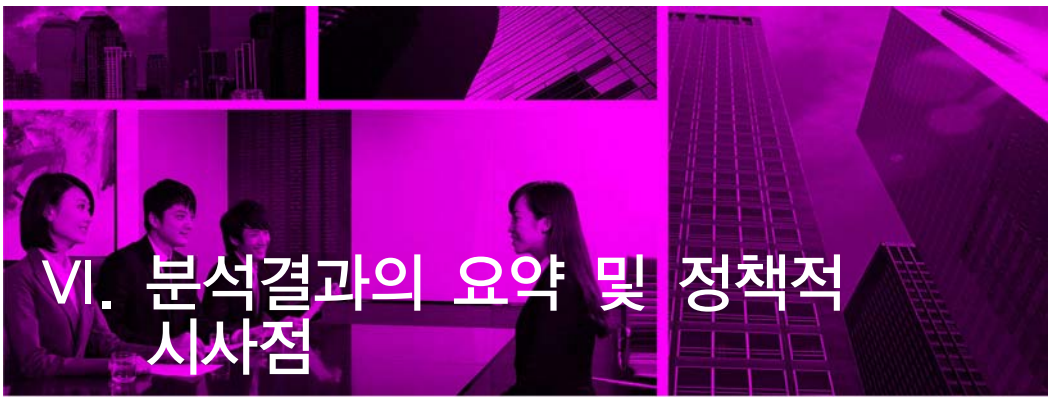
37) 김동연(2014) 참조

의 불확실성 등 3자의 논리적 악순환을 극복하고 권위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³⁸⁾

김광동(2014)는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는 승진과 보수라는 공무원의 인센티브(incentive)제도를 규제개혁과 연결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여론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임용직 공무원부터 정년을 보장받게 되는 일반직 공무원의 관심은 오직 승진과 보수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규제의 유지와 확대를 통해 추가적 권한 확대를 추구하는 공무원 조직에서 승진과 보수와 연계되지 않은 규제개혁이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승진과 보수라는 인센티브에 좌우되는 공무원 조직의 기본원리를 규제개혁에 적용하고 연동시킬 때만이 규제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³⁹⁾

38) 성용락(2014) 참조

39) 김광동(2014) 참조



1. 분석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멸의 동학을 수량적으로 설명하는 간단한 모형을 가지고 기업의 진입과 퇴출, 성장과 쇠퇴가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의 진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진입규제 개혁방안들을 제시하는데 있다.

첫째로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법적인 진입규제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부문은 높은 진입규제를 받고 있다. 상당히 많은 서비스업은 강한 법적인 진입규제를 받고 있어 이들 산업 부문으로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업의 경우 5-digit 기준으로 할 때 96.2%의 산업에서 강규제 또는 약규제 등 진입규제를 받고 있으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90% 이상의 산업이 진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 및 소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각각 37.9%, 34.6%의 산업에서 진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진입규제가 비교적 낮은 산업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새로운 방식으로 진입률과 퇴출률을 계산해 보면 2002~2011년 기간 중 사업체의 진입률이 뚜렷이 저하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 2002년 진입률은 24.2%였으나 2011년에 진입률은 10.5%로 푹 떨어졌다. 반면에 사업체 존속률은 2002년 57.9%에서 2011년 74.2%로 뚜렷하게 높아졌다. 퇴출률은 2002년 10.8%였으나, 2011년 13.2%로 퇴출률은 상대적으로 덜 증가하였다.

셋째로 서비스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이 전산업 평균 또는 제조업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2~2011년 기간 중 전산업의 일자리 창출률은 24.4%, 일자리 소멸률은 21.2%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률은 25.1%, 일자리 소멸률은 21.6%로 나타났다. 따

라서 2002~2011년 기간 중 전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약 3.2%였으나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률은 약 3.5%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약 1.8%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약 두 배 높은 순일자리 창출률을 나타내고 있다. 일자리 재배치율에 있어서는 전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거의 거의 비슷한 45~46%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의 일자리 재배치율은 약 38.0%로 나타나 서비스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로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의 일자리 창출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2~2011년 기간 중 진입규제가 있는 서비스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3.4%였으나, 진입규제가 없는 서비스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4.01%로 나타났다. 진입규제가 없는 서비스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입규제가 있는 서비스업의 일자리 재배치율은 44.0%, 진입규제가 없는 서비스업의 일자리 재배치율은 56.9%로 나타나 진입규제가 없는 경우 진입규제가 있는 경우보다 일자리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서 2005년까지는 진입규제가 있는 산업과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2005년 이후 뚜렷하게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의 일자리 창출률이 진입규제가 있는 서비스업의 순일자리 창출률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순일자리 창출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규모 300인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하였을 때, 2002~2011년 기간 중 전산업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3.4%, 중소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3.2%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할 때 중소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3.5%, 대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4.0%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사업체 및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하지만 일자리 소멸도 많아 순일자리 창출률은 대기업에 비해 낮다.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률도 높지만 일자리 소멸률도 높기 때문에 '순'일자리 창출률은 대기업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상황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재배치율이 높게 나타나고 대기업의 일자리 재배치율이 낮은 결과에도 반영되어 있다.

여섯째로 순일자리 창출률은 진입규제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에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었다. 진입규제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약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입규제가 없는 산업에서 활동하는 대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은 약 8.7%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진입규제가 있는 산업에서나 없는 산업에서나 순일자리 창출률은 거의 비슷한 3.4~3.6%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일곱째로 서비스업의 경우에 창업 첫해의 일자리 창출률은 31.9%였고 일자리 소멸률은 14.6%로 순일자리 증가율은 약 17.7%로 나타났다. 기업나이 2세에서 30세까지는 순일자리 창출률은 음수를 나타내다가 31세 이후부터 일자리 창출률이 양수를 나타내고 있다. 창업초기 1~2세 이후 기간에는 기업나이와 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 간에는 미약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여덟째로 기업규모, 기업나이를 통제하고 난 이후 진입규제와 순일자리 창출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입규제는 순일자리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입규제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진입규제가 부과되는 경우에 순일자리 창출률을 약 0.96% 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현재의 분석에서 서비스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이 약 3.52%인 점을 감안하면 진입규제가 있는 경우 순일자리 창출률을 약 27.3% 감소시킨다. 또한 기업나이를 통제하고 난 후 기업규모와 순일자리 창출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규모가 클수록 순일자리 창출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서비스산업의 경우에 진입규제를 완화하면 순일자리 창출률은 증가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기업규모가 클수록 일자리 창출률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추진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보다 창업시점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아홉째로 정부에서 집중 육성 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요한 서비스산업에서도 여전히 많은 진입규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산업의 경우에 의료기관 설립주체 의사·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아직도 불허하고 있다. 원격의료도 제한되고 있다. 의료인 간 의료지식·기술지원 등의 원격의료만 허용되고 있다. 관광업의 경우엔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제한하고 있고 유해시설 없는 특급호텔의 경우에도 일괄 금지대상이다.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시 경사도 20~25도 미만인 토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등 경사도 기준으로 숙박시설 설립 규제가 있다. 교육 부문의 경우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시 과실송금이 불허되고 있다. 싱가포르, 두바이 등 경쟁국의 경우 과실송금이 허용되는 것과 다르다. 더구나 영리학교법인 설립은 불허하고 있다. 금융 부문의 경우에 금융업 전반의 진입·영업규제로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 사모펀드에 대한 진입·설립·운용규

제가 여전히 있다. 자기자본, 운용성과, 전문인력, 물적설비, 대주주 요건 등 충족 시 사모펀드 운용업 진입이 가능한 상태다. 소프트웨어·정보통신업의 경우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는 금지하고 있다.

열번째로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분야별 진입장벽을 보면 항공, 통신,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우편, 철도, 도로, 회계, 법률, 건축 등 분야에서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기업가정신 제약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문제있는 부분이 많다. 규제절차의 복잡성, 인허가 체계,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기존기업의 규제적인 보호, 진입의 법적인 장벽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의 기업의 진입규제, 기업규모, 기업나이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 창출률이 어떤 부문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 정책에 있어서 진입정책 등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낮았으나, 진입규제 여부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의 정도가 매우 다르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 정책에 있어서 진입규제의 완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중소기업 부문도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는 중요한 부분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서비스산업의 경우에 기업나이를 고려한 후 기업규모의 크기 증가가 순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순일자리 창출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업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못지않게 일자리 창출 능력이 많은 대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적 관심은 직접적인 지원방식이 아니라 규제완화와 같은 기업환경 개선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로 우리나라 경제의 다이내믹스가 최근 급격히 저하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신생기업의 시장진입과 노쇠기업의 퇴출이 선순환을 이루는 가운데 경제의 활력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진다. 서비스 산업은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서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고 지속성장을 해야 할 중요한 부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향상된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성은 관련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서비스업의 발전과 제조업의 성장이 병행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

세성을 벗어나 규모의 경제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산업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높은 현 상황에서 서비스업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지 못한다면 경제의 고부가가치화와 삶의 질 개선을 달성하기 어렵다. 보다 효율적인 새로운 기업이 서비스부문에 활발히 진입하여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에 가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진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대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이 중소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보다 높다. 중소기업은 진입규제가 완화되는 경우에도 순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대기업은 진입규제 완화로 순일자리 창출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다양한 형태의 진입규제를 받고 있는 대기업 부문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는 순일자리 창출을 더욱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서비스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는 선입견에서 탈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증 분석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순일자리 창출률이 높아진다. 또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창업초기 기업의 순일자리 창출률이 매우 높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의 몫이라는 전제하에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던 그간의 일자리창출 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업 부문에서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규모기업의 양적 확대 보다 질 좋은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규모가 큰 기업의 창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같은 정책 전환은 중소기업의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방식이 아니라 진입규제 완화와 같은 소프트한 방식의 정책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이 들지 않는 방식의 지원이라는 이점도 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의 몫이라는 전제하에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던 그간의 일자리창출 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넷째로 이익단체들이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갖도록 정부 및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업은 이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갈등으로 진입규제가 여전히 공고한 상태로 남아 있는 부문이다. 서비스업 부문의 규제개혁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이익집단의 존재 때문이다. 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범위 제한 등의 규제를 둘러싼 이해집단 간 갈등이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가 간

경제통합의 확대나 다자간 무역협상의 타결, 보조금 축소, 진입제한 철폐 등의 정책변화는 이익집단들의 활동 범위를 축소시키고 이들의 과거에 달성한 배분 왜곡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을 통해 개혁 아젠다를 중지시키려고 노력하는 경우에 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다섯째로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진행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승진과 보수라는 공무원의 인센티브 제도를 규제개혁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한번 만들어진 규제는 공무원들에게 있어 지켜야 할 권리로 인식되고 있고, 규제로 인해 집행상 편의를 누려온 공무원들은 이를 바꾸지 않고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할 경우 현재 조직과 관련 예산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여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행태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 정책의 구체적 실현은 규제행정 담당 관료들의 전문성에 궁극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관료조직의 벽을 허물고, 규제실무에 익숙한 전문 직업 관료들을 스스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규제개혁의 진전을 위해 중요하다.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진행시키는 방법은 승진과 보수라는 공무원의 인센티브 제도를 규제개혁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승진과 보수라는 인센티브에 좌우되는 공무원 조직의 기본원리를 규제개혁에 적용하고 연동시킬 때만이 규제개혁을 성공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정부제출), 2012.9
- 권혁욱, “고용창출의 원천은 어디인가: 일본의 사례”,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제5권 제4호, 2012, pp.77-88
- 권혜자, “서비스산업의 유형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76, 2011.7, pp.18-27
- 권혜자·노현국, 『사업체 특성별 일자리 창출과 부문별 실업배출』, 한국고용정보원, 2008
- 김광동, “정치시장의 원리로 본 규제개혁 방향”, 자유경제원, 2014.04.17
- 김기승·조준모, “자영업에 관한 유인가설과 구축가설에 대한 검증 : 월간 단기패널을 이용한 실증분석”, 『국제경제연구』, 제12권 2호, 2006, pp.163-189
- 김동연,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 『한국경제포럼』, 제7권 제1호, 2014.7., pp.53-75
- 김재홍, 『진입규제의 이론과 실제』, 한국경제연구원, 2004
- 김재홍, 『한국의 진입규제 현황과 시사점 연구』, 경제연구총서 제 395호, 대한상공회의소, 2008
- 김중호·심영섭·유진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진입규제 개혁방안』, 산업연구원, 2009.12
- 김현중 외,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4
- 김혜원, 『한국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pp.13-51
- 김혜원, “1981-2000년간 한국 광공업 5인 이상 사업체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노동경제논집』, 제27권 제2호, 2004, pp.29-66
- 박정수 외, “서비스산업의 규제현황과 주요업종별 규제개선 방향”,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분석』, 2014.5
- 방하남·이상호, “‘좋은 일자리’(Good job)의 개념구성 및 결정요인의 분석”,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40권 제1호, 2006, pp.93-127
- 성용락, 미국의 규제개혁과 우리의 규제완화 방안(III), 2014
http://www.bai.go.kr/jsp/cm/UE_FileDown.jsp?gsSrvPath=/db1fs1/BAICAB/img1/a4/12ea4/&gsNewFileName=71a3c.html&gsOrgFileName=pdata07_199901_170.html&gsFileExt=.html
- 윤윤규·고영우, 『일자리 창출과 소멸에 관한 연구』, 2009-08, 한국노동연구원, 2009
- 이규용·김용현, 『노동시장 구조변화의 특징』, 한국노동연구원, 2003

- 이병기, 『기업의 진입·퇴출의 생산성 효과와 진입규제의 개혁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4
- 이병희·조병익·김영민,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진입장벽 현황분석』, 한국은행, 2007.8
- 이시균, “비정규노동의 나쁜 일자리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제6권 제2호, 2006. pp.29-74
- 이윤수, “창업 및 고용보조금 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과 거시경제정책』, 2013.3.13
- 이용규·이성로, “관료와 규제개혁 : 공익이론의 적용가능성,”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40권 2호, 2002, pp.111-133
- 이준규·김종혁·고희채, 『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 분석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8-16, 2008
- 전경련, 『서비스산업 등록규제수, 제조업의 10배』, 2014
- 전현배,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한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효과에 관한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03.12
-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 활력 회복을 위한 新정부 정책방향』, 2013.3.14
- 차문중,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 검토 및 시사점 : 외환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김준경·차문중 편,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향』, 연구보고서 2010-06, 한국개발연구원, 2010
- 한진희, “진입·퇴출의 창조적 파괴과정과 총요소생산 증가에 대한 실증분석”, 『KDI 정책연구』, 제25권 제2호, 2003, pp.3-53
- 황수경 외, 『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역량 제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9

[해외문헌]

- Acemoglu, D., “Good Jobs versus Bad Jobs”,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19, No.1 January 2001, pp.1-21
- Angrist, .D. and J. S. Pischke, *Mostly Harmless Econometrics: An Empiricist's Compan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 Anxo, D. and D. Storrie, *The job creation Potential of the service sector in Europe*, Final report 2000, Employment & social affairs Employment and European Social Fund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Employment and Social Affairs Unit EMPL/A.1 Employment Observatory RESEARCH Network, 2000
- Arnold, J. M., B. Javorcik, and M.Lipscomb, and A. Mattoo, *Services Reform and Manufacturing*

- Performance Evidence from India,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5948, January 2012
- Ayyagari, M., A. Demircuc-Kunt and V. Maksimovic, *Small vs. Young Firms across the World : contribution to employment, job creation, and growth*,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WPS5631, The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Finance and Private Sector Development Team, April 2011
- Baldwin, J.R., and J. Haltiwanger, “A comparison of job creation and job destruction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0. No. 3., 1998, pp.347-356
- Bartelsman, E., S. Scarpetta, and F. Schivardi, *Comparative Analysis of Firm Demographics and Survival : Micro-Level Evidence for the OECD Countries*.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No. 348, Paris: OECD, 2003
- Bertrand, M. and F. Kramarz, “Does Entry Regulation Hinder Job Creation? Evidence from the French Retail Industr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17 No.4, 2002, pp.1369-1413
- Bertrand, M., A. Schoar, and D. Thesmar, “Banking Deregulation and Industry Structure : Evidence from the French Banking Reforms of 1985”, *The Journal of Finance*, Vol. 62, No. 2, April 2007, pp.597-628
- Birch, D. L., *Job Creation in America: How Our Smallest Companies Put the Most People to Work*, Free Press, New York, 1987
- Birch, D. L., “The Job Generation Process,” Unpublished report, MIT Program on Neighborhood and Regional Change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1979
- Birch, D. L., “Who Creates Jobs?.” *Public Interest* 65, 1981, pp.3-14
- Branstetter, L.G., F. Lima, L. J. Taylor and A. Venâncio, *Do Entry Regulations Deter Entrepreneurship and Job Creation? Evidence from Recent Reforms in Portugal*, NBER Working Paper 16473, 1050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MA 02138, October 2010
- Bripi, F., *The Role of Regulation on Entry: Evidence from the Italian Provinces*, Temi di discussione, Banca d'Italia, 2013
- Caballero, R.J., E.M.R.A. Engle and J. Haltiwanger, *Aggregate Employment Dynamics : Building from microeconomic Evidence*, NBER Working Paper No. 5042, 1995
- Centeno, M., C. Machado and A.A. Novo,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in Portugal*, Banco de Portugal, Economic Bulletin, Winter 2007
- Ciarreta, A., M. P. Espinosa, and M. Martinez-Granado, “Entry Regulation in the Spanish Retail Sector : Effects on Employment,” *Jornadas de Economía Industrial*, Vigo (Spain), May 2009
- Ciobanu, O. and W. Wang, *Firm Dynamics : From Entry and Exit in Canada, 2000 to 2008*, Statistics

Canada Economic Analysis Division, 2012

- Corsino, M., R. Gabriele and S. Trento, *Job flows in Italian SME : A Longitudinal Aanalysis of Growth, Size and Age*, DISA Working Paper N.1008, Department of Computer and Management Sciences, University of Treonto, Italy, revised 22, Dec 2010
- Criscuolo, C., P. N. Gal and C. Menon, *The Dynamics of Employment Growth: New Evidence from 18 Countries*, CEP Discussion Paper No.1274, June 2014
- Davis, S. J. and J. Haltiwanger, “Gross Job Creation, Gross Job Destruction, and Employment Realloc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07, No.3, Aug., 1992, pp.819-863
- Davis, S. J., J. C. Haltiwanger, and S. Schuh,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Cambridge : MIT Press, 1996
- Davis, S.J., J. Haltiwanger and S. Schuh, *Small Business and Job Creation: Dissecting the Myth and Reassessing the Facts*, Cambridge, Massachusetts, NBER Working Papers, No.4492, 1993
- De Kok et al, Do SMEs create more and better jobs?, EIM Business & Policy Research, November 2011
- Devine, H., T. Doan, K. Iyer, P. Mok and P.Stevens, *Decomposition of New Zealand Firm Productivity, 2001-2008*.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2012
- Dixon, J. and A.-M. Rollin 2012. *Firm Dynamics : Employmen Growth rate of Small Versus Large Firms in Canada*. Statistics Canada Catalogue no.11-22-M. Ottawa Ontari . The Canadian Economy in Transition. No.025, 2012
- Djankov, S., R. La Porta, and A. Shleifer, “The regulation of entr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CXVII, Issue.1, February 2002, pp.1-37
- Dunne, T., M. Roberts, and L. Samuelson, “Patterns of firm entry and exit in U.S. manufacturing industries”, *RAND Journal of Economics* 19(4), 1988, pp.495-515
- Dunne, T., M. Roberts, and L. Samuelson, “The growth and failure of U.S. manufacturing plan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4, 1989, pp.671-698
- Dunne, T., M.J. Roberts and L. Samuelson, “Plant Thnrover and Gross Employment Flows in the U.S. Manufacturing Sect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7, 1989, pp.48-71
- Fuchs, M. and A. Weyh, “The Determinants of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Plant-Level Evidence for Eastern and Western Germany”, *Empirica*, Volume 37, Number 4, 2010, pp.425-444
- García Villarreal, J. P. (2010), “Successful Practices and Policies to Promote Regulatory Reform and Entrepreneurship at the Sub-national Level”,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No. 18, OECD Publishing. doi: 10.1787/5kmh2r7qpstj-en

- Genda, Y., "Job Creation and Job Destruction in Japan 1991-1995",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12, 1998, pp.1-23
- Geurts, K. and J.Van Biesebroek, and K.U. Leuven, Job creation, Firm Creation , and de novo Entry, mimeo, May 9, 2014
- Haltiwanger, J., Job Creation and Firm Dynamics in the U.S., University of Maryland and NBER, March 2011
- Haltiwanger, J.C., R.S. Jarmin and J. Miranda, "Who Creates Jobs? Small vs. Large vs. Young,"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2013, pp.347-361
- Hijzen, A., R. Upward and P. Wright, *Job creation, job destruction and the role of small firms : firm-level evidence for the UK*, University of Nottingham, Leverhulme Centre for Research on Globalization and Economic Policy, Research Paper 2007/01, 2007
- Hohti, S., "Job Flows and Job Quality by Establishment Size in the Finnish Manufacturing Sector 1980-94", *Small Business Economics*, Vol.15 Issue 4, December 2000, pp.265-281
- Hopenhayn, "Entry, Exit and Firm Dynamics in Long Run Equilibrium", *Econometrica*, 1992
- Huber,P., H.Oberhofer and M.Pfaffermayr, "Who Creates Jobs? : Estimating job Creation Rates at the Firm Level", University of Salzburg, Working Paper No.2013-05, Working Paper in Economics and Finance, 2013
- Ibsen, R. and N. Westergaard-Nielsen, *Job Creation by Firms in Denmark*, Discussion Paper Series, IZA DP No.5458, January 2011
- Kambayashi, K. and T.Kato, "Good jobs, Bad jobs, and the Great Recession : Lessons from Japan's Lost Decad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Hitotsubashi University, PRIMCED Discussion Paper Series, No. 41, June 2013
- Kiyota, K., and T. Matsuura, *Why Is Multinational Status Important? Evidence from Job Creation and Job Destruction in Japan*, IPC Working Paper Series Number 23, November 2006
- Konings, J., "Job Creation and Job Destruction in the U.K. Manufacturing Sector",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7, 1995, pp.5-24
- Lawless, M., "Age or Size? Determinants of Job Creation ", Research Technical Papers 02/RT/13, Central Bank of Ireland, 2013
- Levinson, M., "Job Creation in the Manufacturing Revival",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uly 1, 2011
- López-García, P., P. Sergio and Á. L. Gómez, *Employment Generation by Small Firms in Spain*, Documentos Ocasionales N.º0903, Banco de España, 2009

- Maliranta, M. and N. Määttänen, *Allocation and industry productivity : Accounting for firm turnover*, ETLA Working Papers 11,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Finnish Economy, 2013
- Mukoyama, T., and L. Popov, “The Political Economy of Entry Barriers”, *Review of Economic Dynamics, Elsevier for the Society for Economic Dynamics*, Vol. 17(3), pp.383-416, July 2014
- Neumark, D., Brandon Wall, and Junfu Zhang, “Do Small Businesses Create More Jobs? New Evidence for the United States from the National Establishment Time Ser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February 2011, Vol. 93, No. 1, pp.16-29
- Oberhofer, H. and G. A. Vincelette, *Determinants of Job Creation in Eleven New EU Member States : Evidence from Firm Level Data*, The World Bank Europe and Central Asia Region Poverty Reduction and Economic Management Department, Paper 6533, July 2013
- OECD, *Employment in the service economy : A Reassessment*, 2000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3
- OECD, “Reducing regulatory Barriers to Competition : Progress since 2008 and Scope for further reform,” *Economic Policy Reform 2014, Going for Growth Interim Report*, 2014
- OECD, “Understanding Policy Interactions and Complementarities, and their Implication for Reform Strategies”, in *OECD Employment Outlook 2006: Boosting Jobs and Incomes*, OECD Publishing, 2006
- Olson, Mancur L./최광 역, 『국가의 흥망성쇠』, 한국경제신문사, 1990
- Picot, G. and R. Dupuy, “Job Creation by Company Size Class: The Magnitude, Concentration and Persistence of Job Gains and Losses in Canada”, *Small Business Economics* 10, 1998, pp.117-139
- Rijkers, B., H. Arouri, C. Freund, and A. Nucifora, *Which Firms Create the Most Jobs in Developing Countries? : Evidence from Tunisia*, World Bank Group, October 2014
- Ritter, J. A. and R. Anker, “Good jobs, bad jobs : Workers” evaluations in five countrie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41, No. 4, 2002
- Schivardi, F and E Viviano “Entry Barriers in Italian Retail Trade”, *Economic Journal*, Volume 121, pp. 145-170, 2011
- Senfleben-König, C., *Product Market Deregulation and Employment Outcomes: Evidence from the German Retail Sector*, August 25, 2014
- Vivino, E., “Entry Regulations and Labour Market Outcomes : Evidence from the Italian Retail Trade Sector”, *Labour Economics*, 15(6), 2008, pp.1200-1222
- Wagner, J., “Firm size and job creation in Germany”, *Small Business Economics* 7(6), 1995,

pp.469-474

Wheeler, C. H., "Job Flows and Productivity Dynamics : Evidence from U.S. Manufacturing", *Macroeconomic Dynamics* 11, 2007, pp 175-201

Yazdanfar, D. and A. K.Salman¹, "Assessing Determinants on Job Creation at the Firm Level : Swedish Micro Firm Data",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Vol.4, No.12, 2012

[부표 1] 연도별 산업별 퇴출률·존속률·진입률·단기생존률

산업	유형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단기생존	0.0826	0.0551	0.0675	0.0568	0.0425	0.0327	0.0327	0.0324	0.0345	0.0352
	퇴출	0.1085	0.1473	0.1496	0.1137	0.1076	0.1065	0.1143	0.1232	0.0769	0.1276
	존속	0.5852	0.6576	0.6492	0.6672	0.7196	0.7417	0.7447	0.7333	0.7515	0.7482
	진입	0.2376	0.1481	0.1343	0.1652	0.1336	0.1217	0.1109	0.1075	0.1554	0.1056
서비스	단기생존	0.0842	0.0555	0.0658	0.0568	0.0433	0.0326	0.0338	0.0332	0.0357	0.0363
	퇴출	0.1084	0.1445	0.1524	0.1149	0.1078	0.1065	0.1165	0.1248	0.0790	0.1320
	존속	0.5794	0.6595	0.6492	0.6661	0.7181	0.7411	0.7421	0.7289	0.7472	0.7418
	진입	0.2424	0.1505	0.1325	0.1620	0.1349	0.1220	0.1124	0.1094	0.1565	0.1052
농업, 임업 및 어업	단기생존	0.0260	0.0114	0.0304	0.0342	0.0221	0.0297	0.0114	0.0445	0.0219	0.0217
	퇴출	0.0953	0.0798	0.2006	0.1056	0.0663	0.0783	0.1071	0.1453	0.0615	0.0784
	존속	0.6936	0.8275	0.7090	0.6786	0.7945	0.8192	0.7655	0.7031	0.7864	0.8122
	진입	0.1583	0.0785	0.0573	0.1783	0.1033	0.0895	0.0819	0.1489	0.1428	0.1063
광업	단기생존	0.0321	0.0223	0.0467	0.0351	0.0217	0.0213	0.0215	0.0379	0.0144	0.0197
	퇴출	0.0678	0.1140	0.0945	0.0870	0.0986	0.0774	0.0901	0.1047	0.0738	0.0848
	존속	0.7928	0.7896	0.7651	0.7693	0.7852	0.7942	0.8145	0.7600	0.7953	0.8186
	진입	0.0920	0.0570	0.0873	0.1116	0.0925	0.1026	0.0685	0.1197	0.0982	0.0831
제조업	단기생존	0.0635	0.0459	0.0758	0.0480	0.0312	0.0274	0.0204	0.0227	0.0225	0.0232
	퇴출	0.1050	0.1664	0.1194	0.0995	0.1008	0.1000	0.0918	0.1006	0.0573	0.0907
	존속	0.6407	0.6556	0.6655	0.6957	0.7508	0.7666	0.7794	0.7862	0.7995	0.8106
	진입	0.1952	0.1206	0.1424	0.1747	0.1120	0.1065	0.0899	0.0871	0.1358	0.096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단기생존	0.0351	0.0114	0.0381	0.0250	0.0110	0.0096	0.0114	0.0348	0.0142	0.0198
	퇴출	0.0567	0.1047	0.0701	0.0468	0.0583	0.0488	0.0518	0.0779	0.0600	0.0409
	존속	0.6919	0.8054	0.8013	0.8228	0.8627	0.8797	0.8408	0.8383	0.7992	0.8742

	진입	0.2187	0.0819	0.0922	0.1173	0.0732	0.0661	0.0424	0.0710	0.1368	0.075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단기생존	0.0675	0.0361	0.0661	0.0553	0.0400	0.0375	0.0311	0.0292	0.0308	0.0347
	퇴출	0.1033	0.1299	0.1349	0.0983	0.1028	0.0994	0.1028	0.1227	0.0719	0.1147
	존속	0.6033	0.6897	0.6715	0.6602	0.7131	0.7250	0.7436	0.7341	0.7439	0.7538
	진입	0.2407	0.1520	0.1677	0.2487	0.1821	0.1806	0.1563	0.1302	0.1997	0.1394
건설업	단기생존	0.1177	0.0862	0.0934	0.0923	0.0606	0.0545	0.0429	0.0432	0.0416	0.0442
	퇴출	0.1270	0.1724	0.1746	0.1357	0.1286	0.1327	0.1303	0.1513	0.0823	0.1260
	존속	0.5343	0.5854	0.5759	0.5865	0.6473	0.6706	0.6978	0.6835	0.7152	0.7235
	진입	0.2588	0.1812	0.1627	0.2184	0.1691	0.1577	0.1346	0.1154	0.1807	0.1417
도매 및 소매업	단기생존	0.0866	0.0527	0.0685	0.0559	0.0423	0.0325	0.0306	0.0322	0.0374	0.0370
	퇴출	0.1059	0.1432	0.1491	0.1064	0.1051	0.1007	0.1129	0.1239	0.0756	0.1247
	존속	0.5943	0.6704	0.6599	0.6764	0.7303	0.7513	0.7546	0.7382	0.7509	0.7499
	진입	0.2168	0.1302	0.1133	0.1531	0.1222	0.1135	0.0985	0.0980	0.1540	0.1030
운수업	단기생존	0.0888	0.0807	0.0792	0.0699	0.0622	0.0507	0.0595	0.0408	0.0347	0.0453
	퇴출	0.1363	0.1773	0.1389	0.1531	0.1237	0.1524	0.1198	0.0907	0.1036	0.1198
	존속	0.5507	0.5839	0.6035	0.6214	0.6503	0.6649	0.6744	0.7273	0.7600	0.7343
	진입	0.2589	0.1857	0.1867	0.1685	0.1707	0.1301	0.1492	0.1455	0.1073	0.1103
숙박 및 음식점업	단기생존	0.1009	0.0609	0.0671	0.0600	0.0464	0.0309	0.0317	0.0382	0.0439	0.0431
	퇴출	0.1182	0.1498	0.1830	0.1305	0.1189	0.1155	0.1382	0.1651	0.0900	0.1737
	존속	0.5137	0.6277	0.6118	0.6319	0.6924	0.7206	0.7176	0.6732	0.6920	0.6844
	진입	0.2823	0.1712	0.1348	0.1598	0.1426	0.1302	0.1165	0.1155	0.1913	0.114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단기생존	0.1728	0.1253	0.1510	0.1318	0.0967	0.0760	0.0570	0.0636	0.0739	0.0784
	퇴출	0.1195	0.2130	0.1592	0.1282	0.1348	0.1276	0.1313	0.1418	0.0893	0.1288
	존속	0.4759	0.5180	0.5101	0.5483	0.6121	0.6269	0.6718	0.6741	0.6782	0.6671
	진입	0.2638	0.1510	0.1690	0.2226	0.1556	0.1604	0.1367	0.1301	0.2158	0.1862
금융 및 보험업	단기생존	0.1139	0.0573	0.0675	0.0569	0.0409	0.0409	0.0320	0.0304	0.0298	0.0321

부동산업 및 임대업	퇴출	0.0907	0.1377	0.1241	0.0824	0.0780	0.0852	0.0732	0.0780	0.0568	0.1122
	존속	0.5952	0.6759	0.6834	0.7135	0.7727	0.7810	0.7931	0.8148	0.8154	0.7890
	진입	0.2012	0.1060	0.1153	0.1589	0.1218	0.1096	0.1094	0.0804	0.1202	0.082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단기생존	0.0888	0.0701	0.0817	0.0702	0.0518	0.0367	0.0382	0.0343	0.0349	0.0333
	퇴출	0.0983	0.1526	0.1662	0.1128	0.1066	0.1035	0.1228	0.1300	0.0691	0.1294
	존속	0.5523	0.6357	0.6115	0.6323	0.6975	0.7349	0.7323	0.7227	0.7525	0.752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진입	0.2981	0.1825	0.1497	0.1983	0.1620	0.1339	0.1151	0.1014	0.1609	0.0974
	단기생존	0.0974	0.0741	0.0913	0.0706	0.0525	0.0447	0.0402	0.0407	0.0403	0.0453
	퇴출	0.1081	0.1596	0.1542	0.1140	0.1151	0.1024	0.1103	0.1239	0.0686	0.108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존속	0.5997	0.6284	0.6105	0.6338	0.6836	0.7259	0.7447	0.7230	0.7437	0.7436
	진입	0.2370	0.1624	0.1505	0.1851	0.1509	0.1515	0.1250	0.1147	0.1767	0.1415
	단기생존	0.1464	0.1005	0.1165	0.1049	0.0771	0.0636	0.0544	0.0591	0.0604	0.0678
교육 서비스업	퇴출	0.1193	0.1705	0.1696	0.1221	0.1207	0.1317	0.1344	0.1418	0.0852	0.1285
	존속	0.5058	0.5696	0.5571	0.5661	0.6450	0.6587	0.6714	0.6624	0.6781	0.6839
	진입	0.2773	0.1778	0.1732	0.2356	0.1924	0.1716	0.1547	0.1463	0.2280	0.183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단기생존	0.0292	0.0150	0.0411	0.0153	0.0034	0.0031	0.0022	0.0017	0.0032	0.0023
	퇴출	0.1026	0.1319	0.0455	0.0321	0.0476	0.0448	0.0301	0.0315	0.0231	0.0186
	존속	0.7073	0.7322	0.8053	0.8719	0.9061	0.9137	0.9338	0.9331	0.9309	0.9539
서비스업	진입	0.1592	0.1288	0.1123	0.0907	0.0378	0.0317	0.0235	0.0209	0.0519	0.0256
	단기생존	0.0613	0.0442	0.0526	0.0433	0.0347	0.0282	0.0341	0.0309	0.0328	0.0287
	퇴출	0.0981	0.1337	0.1450	0.1030	0.1127	0.1014	0.1270	0.1358	0.0808	0.1446
서비스업	존속	0.6318	0.6905	0.6710	0.6911	0.7067	0.7393	0.7303	0.7100	0.7305	0.7340
	진입	0.2421	0.1598	0.1445	0.1882	0.1395	0.1439	0.1258	0.1193	0.1800	0.1050
	단기생존	0.0299	0.0188	0.0311	0.0187	0.0129	0.0103	0.0102	0.0114	0.0131	0.0120
서비스업	퇴출	0.0701	0.0918	0.0839	0.0625	0.0591	0.0454	0.0523	0.0610	0.0392	0.0652
	존속	0.7489	0.7893	0.7906	0.7882	0.8709	0.8605	0.8675	0.8579	0.8527	0.8591

	진입	0.1768	0.1239	0.1185	0.1521	0.1206	0.1127	0.1021	0.0920	0.1384	0.09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단기생존	0.0685	0.0370	0.0574	0.0754	0.0351	0.0226	0.0342	0.0342	0.0356	0.0364
	퇴출	0.1043	0.1485	0.1776	0.1396	0.1175	0.1099	0.1331	0.1572	0.0974	0.1953
	존속	0.5026	0.6622	0.6269	0.6201	0.7046	0.7459	0.7046	0.6767	0.6981	0.6585
	진입	0.3173	0.1672	0.1505	0.1715	0.1319	0.1301	0.1348	0.1271	0.1829	0.11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단기생존	0.0501	0.0308	0.0398	0.0353	0.0257	0.0197	0.0218	0.0215	0.0225	0.0198
	퇴출	0.0884	0.1097	0.1264	0.0858	0.0869	0.0798	0.0952	0.0980	0.0591	0.0986
	존속	0.6674	0.7478	0.7308	0.7424	0.7877	0.8052	0.8038	0.7886	0.8080	0.8139
	진입	0.2013	0.1205	0.1069	0.1469	0.1066	0.0994	0.0889	0.0903	0.1286	0.0781

[부표 2] OECD 주요국의 상품시장 규제지수 변화추이

	기업가정신 장벽	규제절차의 복잡성	라이센스 퍼밋 시스템	규칙·절차의 소통 및 단순성	중기업의 행정부담	기업의 행정부담	개기업의 행정부담	서비스업의 장벽	기존기업의 규제적 보충	진입의 법적장벽	경쟁변 작용제외	네트워크 문의 장벽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2013
Austria	1.31	1.02	2.00	0.05	2.01	1.80	0.20	4.04	0.89	0.20	0.00	2.47
Belgium	1.78	1.47	2.00	0.94	2.53	2.20	1.00	4.40	1.34	1.50	0.00	2.52
Bulgaria	1.70	2.23	3.33	1.13	1.82	1.80	0.80	2.86	1.05	0.46	0.00	2.69
Czech Republic	1.82	2.49	4.00	0.97	2.11	1.80	0.80	3.72	0.86	0.20	0.00	2.39
Denmark	1.26	1.28	2.00	0.57	1.30	1.20	0.00	2.69	1.20	0.80	0.58	2.22
Estonia	1.56	2.06	4.00	0.11	1.83	1.60	0.60	3.28	0.79	0.21	0.00	2.17
Finland	1.55	1.63	2.67	0.59	1.74	1.20	1.20	2.83	1.26	0.90	0.00	2.89
France	1.66	1.57	2.00	1.15	2.16	2.00	0.60	3.89	1.25	0.93	0.00	2.81
Germany	1.51	2.00	2.67	1.33	1.62	1.00	0.20	3.65	0.91	0.40	0.00	2.34
Greece	1.91	2.07	4.00	0.15	2.37	1.80	1.40	3.91	1.30	1.10	0.00	2.79
Hungary	1.69	0.90	0.67	1.13	2.68	2.40	1.40	4.25	1.48	1.45	0.77	2.22
Ireland	1.98	3.37	5.33	1.40	1.49	1.40	0.20	2.86	1.07	0.72	0.00	2.50
Italy	1.22	0.52	0.67	0.38	2.14	1.60	0.20	4.62	1.01	0.48	0.00	2.56
Netherlands	1.19	1.08	2.00	0.16	1.25	1.40	0.00	2.34	1.26	1.15	0.00	2.62
Portugal	1.33	0.41	0.00	0.82	2.48	1.80	2.00	3.63	1.10	1.37	0.00	1.92
Slovak Republic	1.15	0.46	0.00	0.91	2.09	1.60	0.80	3.86	0.90	0.40	0.00	2.31
Slovenia	1.81	2.33	4.67	0.00	1.97	2.20	0.40	3.31	1.13	0.90	0.00	2.48
Spain	2.10	2.83	4.67	0.99	2.34	1.60	1.40	4.01	1.15	1.30	0.00	2.14
Sweden	1.71	2.77	4.67	0.87	1.45	1.40	1.00	1.94	0.92	0.80	0.00	1.95
United Kingdom	1.48	2.46	4.67	0.25	1.33	0.80	0.20	2.99	0.64	0.60	0.35	0.97
Iceland	2.04	2.61	4.00	1.22	2.00	1.80	0.80	3.39	1.53	1.77	0.00	2.81

Norway	1.69	2.06	3.33	0.79	1.35	1.40	0.00	2.64	1.66	1.97	0.00	3.02
Switzerland	1.56	1.85	3.33	0.38	1.22	1.40	0.40	1.87	1.60	1.57	0.00	3.23
Australia	1.61	2.27	4.00	0.55	0.92	0.80	0.80	1.15	1.64	1.47	0.71	2.75
Canada	1.34	1.29	2.00	0.57	1.32	0.00	0.20	3.75	1.43	0.69	0.65	2.95
Japan	1.67	1.83	2.67	1.00	1.54	1.20	0.00	3.41	1.65	1.07	0.53	3.34
Korea	1.88	2.00	4.00	0.00	1.87	1.80	0.80	3.01	1.76	1.28	0.53	3.47
New Zealand	1.18	1.30	2.00	0.59	0.92	0.20	0.20	2.36	1.34	0.20	0.73	3.08
평균	1.60	1.79	2.90	0.68	1.78	1.47	0.63	3.24	1.22	0.92	0.17	2.56
중위수	1.64	1.93	3.00	0.69	1.82	1.60	0.60	3.35	1.22	0.90	0.00	2.54
최소값	1.15	0.41	0.00	0.00	0.92	0.00	0.00	1.15	0.64	0.20	0.00	0.97
최대값	2.10	3.37	5.33	1.40	2.68	2.40	2.00	4.62	1.76	1.97	0.77	3.47

자료 : OECD(2013)

[부표 3] OECD 주요국 서비스업의 진입장벽 지수 변화추이

	에너지				통신				유동	
	에너지전체 (2008)	에너지전체 (2013)	전기(2013)	가스(2013)	통신전체 (2008)	통신전체 (2013)	전기통신 (2013)	우편(2013)	유동전체 (2008)	유동전체 (2013)
Australia	2.19	2.00	1.13	0.88	2.11	1.94	0.27	1.67		
Austria	2.20	1.99	0.87	1.12	1.54	1.36	0.51	0.85	3.30	2.40
Belgium	2.42	1.76	0.92	0.84	1.81	1.62	0.79	0.83	4.56	4.06
Canada	2.44	2.44	1.69	0.75	1.46	1.59	0.26	1.33	2.50	2.50
Switzerland	3.80	3.25	1.27	1.97	2.42	2.35	0.85	1.50	1.33	1.16
Chile	1.61	1.52	0.65	0.88	1.77	1.63	0.47	1.17	1.00	1.00
Czech Republic	2.68	2.13	1.19	0.94	1.90	1.22	0.22	1.00	1.23	1.56
Germany	1.36	1.17	0.59	0.59	1.42	1.40	0.57	0.84	2.88	2.71
Denmark	2.47	2.56	1.25	1.31	1.42	1.00	0.23	0.77		1.69
Spain	1.01	1.01	0.44	0.57	1.65	1.45	0.28	1.17		2.88
Estonia	3.28	2.70	1.62	1.08	2.38	1.79	0.29	1.50	1.40	1.50
Finland	2.66	2.67	0.83	1.84	2.00	1.95	0.28	1.67		2.86
France	3.34	2.85	1.59	1.26	2.21	1.81	0.48	1.33	3.80	2.57
United Kingdom	0.59	0.59	0.59	0.00	1.98	1.30	0.13	1.17		1.79
Greece	3.77	3.30	1.41	1.88	1.94	1.76	0.33	1.43	3.85	2.55
Hungary	1.94	1.67	0.80	0.87	2.01	1.82	0.32	1.50	1.44	2.06
Ireland	3.35	2.57	1.10	1.48	1.65	1.59	0.25	1.33	1.53	1.53
Iceland	3.78	3.78	3.78	.	1.93	1.99	0.24	1.75		1.42
Israel	3.72	3.47	2.25	1.22	2.21	1.98	0.48	1.50	3.23	3.51

Italy	1.89	1.65	0.72	0.93	2.42	1.88	0.21	1.67	3.96	3.15
Japan	2.00	2.37	1.07	1.30	1.72	1.48	0.48	1.00	2.25	2.32
Korea, Republic	3.80	3.75	1.85	1.90	2.28	1.58	0.25	1.33	0.60	0.70
Luxembourg	2.63	2.28	1.36	0.92	2.67	2.66	1.50	1.17	3.97	4.37
Mexico	5.02	4.92	2.91	2.02	2.62	1.73	0.56	1.17	2.13	2.11
Netherlands	2.41	2.15	1.00	1.16	0.83	0.56	0.23	0.33	0.91	0.91
Norway	2.76	2.88	1.15	1.73	2.48	2.47	0.81	1.67	2.01	2.01
New Zealand	2.00	2.00	1.03	0.97	2.59	1.77	0.27	1.50	0.70	0.70
Poland	3.73	3.21	1.15	2.06	1.97	1.19	0.19	1.00		2.62
Portugal	2.30	1.23	0.51	0.72	1.89	1.82	0.32	1.50		1.83
Slovak Republic	3.02	2.40	1.08	1.32	2.16	1.74	0.57	1.17		2.31
Slovenia	3.10	2.71	1.31	1.39	2.96	2.66	0.99	1.67	0.90	0.63
Sweden	2.37	1.99	1.15	0.84	2.53	1.96	0.65	1.32	0.60	0.60
Turkey	3.28	3.04	1.54	1.50	2.25	2.20	0.70	1.50		
평균	2.69	2.42	1.27	1.19	2.03	1.74	0.45	1.28	2.18	2.06
중위수	2.63	2.40	1.15	1.14	2.00	1.76	0.32	1.33	2.01	2.06
최대값	5.02	4.92	3.78	2.06	2.96	2.66	1.50	1.75	4.56	4.37
최소값	0.59	0.59	0.44	0.00	0.83	0.56	0.13	0.33	0.60	0.60

자료 : OECD(2013)

[부표 3] OECD 주요국 서비스업의 진입장벽 지수 변화추이

	운송					사업서비스					
	운송전체 (2008)	운송전체 (2013)	철도(2013)	도로(2013)	항공(2013)	사업서비스전체 (2008)	사업서비스전체 (2013)	회계(2013)	법률서비스 (2013)	건축(2013)	엔지니어링 (2013)
Australia	1.21	0.88	0.88	0	0	0.79	0.92	0.34	0.58	0	0
Austria	1.9	1.38	0.88	0.5	0	2.86	2.49	0.59	0.69	0.6	0.6
Belgium	2	2.04	1.25	0.75	0.04	2.35	2.35	0.81	0.89	0.65	0
Canada	1.33	1.33	0.75	0.25	0.33	3.24	3.15	0.88	0.81	0.82	0.65
Switzerland	1.54	1.54	1.29	0.25	0	0.87	0.87	0.24	0.45	0.11	0.06
Chile	2.17	2.17	1.25	0.92	0	2	1.07	0.24	0.34	0.24	0.25
Czech Republic	2.67	2.46	0.75	0.75	0.96	2.48	2.36	0.59	0.82	0.53	0.43
Germany	1.25	1.25	0.75	0.5	0	2.82	2.62	0.65	0.89	0.66	0.42
Denmark	1.52	1.39	0.75	0.5	0.14	0.78	0.82	0.24	0.54	0.05	0
Spain	2.54	2.42	1.33	0.75	0.33	2.37	2.06	0.52	0.66	0.44	0.44
Estonia	2.3	2.6	0.88	0.75	0.97	1.81	1.79	0.51	0.76	0.26	0.26
Finland	2.81	2.52	1.46	0.5	0.56	0.71	0.62	0.43	0.19	0	0
France	2.44	2.41	1.25	1	0.16	2.45	2.34	0.72	0.81	0.81	0
United Kingdom	0.92	0.58	0.08	0.5	0	0.88	0.88	0.59	0.1	0.18	0
Greece	3.92	2.58	1.5	1.08	0	2.82	2.35	0.25	1.12	0.49	0.49
Hungary	2.29	1.71	1.04	0.67	0	2.83	2.86	0.75	1.02	0.61	0.48
Ireland	2.83	2.38	1.63	0.5	0.25	1.25	1.25	0.29	0.87	0.05	0.05
Iceland	1.13	1.13	.	1.13	0	1.46	1.72	0.61	0.44	0.33	0.33
Israel	3.26	2.59	2	0.25	0.34	2.58	2.57	0.61	0.93	0.52	0.51
Italy	2.5	2.33	0.92	1.42	0	3.02	2.1	0.52	0.6	0.49	0.49

Japan	2.17	1.83	1	0.5	0.33	2.1	2.12	0.72	0.71	0.2	0.49
Korea, Republic	2.67	2.67	1.58	0.75	0.33	2.11	2.16	0.66	0.85	0.4	0.25
Luxembourg	2.61	2.75	1.86	0.5	0.39	3.55	2.82	0.65	0.8	0.68	0.68
Mexico	2.38	2.08	0.92	0.5	0.67	1.08	1.02	0.24	0.24	0.3	0.24
Netherlands	1.85	1.85	1.04	0.75	0.06	1.28	1.23	0.53	0.7	0	0
Norway	1.63	1.63	0.99	0.5	0.14	0.92	0.92	0.31	0.51	0.1	0
New Zealand	2.51	3.23	2	0.5	0.73	1.29	1.1	0.24	0.86	0	0
Poland	2.6	2.6	0.92	0.75	0.93	2.68	2.58	0.66	0.88	0.52	0.52
Portugal	3.17	3.04	1.29	0.75	1	2.7	2.55	0.6	0.97	0.56	0.41
Slovak Republic	1.79	1.54	1.04	0.5	0	2.29	2.33	0.54	0.76	0.51	0.52
Slovenia	3.92	3.18	1.25	0.75	1.18		2.56	0.67	0.86	0.54	0.49
Sweden	1.88	1.71	1	0.5	0.21	0.55	0.55	0.41	0.14	0	0
Turkey	4.49	4.24	2	1.08	1.16	3.29	3.35	1.03	1.18	0.57	0.57
평균	2.31	2.12	1.17	0.65	0.34	2.01	1.89	0.54	0.7	0.37	0.29
중위수	2.3	2.17	1.04	0.5	0.21	2.2	2.12	0.59	0.76	0.44	0.33
최대값	4.49	4.24	2	1.42	1.18	3.55	3.35	1.03	1.18	0.82	0.68
최소값	0.92	0.58	0.08	0	0	0.55	0.55	0.24	0.1	0	0

자료 : OECD(2013)